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2012. 12.

수행기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원	윤재영(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기남(서울여대 외래교수) 황재영(노인연구정보센터 대표) 한석철(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과장)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I. 서론	15
1. 문제제기	15
2. 연구의 배경	17
3. 연구목적 및 대상	19
4. 연구방법 및 분석 틀	19
II. 이론적 배경	25
1. 선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현황과 과제	25
가.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25
나. 일본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30
다. 유럽연합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32
라. 선진 외국의 자립생활지원제도에서의 시사점	33
2. 외국의 장애인 판정제도 고찰	34
가. 선진국의 장애기준 틀	34
나. 선진 17개국 장애평가방식의 분석	36
다. 장애평가방식 국제비교의 시사점	55
III.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	59
1. 들어가면서	59
가. 장애자자립지원법의 입법배경	59
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정책적 의미	61
다. 분석의 기준(틀)	62
2.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	64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보호	74
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74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6
다. 수급대상자의 적격성	79
라. 법의 주요 급여와 서비스	81
마. 장애인의 권리구제 절차	110

4.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114
가. 공공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114
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배분	123
다. 복지서비스 신청과 이용절차	135
5.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전달체계의 과제	144
가. 장애인 권리보호의 과제	144
나.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146
6. 장애인종합지원법 분석의 시사점	149
IV.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방안	126
1.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현황 및 문제점	157
가. 지원현황	157
나. 문제점	161
2. 장애등급제의 개선방안	165
3.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167
4. 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168
가.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제3자 평가방식 도입	169
나. 일본의 서비스 전달체계	173
V. 결 론	153
1. 선진국의 장애평가모델고찰의 적용방안	185
2.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 분석과 시사점	186
가. 장애인종합지원법의 핵심내용	186
나.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요점	187
다.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시사점	189
3.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정착방안에 대하여	191
【참고문헌】	193
【부 록】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 전문번역본	196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 장애지원평가항목과 내용	297

【표 목차】

〈표 2-1〉 선진국의 장애평가형태	37
〈표 2-2〉 일본의 장애서비스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40
〈표 2-3〉 영국의 장애수당지급 수준	48
〈표 3-1〉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	64
〈표 3-2〉 기초지자체(시·정·촌)과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역할분담	123
〈표 4-1〉 활동지원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주요 내용 비교	15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분석 틀	20
〈그림 3-1〉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체계 분석틀	63
〈그림 3-2〉 급여신청절차	83
〈그림 3-3〉 요양개호의료비·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시스템	105
〈그림 3-4〉 서비스이용 계획서작성 비용의 지급	109
〈그림 3-5〉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공공 행정과 서비스전달체계	116
〈그림 3-6〉 급여의 신청절차	137
〈그림 3-7〉 장애정도(지원) 구분의 심사과정	138
〈그림 3-8〉 서비스이용계획 작성비용의 결정과정	143
〈그림 4-1〉 자립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4대 요소	167
〈그림 4-2〉 일본의 제3자 평가시스템	171
〈그림 4-3〉 일본의 제3자 평가의 실제흐름도	172
〈그림 4-4〉 일본 장애인종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74
〈그림 4-5〉 국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75
〈그림 4-6〉 지자체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177
〈그림 4-7〉 연금공단중심 제3자 지원형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179
〈그림 4-8〉 자립생활센터중심 당사자주도형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181

보고서 요약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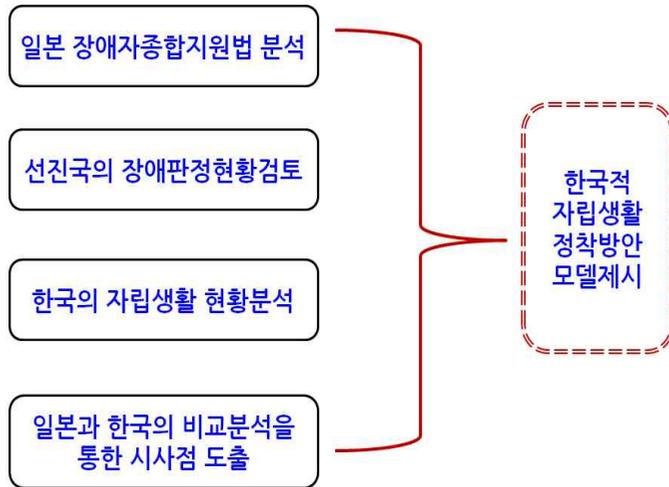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 국제적인 흐름

- 최근 10년간 우리사회는 국제화, 정보화, 지식상업화와 더불어 사회 서비스 패러다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어져 오고 있음.
- 일본은 “장애자종합지원법”을 2012월 6월에 제정하고, 기존의 “장애자자립지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3년 4월부터 새로운 제도로 출발함.
-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도 자립생활 철학을 장애인복지의 중심정책이념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권리의 제한은 인권의 제한이며, 장애인자립생활은 인권패러다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함.
- 기존의 수동적 태도에서 능동적 태도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변화는 장애인정책에 큰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서비스를 시혜적인 성격으로 보는 관점에서 권리적인 성격으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곧 권리적인 차원에서 요구된다는 접근이 우리나라에 새롭게 등장함.

□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다.

- 본 연구는 일본의 문헌을 중심으로 최근 제정된 장애자종합지원법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국과 비교분석 함.
- 본 연구는 선진 17개국의 장애등급판정 현황을 고찰하고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함.
- 한국의 자립생활 현황을 분석하고 일본의 자립지원정책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일본과 한국의 자립생활 지원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적 전달체계모형을 제안함.



제2장 이론적 배경

□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현황

-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은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의 제정을 통해 성공을 거두게 되며,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자립생활센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함.
 - 1992년의 수정 재활법에 근거해 볼 때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의해 관리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함. 전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하며, 민간 비영리기관이라는 특징이 있음.
 - 오바마 정부는 국제 사회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흐름을 조연 할 수 있는 특별자문관(Special Advisor for International Disability Right, SADR)을 임명함, 또한 연방비상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장애통합 및 조정실(Office of Disabilit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을 설치함. 교통부에 장애인들의 교통접근성을 위한 수석자문관(Senior Advisor for Accessible Transportation) 자리를 만들어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당사자 Richard Devylder을 임명함.

□ 일본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현황

○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는 1993년에 “장애인대책에 관한 장기계획” 이 발표되었고, 이 계획은 장애인복지종합계획으로서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을 기본으로 추진됨

- 시·정·촌 별로 서비스 경차가 심화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준을 적용한 서비스 평준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2003년도부터 지원비제도 시행. 예산문제에서 지원비가 약 7.8배 증가하여 장애인 개호서비스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가 요구됨. 장애인복지예산도 2004년 3,728억 엔에서 2005년 4,143억 엔으로 증가하는 등 증가하는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 확립방안이 필요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
- 이용인 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용인 계약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판정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생김. 2013년부터는 장애자종합지원법 체계로 이행함.

□ 유럽연합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현황

-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백한 정책을 가지고 있음

□ 선진 17국의 장애평가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7가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평가방식에 의한 서비스 연계는 21가지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연관되어 있음.
- 이러한 평가방식은 크게 엄격한 평가방식과 유연한 평가방식을 기준으로 평가척도를 낼 수 있고, 평가판정전문가는 의료직으로 구성된 부분일수록 엄격하고, 사회복지사와 행정직,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시스템일수록 유연하며, 팀을 구성하여 판정하는 방식일수록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음.

		기준과 평가척도	
		엄격한 평가방식	유연한 평가방식
평가 관 정 직 원	의료직	A형 6가지 제도 벨기에: 통합수당지급 스페인: 연금과 활동보조가산 ▶독일: 수발보험 이탈리아: 돌봄 서비스 오스트리아: 활동보조수당 그리스: 활동보조수당 일본: 장애판정과 등급결정(1-7급)	B형 5가지 제도 네덜란드: 이동서비스와 주택 개조(WVG) 덴마크: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제도(LSS) 아일랜드: 이동수당 및 활동 보조서비스 노르웨이: 사회서비스법에 의 한 활동보조인 파견(SAA)
	사회복 지사		C형 3가지 제도 핀란드: 장애인서비스제공법 스웨덴: 중증신체장애인지원 법(LSS)
	행정직	D형 3가지 제도 영국: 이동수당, 케어수당(DAL) 미국: 장애판정국에서 판정(SSDI & SSI)	E형 4가지 아일랜드: CAA 프랑스: ADPA 스웨덴: 장애인수당 포르투갈: 활동보조
	전문가 팀구성	F형 1가지 제도 스페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동 보조가산 일본: 장애정도판정, 시정촌심사 회(활동지원서비스 등)	G형 1가지 벨기에: 활동보조제도의 직접 급여방식(DP)

제3장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 분석

□ 2012년 장애인종합지원법 공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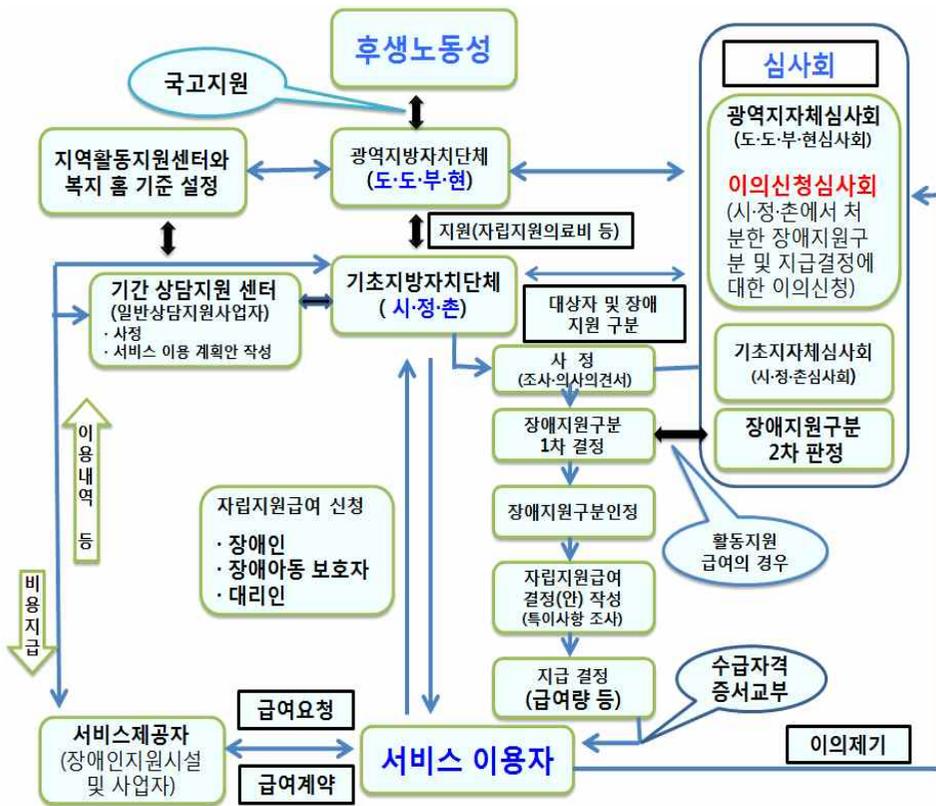
-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여 나아갈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함.

-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기본이념은 사회복지수급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권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규범임. 권리성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함.
 - 지역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 받지 않음.
 -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져야 함.
 - 이 법은 어떤 구체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가 경제여건의 지속적인 호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고, 빈곤자의 자활의사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국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본래의 목적과는 괴리되어 기능함.
- 이원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 행정체계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 중앙부처의 위임사무 비중이 과다하여 행정계층간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구분이 보다 명확해져야함.
 - 복지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치료적 방법으로 대처했던 까닭에 각 복지문제와 제도마다 소관부처가 다르게 편제되어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조정이 미흡함.
 - 공공 행정의 전달체계와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통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은 기존 장애인자립지원법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완하는 법률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그 절차를 규정한 법률임.
-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근거법률로서, 시설생활이 아닌 지역자립생활에 초점이 있으나 자립생활(IL)에서 말하고 있는 자립생활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적 판단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음.
 -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자 측면에서 고찰해본 결과, 법적구성 체계는

물론 그 내용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복잡함.

- 기간상담지원센터와 지역활동지원센터를 제도화함.
- 보건, 복지, 의료,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졌음. 조사연구, 전문가의 육성, 장애인단체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제시됨.

□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공공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의 주체는 서비스이용자인 장애인(장애아동 포 함)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지자체(시·정·촌)로 일원화됨.
-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는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시·정·촌)가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임.
- 기초지자체(시·정·촌)에서 가능한 것은 기초지자체가 역할을 하는 것



이 행동반경이 좁은 이용자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움.

- 심사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에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시·정·촌 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제15조)
- 기간상담지원센터는 지역상담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임.(제 77조의2 제1항)
- 지역활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게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다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제4장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방안

□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현황 및 문제점

- 민간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자립생활지원이 꾸준히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음.
 -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동료상담, 권익옹호활동, 정보제공, 활동보조 지원 사업, 자조활동, 체험홈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 4월 전국적으로 제도화 되어 시작 되었으며 2011년 10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장기요양의 개념으로 변경되어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제도로 새롭게 시작됨(보건복지부 2012).
 - 정부는 2013년부터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씩 인상하기로 함. 향후 장애인 연금은 2017년 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될 것으로 보이며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 (작년 실태조사 기준 평균 월 23만원)의 80% 수준 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한 국내법은 아직 미비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분명한 공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장애인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여전히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보호 하는 ‘시설수용’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의학적 판정에 기초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장애인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판정을 받고 있음. 이는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혹은 직업적 능력을 나타내주지 못하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임.
-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정책과 그에 따른 서비스가 198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급제도에 따른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장애인등급제도는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무시하고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시스템임.
- 현행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의 연령기준은 만 6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6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이 제공되지 않음.
- 현행 활동지원 제도는 법적으로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2011년 11월부터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이 약 12만원까지 인상됨에 따라 이용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자립생활센터 제도화를 통해 자립생활서비스 신청권한을 활성화하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립생활지원 체계가 연계될 수 있어야 함.

제5장 결론

- 선진 17개국의 장애판정제도에 대한 고찰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에 있어서 단순히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됨.

-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과 같이 **의학적 판단기준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연한 장애평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확보가 중요함.
 -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와 판정체계는 획일적인 판정에서 포괄적 사정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

-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장애인기본법의 기본적 이념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장애유형별로 다른 법률에 기초하여 제공되어 오던 복지서비스와 공적비용부담의 의료 등에 대하여 공통의 제도 아래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급여의 대상자, 내용, 절차 등 지역생활 지원 사업,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계획 작성, 비용의 지급 등을 지급함.
 - 지역이행지원 대상에 ‘지역생활로 이행하기 위해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 이 추가됨.
 - 중증방문개호의 대상자를 ‘중증신체부자유자 등으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 으로서 그 범위를 확대함.
 -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기반정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기본지침과 시·정·촌, 도·도·부·현이 정한 장애인복지계획에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정비를 함.
 -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지정결격요건을 추가함.

- 일본정부는 급증하는 서비스의 이용증가에 대한 제정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급여에 대하여 10%의 정률부담을 의무화 하였고, 그 10%의 부담이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됨. 장애인자립지원법이 단기간에 장애인종합지원법으로 전부 개정됨.
 - 경제적인 지불능력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에서의 공생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이념의 모순은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음.
 - 서비스의 질 관리와 양 관리의 서비스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통합적인 사례관리 모형의 접근이 필요함.

- 정부는 국민적 이해와 설득·합의에 대한 과정에 중시해야함.
- 조세제도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급격한 이용증가는 국가재정의 큰 압박 요인임. 즉 무분별한 이용자의 증가를 간과하는 것은 부적절한 제도운영이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와 선진국의 장애평가모델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검토 가능한 전달체계 적용방안을 제시함.

○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여 내린 결론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모형.

-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제도에서 중요함.
- 장애인복지는 조세제도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조세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예산과 책임주체, 서비스관리라는 측면에서 공적책임이 중요하고 예산의 배분에서도 공적책임을 비껴갈 수 없음.

○ 공단중심형 서비스전달체계모형.

- 현행 연금공단에서 장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결국 예산이나 서비스 결정은 지자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 독립형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나 서비스 조정 연계의 기능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자립생활의 선진모델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당사자 중심형 서비스구축모형.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자립생활의 하위요소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지원되어야 가능할 것.
- 현행처럼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정위탁을 할 때, 3년을 주기로 그 상태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I. 서론

I. 서론

1. 문제제기

최근 10년간 우리사회는 국제화, 정보화, 지식상업화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패러다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관리중심에서 자율로, 공동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 제공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의식구조나 가치를 크게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사회의 새로운 가치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의 변화는 매우 적극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한 패러다임의 축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자립생활운동 (Independent Living Movement)인 것이다.

자립생활운동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공민권 운동이 초석이 되어 오늘날 전 세계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평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적 공평의 윤리”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논쟁이다. 이 논쟁은 부(富)의 분배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그 가치의 형태는 노동능력이 되었다. 따라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가치가 존중되었고 노동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훈련의 대상 또는 약자로서 분배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사회적 약자는 격리 보호, 수용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우월주의와 서비스전달의 상하 관리 시스템은 결국 장애인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은 사회적 보호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책도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점차 확대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 현재까지 한국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를

나열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지역자립생활과 장애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공자주체와 서비스 대상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제공자는 정해진 서비스 메뉴에 의한 전달과정으로 인식되었고 이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은 그 서비스를 권리로서 요구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장애인은 거주생활시설과 부모의 보호아래 수동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고 그러한 구조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복지를 시혜적서비스구조로 만드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장애인복지에 새로운 철학으로 등장한 것이 자립생활인 것이다. 기존의 “자립”이란 용어는 신체적 자립, 경제적 자립, 직업적 자립, 심리적 자립 등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립적인 개념구조에서 그 의미를 찾았고,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립이란 잔존능력의 활용을 통한 신체적, 경제적,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에서 그 자립의 의미를 찾고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경제적인 소득을 획득하는 것은 직업재활의 큰 성과로 평가 받았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의료재활 훈련에서 잔존능력의 활용을 통한 신체적인 기능회복은 신체적재활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하면 그것이 자립의 성과로 크게 평가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평가는 결국, 노력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 강한 장애인과 약한 장애인, 노동력의 가치가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었고 전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장애인으로 평가되었으나 후자는 나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장애인으로 평가 절하되는 사회적 낙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와 같은 의미에서 자립을 찾고자 할 때, 중증장애인은 아무리 자립을 하려고 해도 신체적으로 불가능했고 재활 보조기구나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수준에서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식·주 조차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을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환자로 시설생활인으로 살아야 했고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산다고 해도 사회 환경이 자립생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족에 의존하여 살아야 했고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은 가족의 보호속에서 문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오던 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이 바로 자립생활의 이념인 것이다.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기존의 재활패러다임에서 평가받던 방식과는 달리 제도적 자립에 의한 생활로 정의된다. 즉, 여기서 제도란 장애를 보충해주거나 보완해주는 수단을 말하며, 이러한 수단에 의한 자립생활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활동지원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적 수단에 의하여 식사를 할 수 있고, 목욕을 할 수 있고, 책을 대독하여 읽을 수 있으며, 휠체어를 밀어주는 활동보조인에 의하여 외출하여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제도적 수단을 활용한 자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생활과 같은 자율의지에 의한 선택적 삶이라는 측면에서 자립적인 삶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으며,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지역생활을 가능케 하는 자립생활의 철학인 것이다. 또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공서비스를 자립생활서비스라고 하는데, 사회자립생활서비스란 “지역사회로 통합되어 다른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존중받고 가치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책임지고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 자립생활의 이념이 전파 된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작용했다. 특히, 기존의 수동적 태도에서 능동적 태도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변화는 장애인정책에 큰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서비스를 시혜적인 성격으로 보는 관점에서 권리적인 성격으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곧 권리적인 차원에서 요구된다는 접근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는 만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삶의 권리를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고 사회구성원은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의하여 동등한 삶을 누릴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제도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 가지는 평등권의 관점에서 요구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논쟁은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더 이상 시혜적 수준의 서비

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정책적 함의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정책적 논점은 자립생활을 할 권리가 중증장애인에게 보장됨으로서 이루어지는 평등권의 가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는 동등한 삶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고, 그 권리를 국가는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애라고 하는 수단적 제한성으로 인한 문제에 정책적 노력은 국가의 의무라고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현행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요소 중에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방법이며, 그 방법에 등급제한이나 지역적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수단적 방법의 지원 부족에 의한 삶의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권리의 제한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제한은 인권의 제한이며, 장애인자립생활을 인권패러다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최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증장애인이 화재사고로 사망하면서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었고, 결국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자립생활서비스의 하나가 활동지원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동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그 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일본은 “장애자종합지원법”을 2012년 6월에 제정하고 기존의 “장애자자립지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3년 4월부터 새로운 제도로 출발한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도 자립생활 철학을 장애인복지의 중심정책이념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개별예산제도인 것이다.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화폐로 계산하여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는 자립생활이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철학적 사고를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정책은 개별화와 포괄성 모두를 담고 있고, 자립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茨木尚子 外, 2009)하고 있으며,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종합지원법은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의 원칙인 통합적인 서비스를 장애인정책에서

담고자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 기반마련을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종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그 정보를 한국에 정확히 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3. 연구목적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의 연구배경에서도 밝혔듯이 자립생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우리나라의 장애인자립생활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선진외국의 장애등급 판정사례를 고찰하고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일본의 장애인정책변화에 대하여 고찰함과 동시에 장애인종합지원법이 담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일본의 자립지원정책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측면과 자립생활지원의 정책에 대하여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 지원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적 전달체계모형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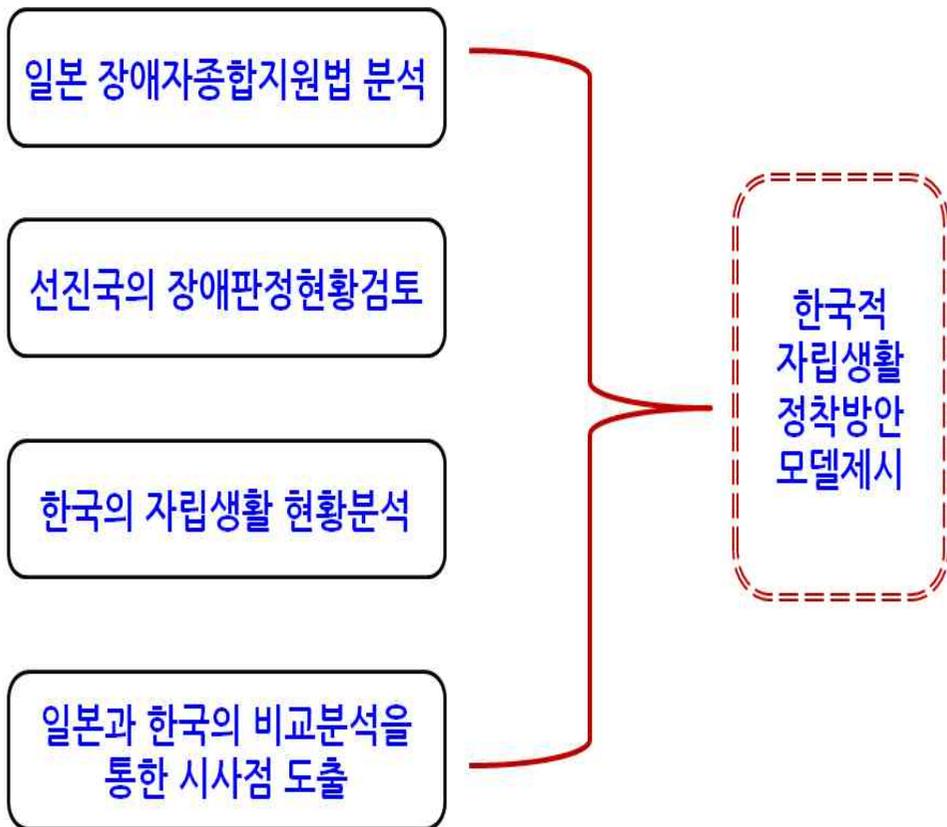
상기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는 문헌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 전문을 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자립생활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정착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및 분석 틀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이루어 졌

으며, 연구진이 그동안 수행한 선행연구와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정한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1> 연구 분석 틀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일본의 문헌을 중심으로 최근 제정된 장애인종합지원법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국과 비교분석한다.

둘째,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 제정에 직접 참여한 위원장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제정과정의 논점에 대하여 파악한다.

1) Sato Hisao, 일본사회사업대학교 교수, 일본 총리부 장애인종합지원법 제정검토위원장

1. 서론

셋째,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일본의 모든 장애인정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립생활과 관련된 제도부분만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자립생활과 관련한 제도 중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생활센터, 소득보장, 사회참여 등의 제도에 대하여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의 자립생활지원 전달체계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 ▶ 기초지자체중심 지원모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서비스 지원등급결정을 위한 장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정도를 사정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친 결정 및 사정을 수행하는 형태로, 일본의 시·정·촌에서 운영하는 공작전달체계모형을 말한다.
- ▶ 제3자 기관 지원모델: 공단이나 특수법인이 장애등급결정 및 서비스매니지먼트 실시를 통하여 장애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현행 연금공단을 통한 운영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 ▶ 당사자주도 CIL지원모델: CIL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 지원등급 등을 자율적으로 위탁하고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장애사정위원회에서 장애 서비스 지원구분 및 서비스 내용을 자율적으로 사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시행되는 당사자 주도형 모델이다.

II. 이론적 배경

II. 이론적 배경

1. 선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현황과 과제

가.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1) 초기 미국의 자립생활지원²⁾

자립생활운동은 1960년대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미국의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1962년 버클리 대학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여 자립생활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의 Edward Roberts(1939. 1. 23 - 1995. 3. 14)는 자립생활 운동을 ‘차별과 분리에 항거하며 사회적 책임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능력에 대한 확인’이라고 하였으며 넓은 의미에서 ‘장애인들의 시민권 운동’이라 하였다(Lachat, 1988: 1-5). 이 운동은 이후 장애인복지정책과 연구에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되어 재활서비스와 대비되는 자립생활서비스의 기본 철학이 되었다(DeJong, 1981: 7-33).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은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의 제정을 통해 성공을 거두게 되며,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자립생활센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한다.³⁾ 1992년의 수정 재활법에 근거해 볼 때, 자립생활센터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의해 관리되며, 지역사

2) 이 부분의 내용은 이익섭·김경미·윤재영(2007)의 일부분을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3) 1972년 버클리 자립생활센터가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50,000을 지원 받았으며, 1979년에는 10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4) 1977년 미국 재활청(RSA)이 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ILRU)에 의뢰하여 개발한 자립생활센터의 정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통제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비수용 프로그램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자기 결정을 증진시키며 필요치 않은 의존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재활법 Title VII에 근거한 자립생활센터의 4대 조건(criteria)은 첫째, 이사회 구성원의 51%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며, 둘째, 중간관리자(manager)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고, 셋째, 일반 직원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고, 마지막으로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Nosek, Jones, and Zhu, 1989:

회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전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시설이어야 하고, 민간 비영리 기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Wilson, 1998: 248). 2002년 현재 이 같은 재활법(Title VII의 Chapter 1과 2)에 근거해 재활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는 미국 전역에 354개소가 있다(Usiak, Tomita and Tung, 2004: 7).

자립생활센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버클리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동료 장애인을 돕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보다 용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표방하였으며(Nosek, Zhu and Howland, 1992: 174), 비슷한 시기에 Cole(1979: 458-459)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 전면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목적으로 언급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을 근원적인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연방정부는 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를 가진 개인의 리더십, 역량강화, 독립성,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미국 주류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을 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정리하였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3). 이를 종합하면, ‘장애를 가진 개인의 독립성, 생산성, 임파워먼트, 리더십 등을 강화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체계 변화를 유도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 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최근 미국의 자립생활지원

최근 오바마 정부의 장애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개편과 인사에 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분야의 3가지 주제와 연결된다. 즉, 장애인의 권리, 응급상황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이다.

첫째, 미 국무부는 국제 사회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흐름을 조언할 수

32)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있는 특별자문관(special advisor for international disability rights, SADR)을 임명한다. 특별자문관은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미국의 종합적인 역할과 전략을 주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바마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별자문관은 에드 로버츠와 함께 초기 미국 자립생활운동을 주도한 주디 휴먼(Judith Heumann)이 맡고 있다.

둘째, 오바마 정부는 연방비상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장애통합 및 조정실(Office of Disabilit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을 설치하였다. 또한 FEMA는 이일을 위해 미국 자립생활협회의(NCIL)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자연재해 및 인재 그리고 기술재난에 대해 양자 간에 협력하기로 하고 재난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장애와 관련한 최근의 또 다른 이슈인 응급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구조에 대한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정책적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셋째, 오바마 정부는 교통부에 역시 장애인들의 교통접근성을 위한 수석자문관(Senior Advisor for Accessible Transportation) 자리를 만들어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당사자 Richard Devylder를 임명하였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오바마 정부의 장애인 정책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장애인 헬스케어의 강화, 고용 기회의 제고, 교육 기회의 확대, 장애인의 시민권 보호와 지역 사회 접근성 향상, AT 개발과 활용의 지원 그리고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지원 등을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⁵⁾.

① 헬스케어 강화

오바마 정부의 보건정책 개혁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 중의 하나이며 이의 일환으로 진행된 Affordable Care Act(ACA)의 제정으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ACA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상한선을 제거하므로 차별과 제한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whitehouse.gov/issues/disabilities>에 있으며 이의 일부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이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이나 유전 정보를 통해 차별적인 보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케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Community Living Assistance Services and Supports(CLASS)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게 된다. 더불어 메디케이드 수급자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Community First Choice Option covering을 제공하며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의료진단기기의 기준을 제정하였다.

② 고용기회 제고

2009년 2월부터 노동부의 노동통계청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재활법 503 Section을 강화하여 연방정부와의 계약업체(fed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에게 장애인을 7% 이상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자영업의 지원, 장애인 고용 박람회, 자판기를 통한 시각장애인들의 고용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③ 교육기회 확대

오바마 정부는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ESEA)와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를 통해 다양한 장애학생들을 보다 적절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예산 중 214억(\$19.9백만) 가량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장애학생들의 학업의 편의를 위해 e-book 등과 같은 기술의 활용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④ 시민권 보호와 지역사회 접근성 향상

오바마 정부의 분명한 철학은 ADA에 근거한 자립생활에 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시설화를 종식시

키겠다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 Olmstead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시킨 “Year of Community Living”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택에 대한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의 지원, 자립생활이 여건 마련 등을 통해 시설생활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인 자립생활을 이루어가도록 관련 기관들 간의 다각적인 협력을 유도하고자 일으킨 운동이 바로, Community Living Initiative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건축물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최저 기준을 다시 마련하여 8만개의 정부기관과 70억 개의 상업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4,000명의 장애인들에게 330억에 달하는 주택임대 바우처를 시행하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Frank Melville Supportive Housing Investment Act를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를 통해 전국의 자립생활센터에 1,500억(\$140백만)이 지원되었다.

⑤ AT(Accessible Technology) 개발과 활용의 지원

미래 사회와 장애인 정책의 혁신을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21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는 장애인들이 기술 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⑥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지원

미국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는 국내의 시민권임과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인식하고, 미국은 UN의 장애인권리 협약 비준국 141개 명단을 이룸을 올렸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악관은 이 분야의 특별 자문관을 임명하였다.

나. 일본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1) 초기 일본의 자립생활지원제도

일본은 1997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으며, 2000년부터는 노인장기요제도인 “노인개호보험법”이 전면 시행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였고, 당시 노인개호보험법을 국회에서 가결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향후 대책을 부대결의하고 노인에 대한 요양제도를 우선 시행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있었지만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다가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Home Help Service를 시행하여 왔는데 이 제도가 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자체 지원이 아닌 정부의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하에 2가지의 이념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첫째, 탈시설화를 축으로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적 전회이었다. 일본은 이 당시만 해도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이념을 갱생(更生=장애인재활서비스)을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시설보호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고, ADL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시행하여왔다. 그러나 2007년에 정부가 세운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는 갱생훈련에서 자립지원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정상화 7개년계획이 본격화되었다. 둘째는 지역자립지원이라는 정책목표아래 추진된 정책으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계약방식을 채택하였고 이용자인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케어매니지먼트의 시행과 제3자 기관에 의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2000년 노인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3년에는 장애인분야에서 장애인지원비제도가 시행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우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전국적인 서비스수준이나 질적, 양적 서비스 기준과 판단에 문제가 있었고 지방격차가 심화되어 결국 2005년에 장애자자립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2) 최근 일본의 자립생활지원제도

장애인자립지원제도는 1993년에 “장애인대책에 관한 장기계획”이 발표되었고, 이 계획은 장애인복지종합계획으로서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을 기본으로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후, 1997년부터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 추진되었으며, 기본적인 골격은 이용인의 입장을 고려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충 및 활성화, 지역복지의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도 이러한 사회복지기초개혁의 방향에 맞추어 2003년부터 장애인지원비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조치제도에서 이용계약 방식으로 제도가 개정되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의 강화를 통한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후, 장애인 개호서비스⁶⁾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수요의 증대 등의 이유로 제도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이 중점과제였으며, 장애인의 세 영역(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제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논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혁의 배경 속에서 장애인자립지원제도가 탄생했으며, 2005년 8월에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4월부터 장애인 자립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첫째, 기존의 일본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종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신체장애인복지법”에서 시책을 규정하고 있고,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지적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정신보건복지법”에서 각각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홈 헬퍼 서비스의 경우, 정신장애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았고, 시설도 분립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제도간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坂本洋一, 2006).

둘째, 2003년도부터 지원비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홈 헬퍼 서비스 수요자가 1년 6개월 만에 1.6배나 증가하여, 예산의 압박요인이 된 것이다. 특히, 시·정·촌 별로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서비스 평준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예산 문제에

6) 일본에서 개호(介護)란 요양이나 수발을 뜻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노인개호보험이라 하며, 장애인개호는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같은 것이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고자 장애인개호라는 용어를 보 보고서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서는 지원비가 약7.8배 증가하였고, 2003년 결산에서 12억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 초에는 173억엔의 추가예산이 집행되어 증대되는 장애인 개호서비스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었다. 이로 인한 장애인복지예산도 2004년도 예산이 3,738억엔 이었지만 2005년도 예산은 4,143억엔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증가하는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 확립방안이 필요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이용인 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용인 계약 제도를 도입하였고, 서비스 판정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생겼다. 2003년의 지원비 제도에서는 객관적인 판정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지원범위와 판정이 달랐고, 이 때문에 지속되는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제정과 시행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시행 7년째는 맞이하면서 한 번의 개정이 있었고 2013년부터는 장애인종합지원법 체계로 이행한다.

다. 유럽연합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1) 국가별 자립생활지원제도의 수준⁷⁾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백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활동보조의 직접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로바키아,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와 스페인 등이다. 이에 더 나아가 필란드,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자립생활의 매우 구체적인 측면을 분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보조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아직 포르투갈과 같은 곳은 활동지원과 같은 자립생활 프로젝트가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

유럽의 국가들 중, 권리와 평등 그리고 반차별이라는 맥락에서 자립생활의 원칙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물론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영국이다. 반면 리투아니아와 같은 나라는 평등조치법(2008), 장

7) 본 내용은 Ruth Townsley가 2010에 수정하여 발표한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People in Europe: Synthesis Report” 에 근거하여 정리되었다.

애인의 사회통합법(2004), 그리고 사회서비스법(2006) 등은 있으나 자립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이난 제도가 없으며, 체코, 그리스, 말타,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등에서도 자립생활이 국가 정책 수준에서 철학으로 자리 잡지 못하여 그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나 체코 등은 자립생활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의 경우는 자립생활에 관한 법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자립생활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 중, 지적장애 등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자기결정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아래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은 스웨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영국 그리고 아이슬랜드 등이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일부 장애인을 배제하는 지원정책을 취하고 있다.

여전히 장애인당사자가 주도하는 지원이나 자립생활지원보다는, 시설케어나 가족케어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말타,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다.

라. 선진 외국의 자립생활지원제도에서의 시사점

- 자립생활은 더 이상 하나의 이념이나 운동 혹은 서비스모델이 아닌 장애인 정책의 토대(framework)로 인정되고 있음.
-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으로 권리에 배경을 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논의와 국제사회의 장애인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를 중요한 축으로 자립생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권에 기반한 선언적이고 보편적인 자립생활의 보장과 함께,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Personal budget, Social Care 혹은 보조기구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방안 함께 논의되며,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제3자 평가방식의 인증 및 인정 제도가 도입되고 그 구체적인 체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

2. 외국의 장애인 판정제도 고찰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 및 판정제도의 역사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는 15개의 장애유형을 장애로 판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2011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결과 2,611,126명으로 장애출현율 5.61%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2011). 유형별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장애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유형별 등록 및 판정체계를 30년 동안 유지해오면서 의학적 판정기준이 국제장애분류기준인 ICF기준으로 볼 때 장애등급제를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자립생활의 실천에서 장애인등급제는 보편적 서비스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자립생활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장애라고 하는 사회적 불합리에 등급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은 상해를 상품성이론에서 접근하려는 논리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는 장애등급의 기준을 정함으로 노동능력의 척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행정편리주의에서 이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의 경중이 서비스의 필요와 직접적으로 상관성이 있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는 결국 장애인복지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장애등록제와 장애판정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장애라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선진국의 장애기준 틀

선진외국의 사례(정중화·이경준, 2011)를 보면 동양인 일본이나 우리나라와는 다른 장애인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의 차이에서 장애인정이나 평가방식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유럽위원회의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장애평가 인정 방식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데 장애정도 평가를 위한 유럽위원회 최종보고서(Council of Europe, 2000)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률(Obstacle rate=Barema methods)로 표시하는 평가방식이다.

이 방법은 임의로 기준을 정하고 장애정도를 누진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장애인은 이 기준에 비추어 누진비율에 따라 장애정도가 평가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9%이하의 결손은 1급, 10-20%까지의 결손은 2급, 25-49%까지의 결손은 3급, 50-70%까지의 결손은 4급으로 평가된다. 즉, 이 평가방식은 70%이하를 장애로 인정하며, 누진률이 9%이하라는 것은 중증의 장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요양욕구의 평가(Assessing care needs)방식이다.

주간과 야간,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이 판정방법은 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폭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셋째, 기능적 능력손실 정도평가(functional capacity determination)방식이다. 이 평가방식은 ADL이나 IADL의 체크리스트를 본인 또는 평가자가 그 리스트에 체크하면서 점수로 나타내는 평가방식인데,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고, 그 체크 리스트에서 추가되어야 하는 요양욕구는 본인이나 가족의 의견을 들어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객관성을 가지면서도 장애인의 욕구와 가족의 욕구를 종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어떤 나라는 이 부분을 정형화하여 획일적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넷째, 경제적 손실 정도의 평가(Economic loss) 삽입방식이다.

장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개인의 경제적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산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서비스 정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 평가방식은 비교평가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연령이나 학력, 전직경력, 장애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판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여러 나라에서 복합적으로 또는 단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평가에서는 나라마다 그 특성이 다양하다고 보

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2002년도에 발행한 유럽의 장애인의 개념정의 비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장애 등록·판정제도에 의미하는 바가 크며,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자립생활로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European Commission, 2003)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장애등록 및 판정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이 제도들이 다른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보고서에 기술된 많은 나라들은 복지서비스와 장애등록이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장애등록이나 판정은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서비스, 서비스 구분 등에 행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서비스와의 연관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선행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자료 중에서 중점적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자료는 자립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이 서적의 첨부자료에 부착된 부록³⁹⁾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다루고자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나. 선진 17개국 장애평가방식의 분석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7가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기준이 없이 담당 사회복지사가 장애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방식까지 한다면 8가지 형태의 평가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방식에 의한 서비

8) 이 보고서는 원래 2002년도에 Brunel 대학의 Deborah Mabbett 교수의 연구책임으로 유럽연합에 가맹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보고서가 2003년도에 유럽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발행하여 공개된다.

9) Definitions of Disability in Europe Final Report 13 Sept 2002 Appendix 3 (이 첨부자료는 유럽위원회에 보고된 자료로 88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며 영어로 기술되었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며, “일상생활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추진분야에서의 장애정의” 라고 번역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의 많은 부분은 여기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스 연계를 21가지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연관되어 있으며, 서비스 급여와 현금급여,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방식을 의료진에 의한 엄격한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에 의한 유연한 평가방식도 동시에 존재한다.

<표 2-1> 선진국의 장애평가형태

		기준과 평가척도	
		엄격한 평가방식	유연한 평가방식
평가 판정 직 원	의료직	A형 6가지 제도 벨기에: 통합수당지급 스페인: 연 금과 활동보조가산 ▶독일: 수발보험 이탈리아: 돌봄 서비스 오스트리아: 활동보조수당 그리스: 활동보조수당 일본: 장애판정과 등급결정(1-7급)	B형 5가지 제도 네덜란드: 이동서비스와 주택 개조(WVG) 덴마크: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제도(LSS) 아일랜드: 이동수당 및 활동 보조서비스 노르웨이: 사회서비스법에 의 한 활동보조인 파견(SAA)
	사회복 지사		C형 3가지 제도 핀란드: 장애인서비스제공법 스웨덴: 중증신체장애인지원 법(LSS)
	행정직	D형 3가지 제도 영국: 이동수당, 케어수당(DAL) 미국: 장애판정국에서 판정(SSDI & SSI)	E형 4가지 아일랜드: CAA 프랑스: ADPA 스웨덴: 장애인수당 포르투갈: 활동보조
	전문가 팀구성	F형 1가지 제도 스페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동 보조가산 일본: 장애정도판정, 시정촌심사 회(활동지원서비스 등)	G형 1가지 벨기에: 활동보조제도의 직접 급여방식(DP)

상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7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방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판정을 행하는 국가(A형)

① 제도의 개요

- ▶ 벨기에: 통합수당에 대하여 엄격한 장애판정을 행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예로 신체수발, 이동보조, 가사지원, 커뮤니케이션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4단계로 현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판정을 시행한다.
- ▶ 스페인: 연금의 활동보조가산제도, 케어 니즈에 따라서 현금급여를 지급
- ▶ 독일: 수발보험, ADL지원, 외출활동보조, 현물서비스와 현금서비스 제공
- ▶ 이탈리아: 돌봄수당, 연금수급자 외의 보행, ADL의 신체수발 니즈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시행
- ▶ 오스트리아: 활동보조수당,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보조수당지급, 월 50시간의 케어 니즈에 달했을 때(레벨1-7) 월 50시간에서 180시간 이상의 7가지 구분으로 현금급여실시
- ▶ 그리스: 활동보조수당은 연금수급자에게 지급, 연금가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활동보조급여로 현금지급.
-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의학적 판단기준으로 장애 등록과 등급결정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판정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장애는 시각, 청각, 언어, 평형, 사지마비, 뇌성마비, 내부 장애 등으로 구분되며, 지적장애는 다운증과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은 학습장애, 주의력결핍장애, 에스퍼그증후군, 중복지적장애, 정신장애는 정신분열, 우울증, 정동장애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또한 세부적인 장애판정은 전문의가 신체, 정신, 지능 검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장애판정은 매우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판정 등급이 사회복지의 다양한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② 장애의 기준

이상의 국가들에서 장애의 기준은 해부학적 또는 기능상실로 중요한 일상행위의 수행을 위하여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스페인: 연금의 활동보

조가산)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니즈를 판정한다. 독일은 의학적 상태보다는 케어 니즈에 중요성을 두고 서비스 판정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 필요가 있다.

③ 평가전문직

또한 이 평가에 관여하는 전문직은 당연히 의사이며, 독일의 경우는 간호사가 관여하고 의사의 진단서는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장애유형과 전공에 따라 전공이 다른 복수의 의사에 의하여 판정이 이루어지며, 이탈리아의 돌봄 수당 지급의 경우, 장애서비스 판정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이나 장애인단체, 당사자의 의견수렴의 과정도 허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유형별 등급판정은 전문의가 수행하고 서비스 판정은 시·정·촌심사회에서 수행한다.

④ 평가기준과 척도

모든 국가는 평가와 판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VM이라고 하는 케어 니즈 사정표가 있고, 그 사정에는 신체장애, 셀프케어 정도, 커뮤니케이션 정도, 안전성, 질문지 평가서, 개인적 사회적 생활적응정도 등에 대한 기술하는 공란이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돌봄수당 지급에서는 선천성 또는 기형의 병리학적 일람표가 사용 척도로 사용된다. 특히, 돌봄의 경우는 치매장애나 지적장애 등의 경우에 필요한데, 선천성 또는 기형의 병리학적 일람표에서 %로 나타내는데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100%, 다운중후군의 경우 75%-100%, IQ와 ADL 등의 능력 등에 대하여도 평가를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⑤ 일본의 장애서비스 평가척도 및 방법

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고 각 장애유형별 개별법에서 그 장애의 정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판정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106개 항목의 지원구분을 규정하는 기준이 있고 구체적인 평가척도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첨부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판정하고 있는데 79개의 ADL+IADL 항목과 27개의 장애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항목 이렇게 106개의 항목으로 판정하여 장애서비스 지원구분을 정하고 있는데 79개의 ADL+IADL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2> 일본의 장애서비스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1)마비·구축에 관한 항목	1-1	마비 등의 유무
	1-2	관절의 활동범위 제한의 유무
(2)이동 등에 관한 항목	2-1	침상에서 몸 뒤집기
	2-2	(침상에서) 일어나기
	2-3	앉은 자세 유지
	2-4	양발로 기립자세 유지
	2-5	보행
	2-6	차량승차
(3)복잡한 동작 등에 관한 항목	3-1	이동
	3-2	일어서기
	3-3	몸 씻기
(4)특별한 활동보조 등에 관한 항목	4-1	욕창 등 유무
	4-2	연하
	4-3	식사섭취
	4-4	물마시기
	4-5	배뇨
	4-6	배변
(5)신변처리 등에 관한 항목	5-1	청결
	5-2	옷 입고 벗기
	5-3	약 복용
	5-4	금전관리
	5-5	전화이용
	5-6	일상생활의 의사결정
(6)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항목	6-1	시력
	6-2	청력
	6-3	의사전달
		본인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을 활용한 의사표시
	6-4	활동보조인 지시에 대한 반응
		언어 이외의 대화수단을 활용한 설명의 이해
	6-5	기억·이해

II. 이론적 배경

(7)행동장애	7	행동장애
(8)특별한 의료에 관한 항목		
(9)사회생활에 관한 항목	9-1	요리
	9-2	식단준비와 뒷정리
	9-3	청소
	9-4	세탁
	9-5	목욕의 준비와 뒷정리
	9-6	물건구입
	9-7	교통수단의 이용
	9-8	문자의 시각적 인식활용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부록에 첨부한 106개 평가기준표 참조

신체장애특성과 관련한 항목으로 좌 상지마비 등, 우 상지마비 등, 좌 하지마비 등, 우 하지마비 등, 그 외 마비 등이며, 어깨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팔꿈치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다리사이의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무릎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발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그 외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등이고, 잠자리 뒤척임 (체위교환, 일어나기, 좌위보지(앉아있기), 양발로 서있기, 보행, 휠체어에서 침대로의 이동, 이동, 일어서기, 한쪽 발로 서있기, 세신(입욕 이외), 욕창의 유무, 욕창 이외 손이 필요한 피부질환 등, 삼킴, 식사섭취, 음료수 섭취, 배뇨, 배변, 구강청결, 세안, 머리 빗기, 손톱 깎기, 상의 입고 벗기, 바지 입고 벗기, 약물복용, 금전관리, 전화이용, 일상의 의사결정(일상생활에 불안, 고민에 관한 상담 등), 시력, 청력, 의사전달, 본인 스스로의 표현 방법을 이용한 의사표시, 개호자의 지시에 대한 반응, 언어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설명이해 등이다. 또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항목으로 27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매일 일정을 이해하는 것, 생년월일, 연령을 대답하는 것, 면접조사 직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내는 것이 가능한가?,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 계절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이 있는 장소를 대답하는 것이,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등피해적, 실제 없는 것이 보이거나 들린다. 울다가 웃다가 감정이 불안정 하게 조절되지 않는다. 불면증 또는 주야가 바뀐 일이 있는가, 폭언과 폭행이 있는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일이 있는가?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있는가, 조언이나 개호에 저항한 일이 있는가, 목적 없이 돌아다닌 일이 있는가, “집에

가야지“라고 안정 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외출하면 혼자서 병원, 시설, 집에 돌아오지 못한 일이 있는가, 혼자서 밖에 나가고 싶은 눈으로 계속 있는 일이 있는가, 여러 가지 물건을 모으거나 무단으로 들고 간 일이 있는가, 불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물건이나 의류를 부수거나 찢거나 한 일이 있는가, 불결한 행위(배설물을 만지다 등)를 한일이 있는가, 먹을 수 없는 물건을 입에 넣은 일이 있는가, 심한 건망증이 있는가, 특정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 심한 집착이 있는가, 많은 움직임이나 멈춤이 혼돈이나 불안정한 행동이 자신의 몸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때리거나 차거나 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가 있는가, 타인을 갑자기 안거나 몰래 물건을 가져간 일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평상시와 다른 소리를 낸 일이 있는가, 갑자기 달려 없어질 것 같은 돌발적인 행동이 있는가? 이 외에도 추가 조사항목으로 과식, 반식(반 정도 씹고 넘기는 정도) 질식의 위험, 기분이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되어 때론 사고력도 저하된 일이 있는가?, 확실하기 위해 손을 반복해서 씻는 등 일상동작에 시간이 걸린 일이 있는가?, 타인과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 긴장으로 외출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방에 계속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한 일이 있는가?, 얘기가 정리되지 않은 채 대화가 안 된 일이 있는가?,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말한 것이 통하지 않는 일이 있는가?, 현실에 맞지 않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일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의심스럽게 거부하는 일이 있는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

또한 기타 참고사항으로 링겔의 관리, 중심정맥영양 유무, 투석 유무, 인공항문의 처치, 산소요법, 인공호흡기관절개의 처치, 통증의 간호, 경관영양,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등의 측정, 욕창의 처치, 카테터(콘돔형 카테터, 고정형 카테터, 인공항문등)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조리(식단포함), 식사 배식(운반 포함), 청소(정리정돈), 세탁, 입욕준비 및 정리, 시장보기, 교통수단의 이용, 문자의 시각적 인식사용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한다.

이상의 관점 항목으로 타임체크로 평가되고 그것은 점수로 나온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평가방식에서도 응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시각장애인 평가 항목에서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위주로 평가하고 있고, 중도실명인지, 선천성인지, 헨지팡이를 사용할 줄 아는지, 점자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각장애인 특성에 대한 항목은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제1차 관점(컴퓨터 관점)에서 문제로 지적되며, 제2차 관점은 컴퓨

터 판정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정촌심사회(市町村審査會)”에서 최종 평가하는데 이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평가가 구성되어 있다.

제2차 평가에서는 특이사항 기록이 중요한데, 이는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할 때 특이 사항은 가족이나 본인에게 듣고 그 서비스 욕구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려사항을 기록하기는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범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⑥ 서비스 범위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독일의 수발보험의 경우는 케어 범위나 내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자신이 원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잔존능력의 발휘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케어플랜 작성에서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활동보조수당은 급여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지만 본인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적으며, 행정당국이 주도적으로 판정을 내린다.

일본의 경우,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장애등급 결정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엄격한 서비스 판정을 정용하고 있다.

⑦ 소결

의학적 판단기준을 중시하는 나라들은 비교적 엄격한 판정과정을 거치며, 해부학적, 병리학적 관점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판정도 % 또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며, 그 구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서비스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판정결과는 복지서비스의 여러 부분에 연계되어 있고 장애판정결과는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당, 감면제도, 국공립시설 이용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장애인종합지원법(2012.7)에서는 각 장애유형별 서비스를 하나의 법률체계로 구축하였다. 유럽의 경우 엄격

한 서비스 관정을 수행하는 경우, 현금지급에 관한 사항들이 많으며, 현물 서비스의 경우 비교적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으나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비교적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의료전문가에 의한 유연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B형)

① 제도의 개요

- ▶ 네덜란드의 WVG: 이동 및 주택개조지원서비스, 현금 또는 현물급여
- ▶ 덴마크의 LSS: 활동보조, 보장구, 시설이용,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현금 또는 현물서비스로 급여
- ▶ 아일랜드의 이동수당: 자택에서 외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 활동보조 수당은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현금지급
- ▶ 노르웨이의 SAA: 사회서비스법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 현금서비스는 실시하지 않고 서비스로 지급, 자산조사 등의 수입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되지 않았지만 사회서비스법에서는 4가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산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② 장애의 기준

- ▶ 질병이나 허약자이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이동이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명백한 이동의 제한을 경험하는 경우를 장애로 인정함(네덜란드 동일함).
- ▶ 질병이나 장애, 노령에 따른 이유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이 경우에 활동보조인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여기서 질병이나 장애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것을 말한다.

③ 평가전문직

- ▶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외부 위탁기관의 판정에 의하여 장애로 인정함(네덜란드 동일)

- ▶ 여기서 관리직인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니즈평가를 실시함
- ▶ 의사진단에 의하여 보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진단명, 능력평가, 치료예측기간 등이 모두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판정은 시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평가함(노르웨이의 SAA와 동일함)
- ▶ 이와 같이 장애평가 및 서비스 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직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이며, 주치의 판단에 중요성을 두는 경우도 많음.

④ 평가기준과 척도

- ▶ 모든 평가에 있어서 평가가이드라인과 같은 매뉴얼이 존재하며, 평가항목이 정해져있음, 그러나 그 항목들은 매우 유연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 ▶ 지방자치단체협회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많음. 물론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판정기준을 사용하는 곳도 있음. 이 요강에는 의사진단서, 기능장애, 능력 장애, 사회적 핸디캡 등의 판정항목이 있고 네덜란드의 판정방법과 동일함.
- ▶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보행의 곤란, 심신상태의 열악함, 의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동이 곤란한 경우, 거주환경에 의한 상태악화 등이 기준이 된다. 이는 아일랜드의 이동수당을 지급할 때의 기준과 동일함.
- ▶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항목은 적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판정이 다양함.

⑤ 서비스 범위

- ▶ 서비스의 선택에 대해서는 장애인 자신이 결정권이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은 모든 판정과정에 존중된다. 그러나 사정단계에서 신청자가 충분한 자기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자기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평가가 이루어지나 최종평가는 공무원의 권한으로 인정.
- ▶ 중요한 요소는 가장 합당한 서비스는 신청자와 평가자의 충분한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네덜란드도 동일한 과정임.

- ▶ 장애등급의 사정이나 구분은 장애인 역량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은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이용의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스웨덴의 LSS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 서비스는 가능한 이용자와 제공자가 협력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인 당사자의 의견이 중시됨. 이는 노르웨이의 SAA법에서 정한 규정과 같음.

⑥ 소결

- ▶ 활동지원서비스 니즈에 대해서는 현물 또는 현금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의료전문직의 평가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이 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전문직이 주도권을 가지는 평가방식이 아닌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부여된 평가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에 의한 유연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C형)

① 제도의 개요

- ▶ 핀란드의 장애인서비스제공법: 이동, 재가활동지원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장애로 인한 특별지출 지원, 현금 또는 현물서비스
- ▶ 스웨덴의 LSS법: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휴양서비스,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자산조사와 자부담은 부과하지 않음, 현금 또는 현물서비스 지급
- ▶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법: LSS와 유사하나 서비스 대상이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인까지 포함되어 있음, 최저생계비는 현금지원, LSS법에서는 자신 조사와 자부담이 있으며, 연령제한도 65세 이하는 장애인서비스에서, 65세 이상은 노인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음.

② 장애의 기준

- ▶ 장애란 기능장애 또는 질병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친 일상생활을 수행하

는 과정에 특별한 곤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핀란드의 장애인서비스 제공법과 동일함.

- ▶ 스웨덴의 LSS의 경우는 장애인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곤란을 동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장애라고 규정하지는 않음. 특히,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법은 매우 포괄적으로 장애를 규정하고 있음.

③ 평가전문직

- ▶ 모든 평가는 사회복지사가 수행하고, 의학적인 판단기준 등은 스웨덴 서비스법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스웨덴의 LSS와 핀란드의 장애인서비스 제공법에서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④ 평가기준과 척도

- ▶ 평가 판정을 위한 매뉴얼은 없으며, 핀란드 장애인서비스 제공법에서는 일반적인 정의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별 중증장애란 이동에 곤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기능장애 또는 질병을 가진 자라는 규정에서 공공이동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스웨덴의 LSS에는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소가 결정한다.

⑤ 서비스 범위

- ▶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음.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LASS법에서는 주당 20시간 이상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원은 사회보험청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

⑥ 소결

▶ 의학적인 판단기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판정과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이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 달리 평가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장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장애유형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4) 행정직원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D형)

① 제도의 개요

▶ 영국의 DLA(Disability Living Allowance=장애생활수당):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수당으로 연금수혜 연령인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재정상황이나 소득의 정도를 막론하고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관련 특수 서비스 및 용품 구입에 드는 경비(예를 들자면, 장애인 콜택시, 혹은 도우미 고용, 장애 특별 용품 등)를 보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지급된다. 수혜 자격으로는 최소한 3개월간 장애(신체 및 정신적 장애 포함)를 가지고 있고 향후 6개월간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성을 위해 보조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산 시 장애가 판정되어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신청 할 수 있다. 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자산조사 등은 수행하지 않으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2010년 10월 현재의 장애수당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2-3> 영국의 장애수당지급 수준

등급	장애수당 영역	
	일상생활보조	이동보조
상	£ 71.40 (127,800원)	£49.85 (89,730원)
중	£47.80 (86,040원)	
하	£18.95 (34,110원)	£18.95 (34,110원)

(£1 : 18,00원 교환율 적용)

II. 이론적 배경

- ▶ 영국의 사회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보건복지 서비스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모든 사회보장성격의 수당은 중앙정부의 연금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의 관리 하에 각 도시의 고용사무소(Job Center Plus)를 통해 지급하는 반면, 장애등록 및 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위한 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주무부처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부를 통해 서비스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 ▶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장애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는 사회보장국의 5가지 심사기준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 현재의 직장생활여부: 월 \$860의 수입이 있다면 장애로 인정되기 어렵다.
 - 최종증장애상태여부: 현재의 건강상태가 기본적으로 직업을 갖지 못할 만큼 심각한가를 판정한다.
 - 사회보장국에서 제시하는 장애판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사: 신체부분의 의료적 케어에 대하여 현재상태의 장애상태를 사회보장국의 장애상태 기준과 대조하여 판단함.
 - 이전의 직업수행여부: 건강상태는 중증이나 장애를 입기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만일 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 직업수행능력 여부: 장애입기전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직업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사회보장국은 장애인의 의료적 상태, 연령, 교육, 직업경험, 다른 직업에서 가능한 기술의 유무를 바탕으로 취업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② 장애의 기준

- ▶ 이동수당은 움직여서 이동하는데 곤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케어부분은 활동보조의 필요와 보호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 미국의 사회보장급여에서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란, “영구적이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현재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동반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급

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국(DDS)의 판정기준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③ 장애평가

- ▶ 장애의 평가는 평가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어떤 케어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면밀하게 판단함. 예를 들어 요리테스를 하여 장애인이 필요한 가사필요도를 측정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활동보조의 지원정도를 결정하기도 함.

④ 서비스 신청과 범위

- ▶ 본인의 서비스 신청에 의하여 장애평가가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자기 평가방식(Self Management)에 의하여 자신의 활동보조서비스 필요도를 설명하여 평가함.

⑤ 소결

- ▶ 행정직원에 의한 장애평가방식은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평가방식을 인정하면서도 그 서비스 니즈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필요로 함.
- ▶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에서 장애판정은 대부분 전문의사가 수행하는데 문제는 전문가의 전공영역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 외과의사와 정신과 의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 때문에 장애판정에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권선진, 2006).

5) 행정직원에 의한 유연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E형)

① 제도의 개요

- ▶ 아일랜드의 CAA(장애인서비스제공법): 노동재해급여제도에서의 요양수당, 식사, 수면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니즈에 대하여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하여 3단계로 판정함.
- ▶ 프랑스의 ADPA(제3자 보상수당, 2002)는 저 소득자를 위한 활동보조수당

을 지급한다. 이는 활동보조의 니즈를 사정하는 것으로서 어떤 활동보조를 사용하든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 스웨덴의 장애인 수당: 사회보험제도의 케어수당이다. 일상생활의 지원을 목적으로 16~64세의 장애인에게 지급, 특별한 생활비용 또는 활동보조를 위하여 사용함.
- ▶ 포르투갈의 활동보조 급여: 보험제도로서 존재, 비보험제도의 연금수급자의 활동보조가산, 개인의 영양욕구를 바탕으로 위생과 식사의 제한은 특별히 없음. 현금급여로 하고 자산조사가 없음.

② 장애의 기준

- ▶ 장애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에 대하여 활동보조를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아일랜드의 CAA, 프랑스의 ADPA와 성격이 같음.
- ▶ 케어 니즈에는 재가서비스의 가사서비스를 강조하여 지원함.
- ▶ 장애를 평가할 때 의존상태를 2개의 단계로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취침 또는 심각한 치매증상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평가는 포르투갈의 활동보조수당을 지급과 동일함.

③ 평가전문직

- ▶ 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모두 행정직원이 의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를 함.

④ 평가기준과 척도

- ▶ 아일랜드의 CAA는 간단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나머지는 담당 직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몇 가지의 규정이 있으나 담당직원은 자유롭게 생활의 욕구평가를 재량으로 해석하여 결정할 수 있음
- ▶ 프랑스의 ADPA의 경우, 생존을 위하여 불가결한 동작활동이라고 장애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장애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음.

- ▶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RFV)는 무엇이 장애인가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별니즈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 담당직원에 의한 케어 니즈의 사정은 시간을 어느 정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분하고, 식사, 의복 등의 사정에서는 소비물가지수가 파악하여 사정에 참고 반영함. 특히, 스웨덴의 경우는 장애인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함.
- ▶ 스웨덴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관련한 법령으로 3가지의 중요한 법령이 있는데, 장애인수당은 사회보장제도(RFV), 기능장애인의 원조서비스법(LSS), 장애인활동지원법(LASS), 사회서비스법(SOL) 이 세 가지 법령은 지역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법령이며, 이 모두 운영은 커뮰이라는 기초 자치단체 행정기관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⑤ 서비스신청

- ▶ 프랑스의 ADPA는 서비스 신청용지에 본인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기록하여 제출하고, 아일랜드 CAA에서는 신청할 때 신청인이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활동보조인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를 기록함.
- ▶ 또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 어떤 시간대에 필요한지 기록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 서비스를 제공에 대하여 판단하여 통보함.

⑥ 소결

-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장애평가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 담당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과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6) 전문가 팀의 구성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F형)

① 제도의 개요

- ▶ 스페인의 기초생활수급자의 활동보조가산제도: 기초수급자의 활동보조니즈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현금급여를 실시함, 자산조사는 수행하지 않음.

② 장애의 기준

- ▶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인 손실에 의하여 중요한 일상생활의 수행에 필요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며, 장애나 질병의 정도 구분을 할 때 75%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함.

③ 평가전문직

- ▶ 장애평가는 전문가팀에 의하여 팀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짐
- ▶ 여기서 전문직이라 함은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을 말하며, 전문가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짐.

④ 평가기준과 척도

- ▶ VM이라 이름 하는 장애평가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케어 니즈사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신체적 장애(예를 들면 일어섬, 자는 것, 옷 입기, 개인위생, 개인위생, 먹는 것 등), 커뮤니케이션, 안전성, 인식, 특별한 필요성 (의료적 조치의 필요) 등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최저 15포인트 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장애로 인정.

⑤ 서비스 범위

- ▶ 서비스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스페인의 기초수급자의 활동보조가산제도가 대표적임.

⑥ 소결

- ▶ 스페인의 경우, 케어 니즈에 대하여 특별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민·사회 서비스법(IMSERSO)에서 급여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의 의무를 수행함.
- ▶ 급여는 현금급여로 하고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완전히 일 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일 경우가 인정되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애나 질병 정도가 75%이상일 때 타인의 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엄격한 판정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임.
-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비각출 연금은 18~64세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정도가 75%이상인자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충분한 소득이 없고 사회적·가정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국가가 사회보장대상자로 지원함.

7) 전문가 팀의 구성에 의한 유연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G형)

① 제도의 개요

- ▶ 벨기에의 직접급여제도(direct Payments):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향한 프 라만 기금에 의한 직접급여방식을 실시함. 현금급여로 제공하고 자산조 사는 실시하지 않음.

② 장애의 기준

- ▶ 장애는 지적, 정신적, 신체적 또는 감각적 능력의 저하에 의한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의 지소 또는 중대한 제한으로 규정함.

③ 평가 및 결정 직원

- ▶ 전문가 팀에 의하여 장애평가를 수행하고 결정함. 단, 최종적인 결정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프라만 기금의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④ 기준 및 평가척도

- ▶ 장애인과 전문가 팀에 의하여 ADL척도, 기타 정보를 통합분석 하여 니즈평가가 이루어짐, 장애의 등급과 일주일동안, 매일, 활동지원서비스의 계획안을 제시함.
- ▶ 여기서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이 어떤 자립생활을 수행할지에 대하여 진술하고 계획에 자신의 자립생활계획을 작성함.
- ▶ 결론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장애인당사자의 자립생활지원계획이 최종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

⑤ 소결

- ▶ 장애의 평가는 전문가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 ▶ 급여는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목적성 급여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계획서는 평가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됨.

다. 장애평가방식 국제비교의 시사점

첫째, 선진외국의 장애등록 및 판정제도를 요약하여 보면, 여기서 언급한 17개국의 대부분이 장애등록 또는 장애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며, 장애인 증면서 같은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목적에 따라 장애정의를 내리고 있고, 중증장애 또는 장애유형별 장애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몇 개국에서는 장애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전담직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징도 볼 수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서비스 특히, 자립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심신장애의 특성이나 정도에 따라 서비스의 구분 또는 서비스의 경

중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이다. 여기서 심신의 상태라 하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의사의 진단서, 전문가의 판단, 본인의 서비스 필요성 주장 등의 3가지가 고려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의사가 아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의 필요성을 사정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사 등의 전담직원은 니즈 사정을 수행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진단을 신뢰하는 사회적 풍조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신뢰하고 그 전문성을 신뢰하는 것이며, 장애라는 내용의 엄격성 보다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다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 분석



III.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 분석

1. 들어가면서

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입법배경

1) 장애인기본법의 성립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별 법률마다 장애 종별로 분류되어 규정되었다. 따라서 담당하는 행정전달체계도 각각 달라서 종합적인 정책을 입안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장애인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2003년 11월에 지금까지의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을 개정한 장애인복지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애인기본법이 성립하였고 그 해 12월에는 공포·시행되었다. 장애인기본법은 그 이후에도 2004년에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꾀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에서는 노력의 무였던 광역지자체(도·도·부·현)과 기초지자체(시·정·촌)¹⁰⁾의 장애인기본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2)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

2003년에는 행정이 주체가 되어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 등을 행정처분으로서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던 조치제도가 바뀌었다.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서비스 사업자와의 대응한 관계 확립을 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것이 지원비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에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그리고 근거법이 여러 분야로 분리되어 있어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욱이 지원비

10) 도·도·부·현은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광역자치단체(광역지자체)로서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하고, 시·정·촌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도입에 따라 새로운 문제도 발생했다. 지원비 제도 도입에 의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자 증가이다. 이용자 증가로 각 자치제의 비용부담이 급증하였고,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장애종별로 분단되어 있던 장애인복지제도를 장애인기본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의 관점에서 일원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한 장애자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조치제도에서 지원비제도로, 그리고 지원비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자자립지원법이 2006년 4월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장애종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원화 시스템이 정비되어 시설과 사업이 재편 되었고 취로지원 등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자립지원법에서 종합지원법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배포한 매니페스토에는 자립지원법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2010년 12월에 「개정」이 이루어진다. 2010년 12월 개정 후에도 자립지원법의 근본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1년 7월에는 장애인기본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자립지원법을 대신할 법률의 검토가 진행되었고 2012년 3월에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애보건복지시책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안」이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은 2012년 6월 20일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었고 6월 27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자립지원법의 제목을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장애자종합지원법)」로 개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전혀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립지원법의 일부개정이고 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국회의 정치혼란과 재정적자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다.

나.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정책적 의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은 인권의 한 표현 또는 시민권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는 개념체계이다. 자립생활의 근본 개념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여 나아갈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자립생활은 자기의사결정(Self-determination)과 선택권(Choice making)이 그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원리에 있어 핵심 사상은, 장애인에게 자신이 어디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생활양식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생활전반에 걸친 여러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립생활의 개념은 장애인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모험이나 그 결과에 따른 위험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성공 또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체계화되고 발달된 개념으로서, ‘자립생활’은 미국 장애인복지정책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0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장애인복지가 발전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된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도 그 기본정신을 자립생활에 두고 있다. 유럽, 일본 등지에서도 일찍이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를 중심으로 자립생활 프로그램이 확대·발전되는 상황에 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새 지평을 열 패러다임으로 모든 세계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장애인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

일본의 장애인 정책과 운동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행정편의를 도모한 차별적 시스템과 장애인 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일본의 모델을 한국식으로 변용한 것들이 많다.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등은 일본에서도 폐기되어 가는 추세이나, 한

국은 등급재심사로 더욱 엄격한 의료적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 자립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립생활의 이념과 실천전략, 서비스 구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사회문화적·경제적 조건이 상이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자립생활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실천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¹¹⁾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자립생활을 정의하면, 자립생활이란 의사결정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득되는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변처리,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의 참가, 사회적 역할의 수행, 자기결정, 신체적 및 심리적인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할 것이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이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하 “장애자종합지원법”이라 한다)」의 체계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며, 그러한 자립생활제도가 한국에서 갖는 시사점과 그 과제, 그리고 현실적인 적용방안에 대하여 시론적인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다. 분석의 기준(틀)

본 연구는 주로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체계”에 한정하고, 이 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와 권리구제의 체계”와 공공 행정 전달체계로서 “공적 행정조직과 인력”의 범위로 하여 그 문제점과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인력이라 함은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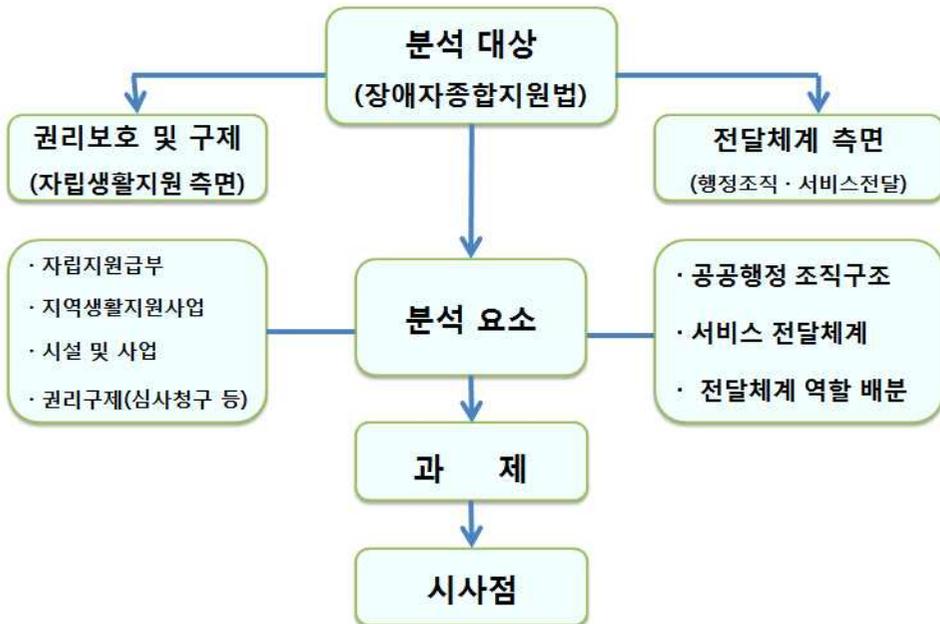
11) 자립생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 신체적인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족,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하여, 자기의 역할을 유지할 능력을 최대한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는 일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자립생활연구회, 1996).

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종사자를 충칭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서비스 공공 행정 전달체계는 행정조직, 전문 인력 등이 급여의 수요에 따라 적합하게 확립하고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회복지의 개별 법률에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어떠한 복지를 누구에게 요구하고 어떠한 수속을 밟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해야 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직,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행정을 수행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자립생활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분석하려고 한다.

<그림 3-1>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체계 분석틀



2.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및 인권의 침해 등에 있어 다면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각종 지원과 권리보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표 3-1>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¹²⁾과 같이 본칙 총 10장 1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

장 별	제 목	조항 수
제1장	총 칙	6
제2장	자립지원급여	85
제3장	지역생활지원사업	3
제4장	사업 및 시설	8
제5장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8
제6장	비용	5
제7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장애인종합지원법 관계 업무	3
제8장	심사청구	9
제9장	잡 칙	4
제10장	별 칙	7
부 칙		1

12) 본 표는 일본장애인종합지원법 내용을 중심으로 법조항 구성을 위해 연구자가 배치기준을 재구성한 것임.

장 및 절		조 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 제5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기본 이념) 제2조 (기초지자체의 책무) 제3조 (국민의 책무) 제4조 (정의 : 장애인) 제5조 (정의 :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2장 자립지 원급여	제1절 통칙 제6조~ 제14조)	제6조 (자립지원급여) 제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제8조 (부당이익의 징수) 제9조 / 제10조 / 제11조 (보고 등) 제12조 (자료의 제공 등)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제14조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p>제2절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인특별 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제15조~제51조 의4)</p>	<p>제1관 시·정·촌심사회 (제15조~제18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제15조 / 제16조 (시·정·촌심사회) 제17조 (공동설치지원) 제18조 (정령에의 위임)</p> </div> <p>제2관 지급결정 등(제19조~제27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제19조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 제20조 (신청) 제21조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제22조 (지급급여의 결정 등) 제23조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제24조 (지급결정의 변경) 제25조 (지급결정의 취소) 제26조 (광역지자체의 지원 등) 제27조 (정령에의 위임)</p> </div> <p>제3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 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제28조~제31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제28조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제29조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제30조(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등 급여) 제31조(개호급여 등 가액의 특례)</p> </div> <p>제4관 특정장애인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 급여의 지급(제32조~제35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제35조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p> </div>
--	---

		<p>제5관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제36조~제51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36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제37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의 변경) 제38조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 제39조 (지정장애인지원시설 지정의 변경) 제40조 삭제 제41조 (지정의 갱신) 제42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의 책무) 제43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기준) 제44조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의 기준) 제45조 삭제 제46조 (변경신고 등) 제47조(지정사퇴) 제47조의 2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 조정 또는 원조) 제48조 (보고 등) 제49조 (권고, 명령 등) 제50조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 (공시)</p> </div> <p>제6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2 - 제51조의 4)</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51조의 2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 (보고 등) 제51조의 4 (권고, 명령 등)</p> </div>
--	--	---

	<p>제3절 지역상담지원 급여, 특례지역상담 지원 급여,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 지원 급여의 지급 (제51조의5~제 51의33조)</p>	<p>제1관 지역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 의 지급(제51조의 5 ~ 제51조의 1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51조의 5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상담지원 급여결정) 제51조의 6 (신청) 제51조의 7 (급여여부 결정 등) 제51조의 8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제51조의 9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 제51조의 10(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취소) 제51조의 11(광역지자체에 의한 원조 등) 제51조의 12 (정령에의 위임) 제51조의 13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제51조의 14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제51조의 15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p> </div> <p>제2관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의 지급(제51조의 16 ~ 제51조의 18)</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51조의 16 (계획상담지원급여비 및 특례계획상담지원급여비의 지급) 제51조의 17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제51조의 18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p> </div>
--	--	---

	<p>제4절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 호의료비의 지급 (제52조~제75조)</p>	<p>제3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 사업자(제51조의 19~제51조의 3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51조의 19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제51조의 20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제51조의 21 (지정의 갱신) 제51조의 2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 상담지원사업자의 책무) 제51조의 23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4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5 (변경의 신고 등) 제51조의 26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제51조의 27 (보고 등) 제51조의 28 (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29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 30 (공시)</p> </div>
--	---	--

		<p>제4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1~제51조의 33)</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51조의 31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2 (보고 등) 제51조의 33 (권고, 명령 등) 제52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 제53조 (신청) 제54조 (지급인정 등) 제55조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제56조 (지급인정의 변경) 제57조 (지급인정의 취소) 제58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제59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 제60조 (지정의 갱신) 제61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책무) 제62조 (진료방침) 제63조 (광역지자체장의 지도) 제64조 (변경신고) 제65조 (지정의 사퇴) 제66조 (보고 등) 제67조 (보고, 명령 등) 제68조 (지정취소 등) 제69조 (공시) 제70조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제71조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제72조 (준용) 제73조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심사 및 지불) 제74조 (광역지자체의 원조 등) 제75조 (정령에의 위임)</p> </div>
--	--	---

	제5절 보장구비의 지급 (제76조)	제76조 (보장구비의 지급)
	제6절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76조의2)	제76조의2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3장 지역 생활 지원 사업	(제77조~제78조)	제77조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77조의2 (기간(基幹) 상담지원 센터) 제78조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4장 사업 및 시설	(제79조~제86조)	제79조 (사업의 개시 등) 제80조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기준) 제81조 (보고의 징수 등) 제82조 (사업의 정지 등) 제83조 (시설의 설치 등) 제84조 (시설의 기준) 제85조 (보고의 징수 등) 제86조 (사업의 정지 등)

<p>제5장 장애인복지계획 (제87조~제91조)</p>	<p>제87조 (기본방침) 제88조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9조 / 제89조의 2 (광역시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9조의 3 (협회의 설치) 제90조 (광역시자체의 장의 조언 등) 제91조 (국가의 지원)</p>
<p>제6장 비용 (제92조~제96조)</p>	<p>제92조 (기초지자체의 지급) 제93조 (광역시자체의 지급) 제94조 (광역시자체의 부담 및 보조) 제95조 (국가의 부담 및 보조) 제96조 (준용규정)</p>
<p>제7장 국민건강보험단 체인합회의 장애인종합 지원법 관계 업무 (제96조의2 ~ 96조의4)</p>	<p>제96조의 2 (연합회의 업무) 제96조의 3 (의결권의 특례) 제96조의 4 (구분 경리)</p>



<p>제8장 심사청구 (제97조~제105조)</p>	<p>제97조 (심사청구) 제98조 (이의신청심사회) 제99조 (위원의 임기) 제100조 (회장) 제102조 (기초지자체에 대한 통지) 제103조 (심사를 위한 처분) 제104조 (정령 등에의 위임) 제105조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p>
<p>제9장 잡칙 (제106조~제108조)</p>	<p>제105조의 2 (연합회에 대한 감독) 제106조 (대도시 등의 특례) 제107조 (권한의 위임) 제108조 (실시규정)</p>
<p>제10장 벌칙 (제109조~제115조)</p>	<p>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p>
<p>부칙</p>	<p>• 법 시행일 규정</p>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보호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장애인을 수급자로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체계를 종합하여 법적 고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기초가 되는 법상 수급권영역의 권리성 등의 고찰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급여와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 구조를 검토하여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과 이에 법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률에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권리구제 체계를 살펴보고 한다.

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법의 목적규정은 법률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종합지원법 제1조에서는 “이 법률은 장애인기본법(법률 제84호)의 기본적 이념에 따라, 신체장애인복지법(법률 제283호), 지적장애인복지법(법률 제37호),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호), 아동복지법(법률 제164호) 기타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적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

즉, 대부분 法文의 형태가 “a를 b함으로써 c의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a와 b는 목적 달성의 수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제도나 사업의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진술되어 있고, c는 그 법의 적용대상자(수급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규정은 역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본이념

제1조의2 (2013년 4월 1일 시행)에서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고 귀중한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가능한 자신의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참가의 기회가 확보됨과 어디서 누구와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장

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장벽이 되는 사회의 대상, 제도, 관행, 관념 그 외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라고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이념은 사회복지수급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권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규범이기 때문에, 권리성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權利性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규정, 법률안의 목적 규정, 국가책임 규정 등을 검토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法的 權利는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념적 근거를 인간다운 생활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서 인간다운 생활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가능한 자신의 가까운 장소에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참가의 기회가 확보됨과 어디서 누구와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장벽이 되는 사회의 관계, 제도, 관행, 관념 그 밖에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 제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국민의 책무)에서는 「모든 국민의 장애 유무에 의해 구별되어짐 없이 상호 인격과 개성을 서로 존중하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기본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의 지원 등을

위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기초지자체의 책무

기초지자체(특별구를 포함하며 이하에서 시·정·촌을 기초지자체라 한다.)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제2조).

- 一 .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한 장소에 거주하거나 또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지자체구역의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직업안정소 기타의 직업재활(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쇼와 35년 법률 제123호) 제2조 7호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재활을 말한다. 이하는 같다)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모색하며 필요한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
- 二 .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하고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처리할 것.
- 三 . 의사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의 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 및 조정을 행할 것. 기타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

기초지자체의 책무로서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장소에서 거주하고 또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이 자립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지자체의 구역에 있어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한 후에, 공공직업안정소 그 밖의 직업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고 필요한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권리옹호는 사회정의의 보장과 유지를 목적으로 개인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줄 것, 그리고 무능력 상태에 처해 있거나 배제되어 온 사람에게 권한과 능력을 배분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의 책무

장애자종합지원법 제2조 2항은 광역지자체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 一 .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이 적절하고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할 것.
- 二 . 기초지자체와의 제휴를 도모하며 필요한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
- 三 . 장애인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것을 실시할 것.
- 四 .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및 기타 지원을 할 것.

따라서 이 법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a)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 (b)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 (c) 장애인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것을 실시할 것) (d)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 (e)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및 기타 지원을 할 것 등으로 하고 있다.

3) 국가의 책무

이 법 제2조 3항에서 “국가는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자립지원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 이 법률에 기초한 업무가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4항에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 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 생활 지원 사업의 제공 체제의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의 지원 등을 위한 시책으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 정도, 생활의 실태」에 따라 시책을

책정, 실시해야만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의 지원 등을 위해 시책을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민의 책무

이 법 제3조에서 “모든 국민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등이 그 능력 및 적성에 맞게 자립적인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실현에 협력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물론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고 귀중한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다. 수급대상자의 적격성

1) 서비스의 대상자

이 법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위험이나 사회문제에 대해서 자기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체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는 법 영역이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구체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조 1항에서 장애인의 범위(2013년 4월 1일 시행)는 “이 법률상의 [장애인]란 신체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체장애인·지적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인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장애인(발달장애인지원법 2004년 법률 제167호 제2조 2항에서 규정하는 발달 장애인을 포함하며, 지적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인을 제외한다. 이하 [정신장애인]라 한다)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병, 기타 특수질환으로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장애 정도가 후생노동성장관이 정한 정도의 자로, 18세 이상인 자를 가리킨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빈틈없는 제도적 지원

을 위해 장애인 규정(정의)에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질병, 그 밖에 특수질환으로 정령에 정한 것(난병)으로 장애정도가 노동후생대신이 정한 정도인 자를 추가하고 있다. 그 범위가 범위 보다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난병환자 등에서 증상의 변동 등에 의해 신체장애인 수첩을 취득할 수 없었던 일정한 장애를 가진 자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빠짐없이 포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그 서비스대상을 「신체장애인(장애아동 포함),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 등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 법이 제정 전에는 신체장애인은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은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법과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왔다. 그 때문에 시설이용 하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지원구분

이 법 제21조(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2014년 4월 1일 시행)에서 “기초지 자체는 신청이 있을 때,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을 실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촌심사회는 심사 및 판정의 실시에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장애인 등 그 가족, 의사 기타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범위의 변경하고 있다.

즉 장애등급제를 인정하면서 장애정도가 아닌 장애의 다양한 특성과 그 밖의 신체 상태에 따라 필요한 표준적인 지원의 필요 정도를 나타낸 구분으로 명확화하기 위하여 「장애정도구분」을 「장애지원구분」으로 변경하였다.

장애인범위 및 장애지원 구분의 개정
① 지금까지의 세 가지 유형(신체, 지적, 정신장애)의 장애에 더하여 발달장애가 이 법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다.
② 장애지원 구분의 명칭과 정의 변경(장애지원 구분 자체도 장애의 다양성을 기본으로 개정)

라. 법의 주요 급여와 서비스

1) 자립지원급여

이 법 제6조에서 자립지원급여에는 개호급여비, 특례개호급여비, 훈련등급여비, 특례훈련 등 급여비, 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 특례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요양개호의료비, 보장구비 및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등급여비 등이 있다.

이 법에서 ‘급여’ 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급여’ 는 ‘ 서비스와 현금 등 무엇인가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① 지급결정 등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이하 [개호급여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i)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제19조)

(1) 지급결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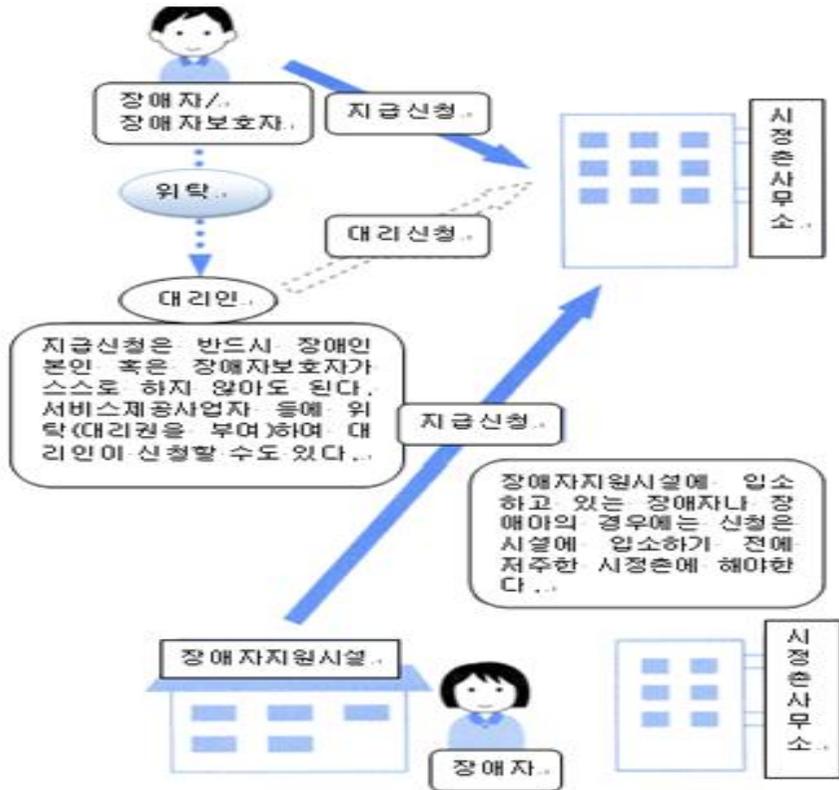
(2)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입소조치가 취해져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및 특정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보유하던 거주지(계속하여 2 이상의 특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특정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에 보유한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지가 없거나 확실치 않았던 특정시설 입소 장애인은 입소 전의 소재지(계속입소 장애인은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의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3) 장애아동 입소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거나 또는 조치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등이 계속해서,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입소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특정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애인등의 보호자였던 자가 있었던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애인등에게 보호자인 자가 없거나, 보호자였던 자가 거주지를 보유하지 않고, 또는 보호자였던 자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장애인등은 그 해당 장애인등이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소재지였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장애인등이 입소한 특정시설은 해당 특정시설이 소재한 기초지자체 및 해당 장애인등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리는 기초지자체에 협력해야 한다.

ii) 개호급여 등의 급여 신청절차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지자체(시·정·촌)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림 3-2> 급여신청절차와 같이 지급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신청이 필요하다.

<그림 3-2> 급여신청절차



(1) 이 법 제20조에서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본인, 보호자, 대리인의 신청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급신청은 장애인 본인 장애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한다. 신청을 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성명, 거주지, 생년월일, 연락처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는 해당 장애아동의 거명, 거주지, 생년월일 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의 관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2)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동향에 규정된 지급여부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

접하고, 그 심신상태와 주변 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조사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반 상담 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지급여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해당결정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접하고, 그 심신상태와 주변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케 한다.

(4) 제2항의 경우에 있어, 기초지자체는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보유할 때에는, 해당 조사를 다른 기초지자체에 촉탁할 수 있다. 또한 해당조사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반 상담 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장애인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위탁에 관한 조사를 수행케 해야 한다.

(5)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이에 하는 자를 말하며, 상담역, 고문 기타 어떤 명칭을 쓰든지에 관계없이 법인에 대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는 같다)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이들 직책에 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위탁업무에 관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등의 임원 또는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로 해당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1907년 법률 제 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 법령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본다.



iii) 지급급여의 결정 등

(1) 이 법 제22조에서 기초지자체는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 해당 장애인 등의 개호를 하는 자의 상황, 해당 장애인등의 주변 환경,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개호급여 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다. 여기서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장애의 종류 및 장애정도,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및 급여량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대상자 심사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 심사 우려가 있고 예측가능성이 없다.

(2) 기초지자체는 지급요구결정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 또는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지적장애인 갱생상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또는 아동상담소(이하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등]이라 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등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동향의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급여부결정에 관한 장애인 등,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기초지자체는 지급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신청에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정 특정 상담지원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대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6) 기초지자체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7)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을 내릴 때,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별로 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기간에 걸쳐 개호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이하 [지급량]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급증(이하 [수급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iv) 광역지자체의 지원 등

이 법 제26조에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하여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개호급여등 지급결정, 신청 등의 업무에 관해 광역지자체가 설치한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등을 통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행한다.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4 제1항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심사판정업무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광역지자체에 해당 심사판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광역지자체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여기서 「~를 둔다.」 규정은 광역지자체 심사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②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등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이 법 제28조 1항에서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및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재택개호, 중증방문개호, 동행원호, 행동원호, 요양개호, 생활개호, 단기입소, 중증장애인 등 포괄지원, 공동생활개호, 시설입소지원, 자립훈련,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원 및 공동생활지원을 의미한다.

- 一 . 재택개호
- 二 . 중증방문개호
- 三 . 동행 원호
- 四 . 행동원호
- 五 . 요양개호(의료에 관한 것을 제함)
- 六 . 생활개호
- 七 . 단기입소
- 八 . 중증장애인 등 포괄지원
- 九 . 시설입소지원



한편 동조 2항에서는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 一 . 자립훈련
- 二 . 취업이행지원
- 三 . 취업계속지원
- 四 . 공동생활지원

i)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지급

(1)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시행자(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라 한다) 또는 장애인 지원시설(이하 [지정장애인 지원 시설]이라 한다)에게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또는 희망원로부터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급결정장애인 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지급량 범위 내에 한함. 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된 비용(식사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거주 또는 체재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또는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특정비용]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를 지급한다(제29조). 이 법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이란 장애인복지 서비스(장애인 지원시설,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지적장애인 종합시설 희망원(のぞみの園)법(2002년 법률 제167호) 제11조 1호의 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장애인 종합시설 희망원이 설치하는 시설(이하 [희망원(のぞみの園)]이라 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입소지원 및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는 같다)를 제외한다)를 실시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으려는 지급결정장애인 등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또는 희망원(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급증을 제시해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비의 가액은 1개월에 대해, 제1호에서 드는 액수에서 제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 一 .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마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요로 한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의 합계액
- 二 .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등의 가계의 부담 능력 그 외의 사정을 참작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액이 전호에서 드는 액수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 가액)

(4)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해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로서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지급결정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지불할 수 있다. 만일 지불이 있었을 때는 지급결정장애인 등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지급이 있던 것으로 본다.

(5) 기초지자체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개호급여 또는 훈련등급여의 청구가 있을 때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함) 또는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함)에 비추어 심사한 뒤 지불한다. 지불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법(1958년 법률 제192호) 제45조 5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ii)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이 법 제30조에서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제 2호에 규정하는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지급량의 범위 내의 것에 한함)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에 대하여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一 .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 二 .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이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다음과 같은 사업소 또는 시설에 의해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 三 . 기타 정령에서 정할 때.

여기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소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소(이하 [기준 해당 사업소]라 한다)를 의미하며,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이란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시설(이하 [기준해당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의 가액은, 월당, 그 달에 받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가액의 합산액에서, 각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등의 가계부담능력과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한 가액(해당정령에서 정하는 비용이 해당 합계한 액수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는, 해당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여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 一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
- 二 .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당 기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에 대해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기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특정 비용을 제함) 비용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

③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이 법에서는 이용본인부담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이 원칙이라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설입소지원, 공동생활지원과 그 밖의 장애인복지서비스비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 및 장애아동 가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인 시설에 있어서의 식사·거주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광열비의 일부를 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로서 지급하게 되었다. 여기서 [시설입소지원]이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로 야간에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동생활지원]이란 지역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 주로 야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할 주거에서 상담, 입욕, 배설, 식사개호 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i)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이 법 제34조에서 기초지자체는 시설입소지원, 공동생활지원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특정입소 등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 중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1항에서 [특정장애인]라 한다)가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안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또는 희망원(이하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또는 공동생활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입주하고, 해당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특정 입소 등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특정장애인에 대해 해당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또는 공동생활 지원을 받은 주거에서의 식사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는 거주에 소요된 비용(동항에서 [특정입소 등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장애인특별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의 지역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룹홈·케어 홈 입소자에 대한 지원을 창설한다(2014년 4월 1일 시행). 공동생활하는 주거에서 케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개호(케어홈)를 공동생활지원(그룹홈)으로 일원화한다. 공동생활지원에서 일상생활상 상담을 추가하여 목욕, 배설, 식사개호와 그 외 일상생활상 원조를 하도록 하였다.



ii)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특례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는 기준해당시설 또는 공동생활주거에 있어 소요된 식비와 광열비의 일부를 지급한다. 또한 지정장애인시설이란 기준에 맞으며 광역지자체(도·도·부·현)지사의 지정을 받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기준해당시설이란 인원배치기준이나 설비, 운영요건의 일부만을 충족시킨 시설을 말한다.

이 법 제35조에서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정장애인에 대해 해당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또는 기준 해당 시설 또는 공동생활지원을 받은 주거에서의 특정 입소 등 비용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一 . 특정장애인이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 二 . 특정장애인이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

④ 지정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i)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서 [서비스사업소]라 한다)별로 행한다(제36조).

취업계속지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신청은 해당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을 정해 실시한다.

광역지자체의 장은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신청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의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구역의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의 지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광역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ii)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시설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해당 장애인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정함으로써 행한다(제38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장애인 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의 총원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의 지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광역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iii) 지정의 갱신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을 잃는다. 갱신신청이 있었을 경우, 동항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 유효기간]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종전의 지정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제41조).

iv)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의 책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이하 [지정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재활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도모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해당 장애인 등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2조).

지정사업자 등은 그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거나 기타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정사업자 등은 장애인 등의 인격을 존중하는 한편,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인 등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v)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및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의 기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 별로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三 .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운영에관한사항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이용의 확보, 장애인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유지 등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四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이용 정원 |
|---|

또한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vi) 광역지자체장 등에 의한 연락 조정 또는 원조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와 상호간의 연락조정 또는 해당지정장애 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에게 조언과 원조를 할 수 있다.

2)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 지원 급여비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이 법에서 [상담지원]은, 기본상담지원, 지역 상담지원 및 계획 상담지원을 말하며, [지역 상담지원]은 지역 이행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말한다. 그리고 [계획 상담지원]이란 서비스 이용 지원 및 계속 서비스 이용 지원을 말한다.

또한 [기본 상담지원]은 지역의 장애인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

해서,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등의 개호를 하는 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을 하며, 아울러 이들과 기초지자체 및 제29조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등과의 연락 조정(서비스이용지원 및 계속서비스이용지원을 제외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i)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상담지원 급여결정

이 법 제51조의 5에서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또는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비등]이라 한다)를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함으로써(제51조의6 신청) 기초지자체의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등을 지급하다는 취지결정(이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이라 한다)를 받아야만 한다.

(1) 기초지자체의 급여여부 결정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의 심신상태, 해당 장애인의 지역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역상담지원급여등의 지급의 여부결정(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 12에 대해 [급여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한다(제51조의7).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에 필요할 때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대로,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등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등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급여여부결정과 관련된 장애인,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대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에게 지정특정 상담지원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장애인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 대신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의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급여여부결정을 한다.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경우에는, 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로 1개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역상담지원급여등을 지급하는 지역상담지원의 양(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량]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상담지원급여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이하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에 의한 원조 등

이 법 제51조의11에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등에 의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해야 한다.

ii)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이 법 제51조의13에서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은, 지역상담지원에 대해서 다음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1)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안에,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지정에 관련된 지역상담지원(이하 [지정지역상담지원]이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지역상담지원 급여량의 범위 내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도 동일하다)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지역상담지원급여를 지급한다(제51조의 14).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은, 후생

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을 제시하고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는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는 지정지역상담지원 종류별로 지정지역상담지원으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비용(그 금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넘을 때에는, 해당 실제로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이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았을 때는,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이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로써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 한도에서,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을 대신하여, 해당지정 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지불되었을 때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지역상담지원 급여비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초지자체는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장이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를 청구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지역상담지원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대로 심사 후 지불한다. 지불에 관한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이 법 제51조의15에서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가, 신청한 날로부터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효력이 생긴 전날까지의 사이에, 긴급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았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로 한 비용을,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비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액이 실제로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비용을 초과 시는, 해당 현재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② 계획상담지원급여비 및 특례계획상담지원급여비의 지급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은 계획상담 지원에 대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i)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기초지자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이하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규정한 계획상담 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한다.

- 一 .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기초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이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지정과 관련된 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를 받았을 경우이며, 해당 신청에 관한 지급결정 등을 받았을 때.
- 二 . 지급결정장애인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해당지정에 관한 계속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계속 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는 지정서비스이용지원 또는 지정계속서비스이용지원(이하 [지정계획상담지원]이라 한다)의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 법에서 [서비스 이용 지원]는 신청에 관련되는 장애인등 또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주변 환경, 해당 장애인등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이용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급결정, 지급결정의 변경결정,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또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이하 [지급결정 등]이라 총칭한다)을 받은 후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등, 지정 일반 상

담지원 사업자, 그 밖의 자(다음 항에서 [관계자]라 한다)와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지급결정 등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이를 담당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것이다.

ii)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기초지자체는 계획상담지원대상 장애인등이, 지정계획상담지원 이외의 계획상담지원(이하 이 조에 대해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경우에, 필요시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i)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반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상담지원의 종류 및 일반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다(제51조의 19).

특히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기준으로써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 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제51조의23 제1항).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지역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에는, 해당신고일 전 1개월 내에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해당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역상담지원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ii)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상담지원을 하는 자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준한 자의 신청에 따라, 특정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 대해 [특정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다(제51조의20 제1항).

특히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기준으로써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사업소마다,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정계획상담지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제51조의24 제1항).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기준대로, 지정계획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일 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지정계획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계획상담지원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iii)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책무

이 법 제51조의22에서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이하 [지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장애인들이 자립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공공직업 안정소 그 외의 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를 도모하면서, 상담지원을 해당 장애인들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에 따라 항상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제공하는 상담지원의 질을 평가하고,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담지원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장애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시에,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폐지 또는 휴업일의 1개월 전까지, 그 취지를 기초지자체의 장애 신고해야 한다.

④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이 법 제51조의31에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의무이행이 확보되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여기서 광역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업무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기초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업무관리체제를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명하고,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종업원에게도 출두를 요구 또는 해당 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또는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해당 지정에 관한 사업소, 사무소 기타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 제공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업무관리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제51조의31 2항).

- 一. 다음호 및 제 3호에 든 지정상담지원사업자 이외의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 二. 특정 상담지원사업 만을 운영하는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 해당 지정 관련 사업소가 기초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자는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 三. 해당 지정 관련 사업소가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여기서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즉시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성 장관,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이하 이 관에 대해 [후생노동성 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① 자립지원의료와 자립지원의료비의 인정과 지급

i)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

이 법에서 [자립지원의료]란 장애인 등에 대해 그 심신장애의 완화를 도모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이 심신장애 상태의 경감(輕減)을 위해 자립된 일상생활과 자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자립지원의료기관에서 받았을 때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자립지원의료비가 지원된다. 자립지원의료비는 종래의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육성의료(育成醫療), 정신보건복지법에 근거한 정신통원의료(精神通院醫療),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갱생의료(更生醫療)를 통합한 것이다.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은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하는 취지의 인정(이하 [지급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여기서 지급인정을 받으려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은 광역지자체가 지급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거주지가 없을 경우 또는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를 경유하여 행할 수 있다.

ii) 자립지원의료비 인정과 지급

(1) 지급인정 등

이 법 제54조에서 기초지자체는 신청에 관한 장애인등이 그 심신장애의 상태로 보아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해당 장애인 등 또

는 그 속하는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소득상황, 치료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지급인정을 행한다.

기초지자체 등이 지급인정을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한다.

기초지자체는 지급인정을 할 때, 지급인정을 받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이하 [지급인정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조에 규정하는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전항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명칭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립지원의료수급증(이하 [의료수급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과거에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육성의료, 정신보건복지법에 근거한 정신통원의료,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갱생의료를 통합한 것이라고는 해도 그 지급신청절차는 관할에 따라 다르다.

자립지원의료비 가운데 육성의료는 실시주체인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 직접 자립지원비에 신청한다. 정신통원의료는 기초지자체를 경유하여 실시주체인 광역지자체에 신청한다. 갱생의료는 실시주체가 기초지자체(시·정·촌)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 직접 신청한다. 지급인정에 있어 각각의 자립지원의료의 실시주체는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지정자립의료기관을 정하고 그것을 기재한 수급자증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이용자가 지정자립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2)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이 법 제58조에서 기초지자체 등은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자립지원의료(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라 한다)를 받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인정장애인에 대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한다.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으려는 지급인정장애인 등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의료수급증을 제시하고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립지원의료비의 가액은 1개월 당, 제1호에 든 가액(해당 지정자립지원 의료에 식사요양(건강보험법 제63조 2항 1호에 규정하는 식사요양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2호에 드는 가액의 합산액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생활요양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3호에 드는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 및 생활요양을 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의 예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인등의 가계부담능력, 장애의 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해당 산정한 가액에서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
- 二.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에 한정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 85조 2항에 규정하는 식사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인 등의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 三. 해당지정자립지원의료(생활요양에 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생활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인 등의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자립 지원의료를 받을 때, 기초 지자체 등은 해당 지급인정장애인 등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여, 자립지원의료비로 해당 지급인정장애인 등에 지급해야 할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게 지불할 수 있다. 가령 지불이 있었을 때에는 지급인정장애인 등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

원 또는 진료소(이들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는 같다) 또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에 의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행한다(제59조). 여기서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기관의 경과와 함께 효력을 잃는다(제60조).

(4)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책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실시해야 한다(제61조). 또한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진료방침은 건강보험의 진료방침의 예를 따른다(제62조). 진료방침에 따를 수 없을 때 또는 적당하지 않을 때의 진료방침은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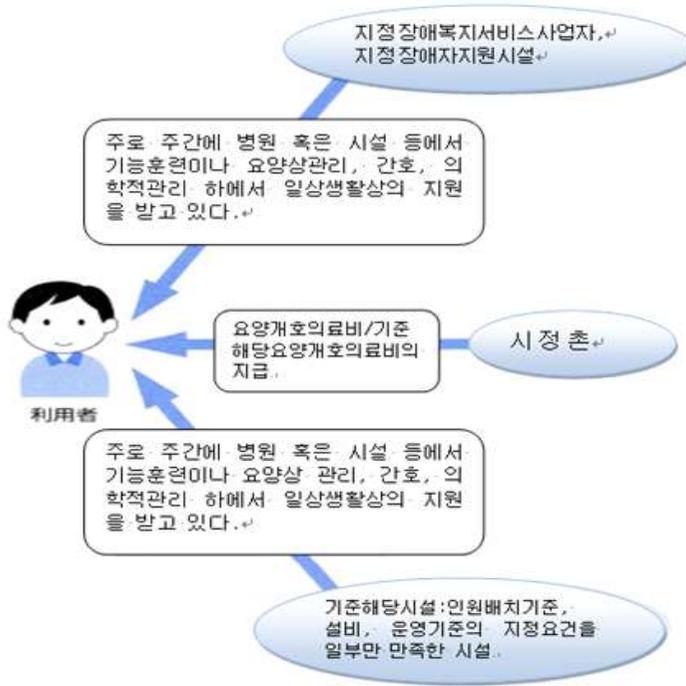
(5) 광역지자체장의 지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자립지원의료의 실시에 관하여 광역지자체의 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요양개호의료비 · 기준해당요양개호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장기요양의료비)는 이용자가 의료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주로 낮에 병원이나 시설에서 기능훈련, 요양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 하에서 개호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이며, 요양개호 중 의료에 관한 것이다. 필요한 비용의 요양개호의료비가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가 요양개호의료를 받은 시설이 기준해당시설인 경우에는 기준해당요양개호의료비가 지급된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영양개호의료비.기준해당 영양개호의료비 시스템



i) 영양개호의료비의 지급

기초지자체는 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등으로부터 해당 결정에 관한 영양개호의료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인에게 해당 영양개호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영양개호의료비를 지급한다(제70조 1항).

ii) 기준해당 영양개호의료비의 지급

기초지자체는 특례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이 기준해당사업소 또는 기준해당시설로부터 해당 영양개호의료(이하 [기준해당 영양개호의료]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인에 대해 해당 기준해당 영양개호의료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기준해당 영양개호의료비를 지급한다(제71조).

iii)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심사 및 지불

이 법 제73조에서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기준해당 사업소 또는 기준해당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비부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진료내용 및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이하 이 조 및 제75조에서 [자립지원의료비]라 한다)의 청구를 수시로 심사하고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을 때(제70조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비부담의료기관은 광역지자체의 장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광역지자체의 장은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 기본법(1948년 법률 제129호)에 정하는 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국민건강보험진료보수 심사위원회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심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공비부담의료기관에 대한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지불에 관한 사무를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 연합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이의신청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iv) 광역지자체의 원조 등

이 법 제74조에서 기초지자체가 지급인정 또는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인정을 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인갱생상담소(신체장애인재활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업무에 관해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인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4) 보장구 · 보장구비의 지급과 판정

① 보장구의 개념

이 법에서 [보장구]란 장애인 등의 신체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고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수, 의족, 장구, 휠체어 기타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장구에 대해서는 그 종목을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고 있고, 다음 세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1) 신체결손 또는 손상된 기능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각각의 장애에 대응하여 설계 및 가공된 것.
- (2) 신체에 장착해 일상생활 또는 취학(취로)에 활용되는 것으로 동일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
- (3) 급여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전문적인 지식이란 의사에 의한 판단이다).

② 보장구비 지급과 이용자 부담

이 법 제76조는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중 장애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시·정·촌)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상태를 판단하여 해당 장애인 등이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가 필요한 자일 경우,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보장구비 지급대상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장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 또는 그 속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득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장구비의 가액은 1개월 당으로, 동일한 달에 구입 또는 수리를 한 보장에 대해서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기준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 해당 보장구비 지급대상 장애인등의 가계부담능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기준액의 합계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보장구의 구입이나 수리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기초지자체에 비용지급을 청구한다. 종래에는 보장구의 제작과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기초지자체의 결정을 받은 이용자 자신이 제작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먼저 지불하고 기초지자체가 통상 필요한 금액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되어 있었다. 2012년 4월 1일부터는 1개월 당 같은 달에 구입 또는 수리한 보장구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비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용자의 가계부담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지자체가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만, 정령에서 정한 금액이 산정한 비용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되었을 경우 10%가 적용된다. 즉 이용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금액은 최대 보장구비의 10%이다. 가령 정률부담에서는 중증의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부담액이 증가한다. 그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0%부담으로 정하였지만 소득에 따른 월액상한선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이용자의 실질적인 부담증가를 덜어주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기초지자체는 보장구비의 지급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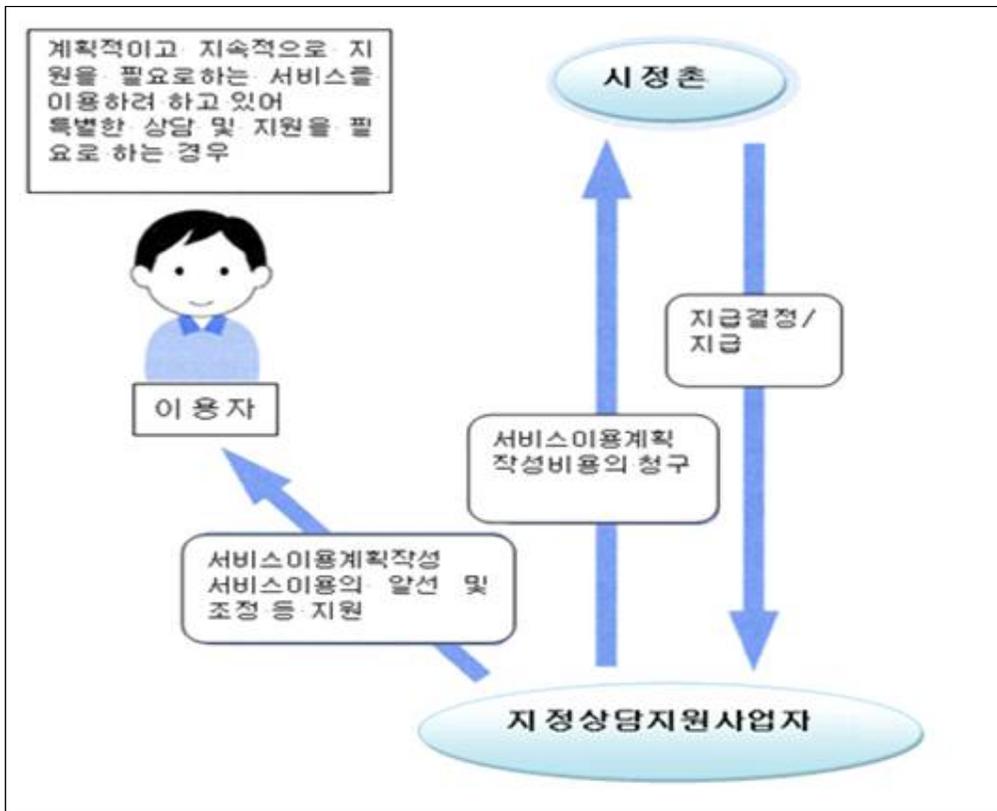
5) 그 밖의 자립지원급여

① 서비스 이용계획작성비의 지급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자립지원급여의 지급결정을 받고 특히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상담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계획의 작성, 서비스 이용의 알선 및 조정 등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서비

스이용계획작성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는 지정상담지원사업자가 기초지자체(시·정·촌)에 청구하고 이 청구에 근거하여 기초지자체가 지원을 결정하며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원된다. 또한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이 없다.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에 대해서는 <그림 3-4>과 같이 현행법에서 상담지원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림 3-4> 서비스이용 계획서작성 비용의 지급



②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급여의 지급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 장애인등이 받은 장애 복지 서비스 및 개호보험법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의 대상 서비스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비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각각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소요된 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해당 비용에 지급된 개호급여 등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구비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일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등에게,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 등 급여비를 지급한다.

동일세대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복수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세대가 지급하는 비용부담이 크고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경시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세대 이용자의 부담을 월액 부담상한액까지 경감한다. 이용자가 복수가 아닌 경우에도 장애자종합지원법에 근거한 서비스 및 개호보험제도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이용자 부담이 매우 고액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경우에도 이용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비가 지원된다.

또한 이 법에 의한 서비스와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서비스의 재원이 세금을 중심으로 한 것에 비해 개호보험제도는 보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립지원급여에 의한 서비스와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가 별개의 것인 경우에는 이 양자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종래에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보장구의 이용자 부담의 상한은 각각 구별되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용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장구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장애인의 권리구제 절차

이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권리보호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권 등을 부여하여 장애인차별조사와 인권침해 예방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한다면 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 제13조(수급권의 보호)에서 “자립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에서 “조세 기타 공과는 자립지원급여로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수급권을 법규상 보장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수급자의 권리보호차원에서 구체절차를 일반적으로 검토해본 후에 구체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다.

1) 심사청구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광역지자체의 장(도·도·부·현의 지사)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97조 1항).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등 또는 지역상담지원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판정의 불복할 때에 심사청구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이의신청법이라는 법률이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시·정·촌)의 권한으로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한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불복신청을 한다. 다만 처분한 행정청 자신이 자신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그것을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신청인은 불만이 남는다. 따라서 행정이의신청법의 특례로서 이 법에 규정을 설치하고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비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심사회의 설치

(1) 광역지자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 사건을 취급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개호급여 등 이의신청심사회(이하 [이의신청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제98조).

(2) 이의신청심사회의 의원 정수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인원으로 하되, 위원은 수준 높은 인격과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 지원급여 등에 관한 처분 심사에 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 중 광역지자체의 장이 임명한다.

광역지자체의 이의신청심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 지원급여는 물론 학대·방임·착취·구금 및 무시 등의 사건에 대한 조사권, 장애인에 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와 관련된 홍보 및 교육, 실종 장애인에 관한 임무 등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② 이의신청심사회의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심사회의 위원장

이의신청심사회는 위원간의 호선으로 위원장 1인을 선출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전항 규정에 준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사청구기간 및 방식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문서 또는 구두로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인해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제101조). 이 경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청구를 수리했을 때, 원 처분을 한 기초지자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심사를 위한 처분

이 법 제103조에서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에 필요할 때에는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그 출두를 명령하여 심문하거나 의사 기타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다음 항에서 [의사 등]이라 한다)에게 진단 기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광역지자체는 출두한 관계인 또는 진단 기타 조사를 한 의사 등에 대해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 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장애지원 구분에 대한 처분, 지급결정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처분, 이용자 부담에 대한 처분으로 구분된다.

① 장애지원 구분에 대한 처분

- 장애지원 구분에 인정 및 그 변경 인정

② 지급결정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처분

- 개호급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결정
- 지급결정(서비스 종류, 지급하는 양, 유효기관) 및 그 변경의 결정
- 지급결정 취소의 결정
- 서비스 이용 계획 작성비 지급대상자 등의 인정
- 개호급여비의 지급 결정
- 특례개호급여비의 지급 결정
- 특례훈련 등 급여비의 지급 결정
- 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의 지급 결정

③ 이용자 부담에 대한 처분

- 이용자 부담 상한월액의 관한 결정
- 이용자 부담의 재해감면 등의 결정
-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급여결정
- 고층급여의 결정

가령, 장애인은 관청의 불복할 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이의신청법이라는 법률이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시·정·촌)가 권한으로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한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불복신청을 한다. 그러나 처분한 행정청 자신이 자신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그 것을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신청인은 불만이 남는다.

따라서 행정이의신청법의 특례로서 이 법에 규정을 설치하고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비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6)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 지원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제97조 1항(심사청구)에 규정하는 처분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얻은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제105조).

여기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얻은 후가 아니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침해가 예상된다.

4.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가. 공공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제로 설치되는 주요 공적 행정조직 및 전문 인력과 연계하는 서비스 지원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법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조속하게 해결하고 장애인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을 지닌 전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세 가

지 핵심적인 기구는 시·정·촌심사회, 기간 상담지원센터, 지역활동지원센터 등이다.

국가가 사회복지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公的 行政體系 重要性이 크게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범위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다양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많은 중앙부처가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실제적인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는 생활하는 현장인 지역사회 속에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을 위해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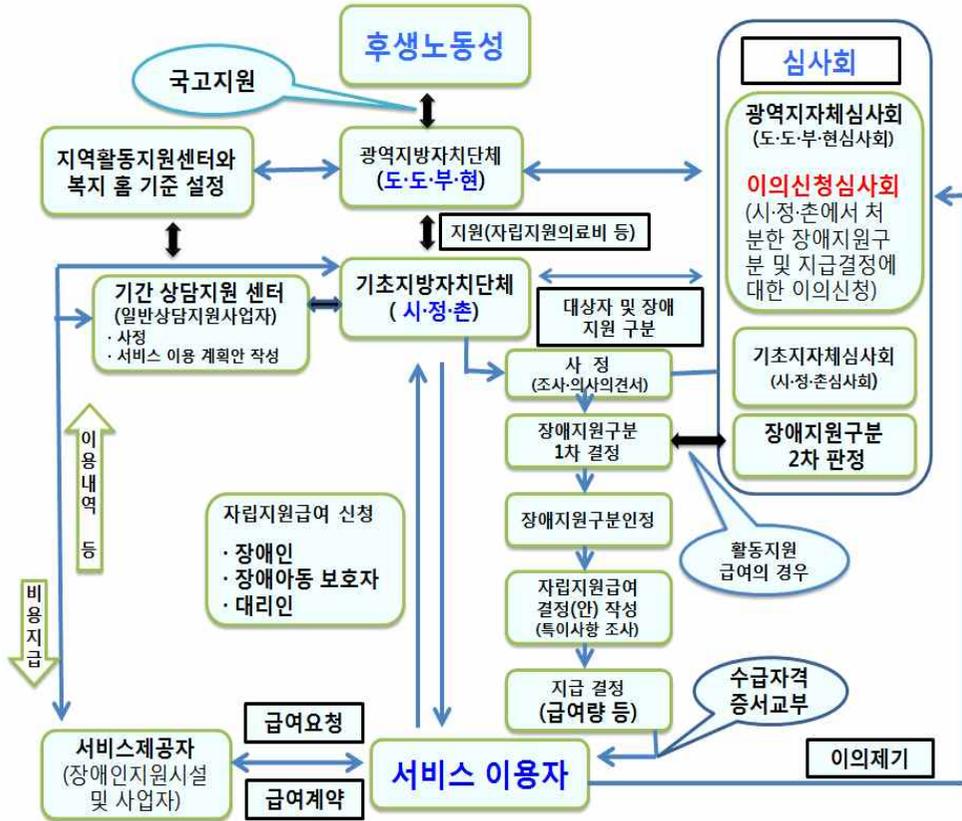
다음에서는 이 법의 전달체계 측면에 있어서 공공 행정조직과 역할배분, 복지서비스신청과 이용절차 등의 전달체계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1) 공적 행정조직의 구조에 대한 분석

장애인복지 서비스제공의 주체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장애아동 포함)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지자체(시·정·촌)로 일원화되었다. 이전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종별에 따라 광역지자체(도·도·부·현)가 되거나 기초지자체가 되는 등 다양하였다. 다만 자립지원의료 가운데 육성의료와 정신통원의료는 광역지자체가 제공의 주체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는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시·정·촌)가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시·정·촌)에서 가능한 것은 기초지자체가 역할을 하는 것이 행동반경이 좁은 이용자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다. 이 법에서는 <그림 3-5>와 같이 공공 행정과 서비스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공공 행정과 서비스전달체계



2) 시정촌심사회

① 설치운영

심사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에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시·정·촌 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제15조).

여기서 광역지자체의 지원(제26조 2항)은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초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심사판정업무(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지급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의 의견청취 등)에 의하여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광역지자체에 해당 심사판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광역지



체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그리고 개호급여등의 지급결정(제19조 1항)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등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이하 [개호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심사회 위원회 정수

시·정·촌심사회 위원회 정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위원은 장애인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에서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는 같다)이 임명한다(제16조).

③ 공동설치지원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52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설치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하여, 기초지자체 상호간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를 공동설치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그 원활한 운영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언,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제17조).

3) 기간(基幹) 상담지원 센터

① 설치운영

기간상담지원센터는 지역상담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제77조의2 제1항).

- 三.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립적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 등을 개호하는 자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 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조정 기타 장애인 등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으로서,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지 못하면 성년 후견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는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77조의2 제2항).

기간 상담지원 센터는 기초지자체(시·정·촌)의 장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센터의 설치·운영의 의무조항을 지방재정 사정과 전체 장애인복지 수준 등을 감안한 정책시행이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② 위탁운영

기초지자체는 일반 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간상담지원센터의 사업 및 업무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제77조의2 제3항). 가령 위탁을 받은 자는, 기간상담지원센터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자는 센터의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장애인복지사업자등, 의료기간, 민생위원법(1948년 법률 제198호)에 정한 민생위원,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2조의3 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신체장애인상담원, 지적장애인 복지법 제1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적장애인상담원,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고, 또는 파견하는 사업의 관계자 기타 관계자와의 연계에 노력해야만 한다.

한편 위탁을 받아 기간상담지원센터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그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에 관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77조의2 제6항).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

①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홈의 설치 및 운영

광역지자체는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시설이 필요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 2항에 있어 같다),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제80조 1항). 여기서 지역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등에게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 다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복지 홈]이란 주거를 구하는 장애인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주택 기타 설비를 이용케 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법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 기준(제80조)의 업무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기관운영의 효과성 측면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기간상담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와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 二.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및 복지 홈에 관한 방의 평면적
- 三.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확보와 비밀 유지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과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등의 안전확보 및 비밀유지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관한 이용 정원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제80조 2항).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와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치자는 동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보고의 징수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 등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 사업, 특정상담지원사업 또는 이동지원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지역활동지원센터 또는 복지 홈의 설치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또는 그 사업소 또는 그 시설을 방문하여 그 설비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81조).

③ 사업의 정지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사업, 특정상담지원사업 또는 이동지원사업 시행자가 이 장의 규정 또는 해당규정에 기초



한 명령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그 사업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피하거나 그 사업관계자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하였을 때, 또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2, 지적장애인복지법 제21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1조의7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에 대해 그 사업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82조 1항).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시행자 또는 지역활동지원센터 또는 복지 홈의 설치자가 해당 규정에 기초한 명령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또는 복지 홈이 제80조 1항 기준[광역지자체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시설이 필요한 것에 한한다),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2, 지적장애인복지법 제21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1조의7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설치자에 대해 그 시설의 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5) 장애인지원 시설의 설치 등

① 설치운영

(1) 국가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제83조 1항). 장애인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법규상 강행적 설치되어야 한다. 이 법에서 장애인 지원시설은 장애인에 대해 시설입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입소지원 이외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설(희망원 및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광역지자체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3) 기초지자체는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한 뒤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는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기준

광역지자체는 장애인지원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제84조 1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一 . 장애인지원시설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二 . 장애인지원시설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三 . 장애인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확보와 비밀 유지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四 . 장애인지원시설에 관한 이용 정원 |
|--|

③ 국가 등 이외의 자가 설치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의 기준을 사회복지법 제65조 1항의 최저기준으로 보고, 동법 제62조 4항, 제65조 3항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보고의 징수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운영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해당시설의 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그 시설을 방문하여 설비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제85조 1항).

⑤ 사업의 정지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설비 또는



운영이 제84조 1항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에 위반할 경우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제86조 1항). 여기서 광역지자체의 장은 처분을 할 때는 문서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배분

다음 <표 3-2>와 같이 기초지자체(시·정·촌)와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역할분담하고 있다.

<표 3-2> 기초지자체(시·정·촌)과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역할분담

<p>광역지자체 (도·도·부·현)</p>	<p>육성의료 및 정신통원의료비의 지급결정 등, 광역지자체(도·도·부·현) 지역생활사업실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자 등의 지정,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 심사청구 및 장애인개호급여비 이의신청심사회의 설치, 기초지자체(시·정·촌) 지원</p>
<p>기초지자체 (시·정·촌)</p>	<p>개호급여비, 훈련 등 급여비, 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용, 자립지원의료비, 보장구비등의 지급결정 등,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실시, 기초지자체(시·정·촌) 장애인복지계획의 책정</p>

① 기초지자체(시·정·촌)

기초지자체(시·정·촌)의 역할은 개호급여비, 훈련등급여비, 서비스이용계획 작성비, 자립지원의료비, 보장구비등의 지급결정 등, 기초지자체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실시,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책정 등이다. 다만 정신통원의료비에 관한 자립지원의료는 광역지자체의 관할이지만 그 신청은 기초지자체를 경유하여 광역지자체에 신청한다.

② 광역지자체(도·도·부·현)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역할은 육성의료 및 정신통원의료비에 대한 지급결정 등, 광역지자체 지역생활사업의 실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자 등의

지정,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 심사청구 및 장애인 개호급여비의신청심사회의 설치, 그리고 기초지자체(시·정·촌)에 대한 지원이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 및 감사도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다. 적절한 운영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는 권고, 및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나 장애인 서비스에 관해 부정 또는 심한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지정효력의 일부 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1) 지역생활지원사업

①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기초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제77조 1항).

- 一. 장애인 등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연수 및 계발을 위한 사업
- 二.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의 가족, 지역주민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등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三.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립적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 등을 개호하는 자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 기관과 연락조정 기타 장애인 등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다)
-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으로서,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지 못하면 성년 후견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
- 五. 장애인에 관련된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에 정한 후견, 보좌 및 보조업무를 적정 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활용을 꾀하기 위한 연수 사업
- 六. 청각, 언어기능, 음성기능 기타 장애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 기타 일상생활의 영위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해 의사소통지원 등(수화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장애인 등과 기타의 자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는 같다)의 파견, 일상생활 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것의 급여 또는 대여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七.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는 사업

八. 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사업은 장애인 등이 원활히 외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九. 장애인 등을 지역활동지원센터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다니게 하며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기회의 제공, 사회와의 교류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게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편 기초지자체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 외에, 현재 주거를 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복지 홈 기타 시설에서 해당시설의 방실 기타 설비를 이용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1)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실시체제의 정비상황, 기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관련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기초지자체를 대신하여 전항 각호에 든 사업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제77조 2항).

(2) 광역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제77조 1항 3호, 6호 및 7호에 든 사업 중 특히 전문성이 높은 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및 특히 전문성이 높은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여, 또는 파견하는 사업,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의 파견에 관련된 기초지자체와의 상호간의 연락조정 기타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제78조 1항).

(3) 광역지자체는 전항에 정하는 바 외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상담 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들에 대해 필요한 지도를 하는 자를 육성하는 사업 기타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사업 및 시설

① 사업의 개시 등

(1) 광역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할 수 있다(제79조 1항).

-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 二. 일반 상담지원 사업 및 특정 상담지원 사업
- 三. 이동지원사업
- 四. 지역활동지원센터를 경영하는 사업
- 五. 복지 홈을 경영하는 사업

(2)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전항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전 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려 할 때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시설의 설치 등(제83조)

1. 국가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한 뒤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는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복지계획

이 법 제87조는 기본방침 개인별지원계획 작성기간, 지원계획의 개시 및 효력 인정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후생노동성의 기본방침

(1) 후생노동성 장관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공체제를 정비하고,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2) 기본방침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
- 二.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 三. 다음 조 1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 및 제89조 1항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 四. 기타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본방침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기본방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장애인등 및 그 가족, 다른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후생노동성 장관은 장애인등의 생활실태, 장애인등이 처한 환경의 변화,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속히 기본방침을 변경하도록 한다.

(5)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②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1) 이 법 제88조 1항에서 “기초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 一 .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 二 . 각 년도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 종류별로 필요한 양을 예상
- 三 .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 항, 각 호 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해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一 . 전 항 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종류별로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방책
- 二 . 전 항 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 및 동항 제3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다른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 내의 장애인 등의 숫자, 그 장애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작성해야 한다.

(4) 기초지자체는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에 있는 장애인등의 심신상황, 처해진 환경, 기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들 사항을 감안하여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5)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인기본법 제11조 3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장애인계획, 사회복지법 제107조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지역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7) 기초지자체는, 제8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회(이하 이 항 및 제89조 6항에서 [자립지원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립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8) 장애인기본법 제34조 4항의 지방장애인시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한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장애인 시책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9)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0)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체 없이 이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장애인복지계획의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1) 광역지자체는 후생노동성 장관의 기본방침에 따라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에 공통되는 광역적 관점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제89조 1항).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제89조 2항).

- 一 .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 二 .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구역별료, 해당 구역의 각 년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량의 예상
- 三 . 각 년도의 지정장애인지원시설 필요 입소정원 총수
- 四 .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항 각 호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一 . 전항 제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대책
- 二 . 전항 제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대책
- 三 .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구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四 . 전항 제2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동항 제4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인기본법 제11조 2항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계획, 사회복지법 제108조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지역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 제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계획에 상응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의 퇴원 촉진을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광역지자체는, 협의회를 설치하였을 때,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6)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장애인기본법 제34조 1항의 지방장애인시책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7)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지체 없이 이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역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전조 2항 각호 사항(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동조 3항 각호 사항을 정할 때에는 해당 각호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장애인등의 지원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관계단체 및 장애인등의 복지, 의료, 교육 또는 고용에 관한 직무 종사자, 기타 관계자(다음 항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89조의3 제1항). 여기서 협의회는, 관계기관 등이 상호연락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장애인등의 지원 체제에 대한 과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응한 체제정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다.

⑤ 국가의 지원

국가는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또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 정해진 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 기타 지원에 힘써야 한다(제91조).

4) 비용

① 기초지자체의 지급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제92조).

- 一 . 개호급여비 등,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二 .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특례지역 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계획 상담지원 급여비(제94조 1항에 대해 [상담지원 급여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三 .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四 . 보장구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五 .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六 .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광역지자체의 지급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제93조).

- 一 .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二 . 광역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 법 제94조 1항(광역지자체의 부담 및 보조)에서 광역지자체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부담한다(제94조 1항).

一. 제92조 1호, 2호 및 5호에 드는 비용 중, 국가 및 광역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및 고액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의 지급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별 인원수, 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지급에 관한 장애인등의 인원수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 액이라 한다)의 25/100.

- 一. 개호급여비 등,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 (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二. 지역상담 지원 급여비, 특례지역 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계획 상담지원 급여비(제94조 1항에 대해 [상담지원 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五.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二. 92조 3호 및 4호에 든 비용의 25/100

- 三.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영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영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四. 보장구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광역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6호에 드는 비용(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25/10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의 부담 및 보조

국가는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부담한다(제95조 1항).

- 一.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액의 50/100
- 二.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3호 및 4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 三.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1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一.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지방자치법 제252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심사판정업무를 광역지자체 심사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제51조의5에서 제51조의 7까지, 제51조의9 및 제51조의10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관한 사무의 50/100 이내.
- 二.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중 제92조 6호 및 제93조 2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이내.

5)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의 장애인 자립지원법 관계업무

① 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그 밖에 제29조 7항(제34조 2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의14 제7항 및 제51조의17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고, 개호급여, 훈련등급여, 특정장애인특별급여, 지역상담지원급여 및 계획상담지원급여의 지불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 의결권의 특례

연합회가 전조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업무(다음 조에서 [장애인 종합지원법 관계업무]라고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

29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약대로 의결권에 관한 특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구분 경리

연합회는 이 법 관련 업무에 관한 경리를 기타 경리와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다. 복지서비스 신청과 이용절차

1) 개호급여 등의 급여 신청

먼저 개호급여 등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를 말한다.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① 본인, 보호자, 대리인의 신청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림 3-5>와 같이 기초지자체(시·정·촌)에 신청해야 한다(제20조).

즉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지자체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아야 한다. 지급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신청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급신청은 장애인 본인과 장애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한다. 신청을 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성명, 거주지, 생년월일, 연락처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는 해당 장애아동의 거명, 거주지, 생년월일 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의 관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하는 곳은 지급결정을 하는 기초지자체이며, 즉 신청자의 거주지의 기초지자체이다. 장애인 본인과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는 경우

나 불명확할 때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현재 생활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초지자체에 신청을 한다. 또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 자신이 아니어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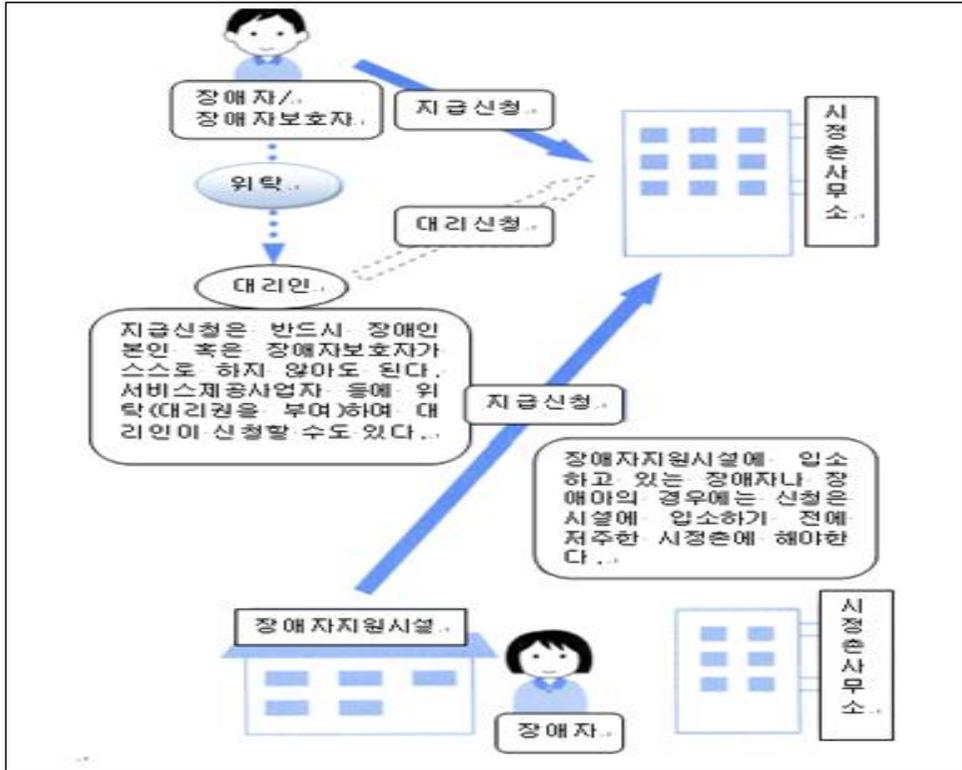
② 신청시의 거주지 특례

지급결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시·정·촌)가 실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제19조 2항).

장애인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신청은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 한다. 이 경우에 지급결정은 입소 전에 거주지 기초지자체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입소하고 있는 시설은 그 시설이 소재한 기초지자체 및 장애인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는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만 한다. 적법한 지급신청을 받을 기초지자체는 최초의 절차로서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을 한다.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입소조치가 취해져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및 특정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거주지(계속하여 2 이상의 특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특정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에 보유한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지가 없거나 확실치 않았던 특정시설 입소 장애인은 입소 전의 소재지 (계속입소장애인은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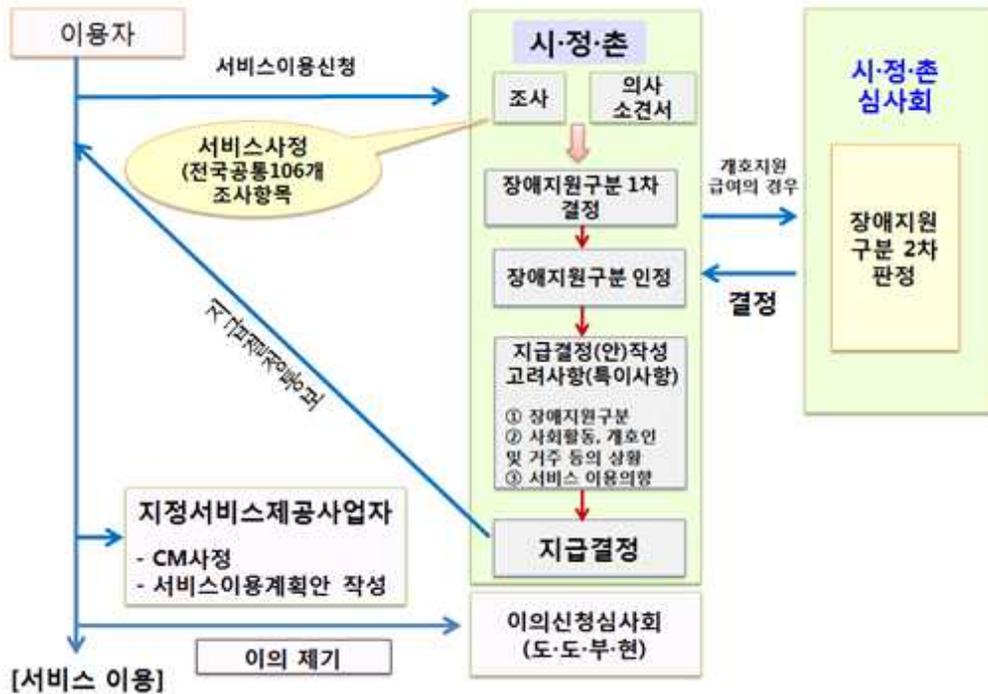
<그림 3-6> 급여의 신청절차



2)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조사

다음에서는 일본 장애지원구분의 인정(판정) 체계를 <그림 3-7> 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7> 장애정도(지원) 구분의 심사과정



위 <그림 3-5>는 개인의 신체기능과 개인의 환경적 욕구가 표현되는 일본의 판정체계, 그리고 특별한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일본의 시·정·촌 심사회는 최종증장애인에게는 엄청난 차이로 다가오게 된다. 장애인의 권리가 기존의 획일적 전달체계 속에서 어떻게 묻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주목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립생활의 내용을 확장하고 전체 장애인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이며, 반대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없이 자립생활의 발전은 없는 것이다.

① 장애인심신의 상태파악

기초지자체(시·정·촌)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



지원 구분의 인정을 행한다(제21조).

신청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수속을 한다. 가장 진행하는 절차가 장애지원 구분 인정조사이다.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동향에 규정한 지급여부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접하고, 그 심신상태와 주변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조사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반 상담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20조 2항).

이 인정조사는 기초지자체가 하되, 다만 원거리의 다른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경우는 거주지의 기초지자체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정상담지원사업소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시·정·촌심사회는 심사 및 판정의 실시에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장애인 등 그 가족, 의사 기타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인정조사의 내용

인정조사는 장애인본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 면접하고 장애지원 구분, 장애종류 및 정도 그 밖의 심신의 상황, 생활환경 등에 대하여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개황상황, 조사, 그 밖의 특기사항 등이다. 개황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인정받은 각종 장애등급 등
- ②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의 상황
- ③ 지역생활관련(외출빈도, 사회활동참가의 상황 등)
- ④ 취로관련(취로상황, 취로경험, 취로희망의 유무)
- ⑤ 일일활동관련(주로 활동하는 장소)
- ⑥ 개호관련(개호자의 유무, 개호자의 건강상태 등)
- ⑦ 거주관련(생활장소, 거주환경)
- ⑧ 그 밖의 서비스종류 또는 양

③ 장애지원 구분의 판정

(1) 1차 판정

인정조사를 마치면 그 내용을 컴퓨터소프트에 입력하여 결과를 얻는다. 조사결과가 지급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의사의견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기초지자체(시·정·촌)는 인정조사원 등에 내용을 재확인한다. 인정조사원은 기초지자체의 직원 또는 기초지자체가 위탁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 등이며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서 연수를 마친 전문가를 의미한다.

개호급여 신청의 경우에는 이후 2차 판정으로 진행된다. 훈련 등 급여의 신청에 대해서는 1차 판정결과에 따라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이 진행된다. 또한 감안사항 조사에는 이용자의 의향을 청취하고 잠정급여가 진행된다. 여기서 잠정급여란 지급결정전에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이것이 타당한지 어떤지 판단하여 좋으면 그대로 이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2차 판정

2차 판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개호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이다. 2차 판정은 시·정·촌심사회에서 한다. 이 심사판정은 1차 판정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의견서 등을 자료로 한다.

시·정·촌심사회는 장애지원구분에 근거하여 1차 판정에서 제시된 장애지원 구분에 맞는지 어떤지 그리고 맞는 경우에는 어느 구분에 맞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한다. 시·정·촌심사회는 장애지원구분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할 때도 의견을 제시한다.

시·정·촌심사회의 심사판정을 거쳐 수정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2차 판정으로 장애지원 구분이 확정된다.

3) 시·정·촌심사회에 의한 확인 내용

① 시·정·촌심사회의 역할

시·정·촌심사회 위원의 정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



다(제16조 1항). 시·정·촌심사회는 조례에서 정해진 정수위원회에 의해서 구성된다.

위원은 장애인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에서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임명한다(제16조 2항). 위원은 장애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학식 경험자로 기초지자체의 장에 의해 임명된다.

시·정·촌 심사회의 임무는 개호급여의 심사대상자인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1차 판정 시에 행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특기사항이나 의사의 의견서 내용과 모순이 없는 검토하고 확인한다. 그리고 1차 판정의 결과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변경을 한다. 이 때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도 기초지자체(시·정·촌) 심사회의 역할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훈련급여 등이 필요한 이용 등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인정의 유효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② 1차 판정의 확정·변경에서 지급결정으로

시·정·촌 심사회에 의해 1차 판정의 결과가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1차 판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활동참가유무나 개호인에 관한 상황 그리고 거주사항 등을 파악하는 감안사항조사가 행해지고 이용자의 의향을 청취한다. 그리고 훈련등급여에서는 잠정지급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적정한지 어떤지 확인을 한 후 지급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하여 1차 판정의 결과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후의 1차 판정의 결과가 2차 판정의 결과가 되고 훈련 등의 급여와 동일하게 감안사항 조사가 행해지며 지급결정이 된다.

4) 지급결정에서 서비스이용까지

① 서비스 이용계획의 작성

이 법 제22조 4항(지급여부의 결정 등)에서는 “기초지자체는 지급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신청에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제51조의17 제1항 1

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특정 상담지원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법 제51조의17(계획상담지원 급여액)에서 기초지자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이하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규정한 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한다.

- 一.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제51조의7 제4항(제51조의9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대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제51조의6 제1항 또는 제51조의9 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기초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이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지정과 관련된 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경우이며, 해당 신청에 관한 지급결정 등을 받았을 때.
- 二. 지급결정장애인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이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해당지정에 관한 계속서비스이용지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동법 제22조 5항 규정에 의해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동항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대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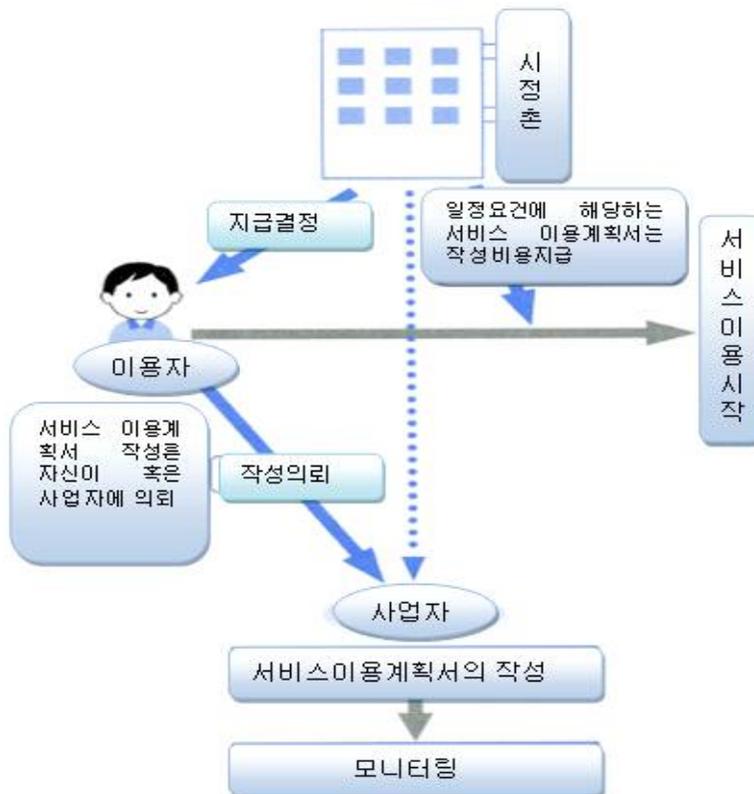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이 지급결정을 받으면 서비스를 지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단계에 들어간다. 다만 급작스럽게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먼저 이용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계획을 작성한다. 서비스 이용계획은 이용자 자신이 작성할 수도 있지만 광역지자체(도·도·부·현)가 지정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와 상담할 수도 있다. 또한 스스로 서비스 이용계획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만이 아닌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다.

② 서비스이용계획 작성비용의 지급

지급결정을 받고 서비스이용계획을 작성해도 특별히 계획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시·정·촌)에서 서비스이용작성계획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기초지자체에서 지급결정통지를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에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 지급신청을 한다. 작성비지급결정이 있을 때는 지정상당 지원사업자에게 작성을 의뢰하고 사업자와 계약을 한다.

<그림 3-8> 서비스이용계획 작성비용의 결정과정



5.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전달체계의 과제

가. 장애인 권리보호의 과제

1) 국가 책임 규정의 문제

국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증진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급여가 公共財라는 개념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의 주체가 국가라는 관점과 일치한다. 즉,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그 내용에 따라 행위규범과 조직규범으로 구분해서 그 임의성과 강제성을 살펴보면 단연코 임의규정(재량규정)이 많다.

2) 재량성 인정에서의 특수성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을 법에 의한 기속의 정도에 의해 구별하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할 수 있다”(任意規定)를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強制規定)를 기속행위로 보았다.

이 법에서는 임의규정(24개 조항)보다는 강행규정(55개 조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의 기속에 따른 복지실천의 의지가 강하게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장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3) 명령 등 하위법령에의 위임

이 법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위임조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령이나 후생노동성령으로 위임한 조항이 지나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금·서비스·현물지원 구체적 조항에 있어서도 하위법령 등에 위임한 사례가 많이 있다. 물론 위임규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중요한 조항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국가책임의 회피성격은 물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4) 권리구제 절차의 문제

법치주의는 미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도 그 내용으로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그 구제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이애자, 1995). 이 법의 대부분은 그 규율대상의 특수성에 기인한 탓인지, 여하튼 매우 영성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령 그런 규정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이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97조(심사청구) 제98조 (이의신청심사회) 제102조(기초지자체에 대한 통지) 제103조(심사를 위한 처분) 제105조(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다른 사회복지법들과 비교해 볼 때 그나마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통일적인 법체계 미비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에 대한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체계는 기존 장애인복지관련 법령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이므로, 기본적 수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라 통일적인 입법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수급권보장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자립생활의 수급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조성하는 입법부터 전개하여야 한다. 前提要件이 성숙되면 현행 장애인종합지원법을 全面改正하든지 간에 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존 장애인복지관련 법령과 조화있게 통일적인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우리의 현실에 規範力이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기본권의 보장이 具體的 權利性을 획득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이 산재하여 있는 조항을 기계적으로 종합할 수 없지만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종합지원법을 비롯하여 장애인 관련법령은 기초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의 法典”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가 경제여건의 지속적인 호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고, 빈곤자의 自活意志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국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본래의 목적과는 괴리되어 그 기능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복지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민주성과 효과성에 역점을 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의 드러난 행정체계의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이원화

장애인복지 서비스 행정체계는 국가에 의해 정해진 정책방향, 기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행정체계에 의해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직적이며, 二元化된 행정체계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에 있는 장애인복지부서의 업무수행 문제점이 피드백을 통해 후생노동성 부처에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며, 중앙부처는 일선기관의 행정보다는 중앙부처의 행정편의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인 급여의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행정체계, 즉 조직,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행정역할에 있어 국가위임의 과다

중앙집권과 관련하여 행정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할 가운데 중앙부처의 위임사무 비중이 과다하여 행정계층간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역할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위임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미비가 되어 있으며, 아울러 기존의 구분상태에서 지방으로 역할이양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가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역할을 이양하는데 소극적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양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및 정보와 기술 등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 의무의 여부를 가리고 대국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 즉 자율권의 범위를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앙부처에 의한 감독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구분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다.

3)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조정 미흡

현재 장애인복지행정의 집행체계가 통일성 있게 상호관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는 복지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치료적 방법으로 대처했던 까닭에 각 복지문제와 제도마다 소관부처가 다르게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복지행정의 주무관청이 후생노동성인데, 집행기관은 총리부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시정촌과 도도부현)에 맡겨져 있어, 중복통제를 받게 되는 것도 큰 원인이다.

4) 통합적인 공공 행정과 서비스 전달 체계 수립이 필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시한 모든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심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행정과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① 공공 행정의 전달 체계

우선 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각 지자체 내에 장애인을 위한 행정을 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을 마련하여 행정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장애인들이 기존의 장애인 복지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②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서비스의 분절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가족들은 접촉하는 기관에 항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기관중심의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분절적인 서비스의 비효과성은 기관마다 같은 종류의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제공되며 소비자에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기관주도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분절성의 문제와 비효과성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설계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one-stop shopping(service)”이다.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강, 정신건강, 교육, 재활관련 서비스 등이 통합되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분절적인 서비스에서 통합적이고 지원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복지(well being)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행

정서비스 전달체계와 함께 또 다른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장애인종합지원법 분석의 시사점

앞에서는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법적 구성체계는 물론 그 내용측면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은 기존 장애인자립지원법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완하는 법률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그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해 제공해야 할 임무와 제공방식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방식과 다양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시하여 서비스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오랫동안 장애인기본법 안에서 장애인시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시대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최근에 장애인종합지원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가 성숙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지원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제도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 치부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 제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제도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복지법, 아동복지법의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로서, 이 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근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근거법률로서 제시되며, 시설생활이 아닌 지역자립생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자립’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가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인이 자립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후방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립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며, 본인에게 정률부담(10%)의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문제는 중증장애인 일수록 비용부담이 커지므로 자립을 하고자 해도 자립을 할 수 없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자립생활(IL)에서 말하고 있는 자립생활 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적 판단이 문제라고 제도의 이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木下 大生; 2012, 大胡田 誠; 2012).

둘째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자측면에서 고찰해 본 결과, 법적 구성체계는 물론 그 내용측면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으로는 재가개호·요양·방문·목욕·활동보조 등 10여 개의 서비스로 구성된 개호급여가 있다. 취업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지원으로는 자립훈련·취로이행지원·공동생활지원 등으로 이뤄진 훈련 등 급여가 있고, 이동과 지역생활 적응, 주거를 제공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 등으로 나뉜다.

즉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는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와는 서비스 범위가 다른 것이 큰 특징이다.

이 법 제28조에서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① 재택개호 ② 중증방문개호 ③ 동행 원호 ④ 행동원호 ⑤ 요양개호(의료에 관한 것을 제함) ⑥ 생활개호 ⑦ 단기입소 ⑧ 중증장애인 등 포괄지원 ⑨ 시설입소지원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또한 훈련등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은 ① 자립훈련 ② 취업이행지원 ③ 취업계속지원 ④ 공동생활지원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또한 ⑤ 보장구 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이 법에서 보장구 급여는 개호보험법에서 지급되고 있는 개호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만을 위한 특수한 재활공학기구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의사전달 장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장구 지급만이 아니라 보장구 수리비용을 보조해 주는 이점도 있다. 특히, 보장구는 고가이므로 이용자가 최대 10%로 부담함으로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전동휠체어 등의 필요성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는 본인부담제도(최대 10%정률부담제도)를 두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급여에 대하여 최대 10%의 정률부담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률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본인 부담금 문제는 시설이용 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요양서비스 부분에 있어 추가적으로 동반되는 식사비용이나 요양수발을 위한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대상자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 정신장애인과 장애아동이 포함된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였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서비스 대상도 명확해졌다는 평가이다. 난병장애로 판정된 경우도 신체기능 평가에서 등급판정을 받으며,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됨으로써 포괄적으로 대상을 넓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개호서비스와 훈련급여비, 자립지원의료비, 자립지원 훈련급여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보장구 지급이 명시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호보험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동휠체어나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보장구 및 주택개조서비스 비용까지 이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생겼고, 예산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의 강구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일본의 복지서비스에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있기는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가25%, 도·도·부현(都道府県) 25%, 시·정·촌(市町村) 25%의 재정분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기간상담지원센터와 지역활동지원센터를 제도화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장애인부모들이 오랫동안 요구하였던 부분이다. 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복지센터에서는 소외되어 왔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지원받기에는 많이 부족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와 편견이 많아서 복지기관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이 센터가 전국에 설치되고 나서는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제정을 통하여 보건, 복지, 의료,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 졌고, 조사연구, 전문가의 육성,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익은 결국 장애인의 보호자나 당사자에게 자립생활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평생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사회에서 평생 사회가 장애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근거가 생겨났다고 하는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교육, 거주, 직업 그리고 여가생활 등을 통하여 자립생활지원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도 자립과 탈시설화라는 개념이 장애인복지 현실과 상관없이 이념화되어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장애자종합지원법을 제정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많다.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장애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률은 오늘날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는 확연히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신체적 장애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시행되고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 전체를 지원하기보다는 특정 장애인 개인에게만 서비스가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외국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개인이 직접 찾아다니는 방식이 아닌 기관이 직접 개인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개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분절적인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인 서비스로, 신체적 장애인은 물론 정신적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향후 수립해야 할 장애인 정책은 변화의 흐름들을 바탕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강조하고, 그 가족과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등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중요시 여기는 장애인 지원 종합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IV.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방안

IV.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방안

1.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현황 및 문제점

가. 지원현황

1) 자립생활지원 정책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내법은 아직 미비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분명한 공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계년 계획’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독거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활동보조인의 역량 강화, 활동보조지원대상 확대 등 활동보조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 20,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활동보조지원 대상을 2012년 35,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 거주서비스와 낮 시간 지역생활 지원 시설(그룹홈,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하고,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 등으로 기능개편을 유도하며, 거주 서비스 신규 수요에 대비 소규모 시설 확충, 2012년까지 다가구 매입 공급을 6,500호, 기존주택 전세 5,800호를 공급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사회복지와 연계된 주거서비스 지원 계획 등 탈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및 주택서비스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 석암재단 베데스타요양원의 시설거주인들이 시설비리와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마로니에 8인의 노숙농성 투쟁의 성과로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에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정상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에 있다. 즉, 장애인의 생활시설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마로니에 8인의 투쟁으로 2009년부터는 그 지급대상을 ‘어느 정도 자립생활이 가능한 시설장애인’으로 변경하여 ‘탈시설-자립생활’ 장애인 당사자에게 일시불로 500만원의 탈시설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탈시설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탈시설 계획 및 지원 업무를 맡을 ‘탈시설전환국’과 같은 담당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간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자립생활 지원이 꾸준히 확대·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립생활 실천의지를 드높일 수 있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 내에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동료상담, 권익옹호활동, 정보제공,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조활동, 체험홈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활동지원제도의 현황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의 발전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자립으로의 확장, 전문가중심의 서비스 모형에서 장애당사자 인권운동으로의 전환,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전 지구촌으로의 확산 등은 자립생활패러다임이 갖는 학술적 및 정책적 중요성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이다. 자립생활을 요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의 하나로서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가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권을 지닌 채 스스로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 및 환경의 지원 중 하나로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0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

IV.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방안

가 장애인장기요양의 개념으로 변경되어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제도로 새롭게 시작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표 4-1> 활동지원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활동보조서비스 (’07.04월~’11.09월)	활동지원제도(’11.10월~)
신청 자격	○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	○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외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 직장·학교생활 등 복지 욕구 고려 추가 선정 가능 ○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긴급활동 지원	○ 없음	○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 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 지원급여 제공
급여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 1등급 80만원(100시간) - 2등급 64만원(80시간) - 3등급 48만원(60시간) - 4등급 32만원(40시간) ○ 독거특례 : 64만원, 16만원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6만원(103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3등급 52만원(63시간) - 4등급 35만원(42시간) ○ 추가 급여 - 독거 : 최중증 664천원(80시간), 중증 166천원(20시간) - 출산 66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 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83천원(10 시간)
본인 부담금	○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소득수준에 따라 4~8만원	○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 기본급여액의 6~15%(6/9/12/15%) * 상한 : 국민연금 A값의 5%(11년 91,200원) - 추가급여액의 2~5%(2/3/4/5%)

수급자격 갱신	○ 없음	○ 원칙 2년, 연속2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 시 2회부터 3년
활동지원 기관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제공 인력	○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

3) 자립생활센터의 현황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운동의 성과로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제도화되었으며, 1997년 일본의 자립생활운동가인 나카니시의 소개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고 2000년 가을 일본 자립생활센터협회의 후원으로 한국자립생활지원기금이 조직되어 최초의 자립생활센터인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와 ‘광주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 개소를 필두로 많은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 현재 약 200여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두 개의 협의체가 있다.

사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12년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국고지원(각 1억5천만원)을 받는 센터는 전국에 35곳에 불과하며, 서울시의 경우 국고 4곳과 시비로 20개의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신청기관은 2배수에 이르며,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해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 20여 곳에 이른다.

4) 장애인연금제도의 현황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 금액(소득인정액) 선정기준(2012년도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551,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81,600원)이하인 자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며 모든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94,600원씩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5만원의 추가급여가 이루어진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 달리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씩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에서 8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며 차차상위 계층은 2만원을 신규로 받게 되었다. 향후 장애인 연금은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작년 실태조사 기준 평균 월 23만원)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나. 문제점

1)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는 자립생활

우리나라는 헌법을 비롯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과 관련한 현행 법률에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을뿐더러 이를 위한 지원규정이 제도적 체계를 이루지 못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아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선언적·임의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을 전환하기 보다는 여전히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보호하는 ‘시설수용’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과 관련한 현행 법률들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이라는 의료적 모델과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의 저해’라는 사회적 모델 개념이 모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하며,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립생활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적 관점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되어야 한다.

2) 타당하지 않은 장애등급 판정

한국의 장애인은 의학적 판정에 기초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판정을 받고 있다. 이는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혹은 직업적 능력을 나타내주지 못하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예를 들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10682호)은 제2조(정의) 제1호와 제2호에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 규정. 동 규정에서 장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직업생활과 근로 능력을 고려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각 조항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동법 시행령은 제3조와 제4조 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 및 제도에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에 대한 고려가 사라지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의 경우에서만 보더라도, 현행 법령 및 제도 하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근로능력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에 의존하여 직무나 서비스 내용과는 무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는 장애종류별, 장애등급별로 각각의 서비스의 필요량과 수급자격이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 체계를 갖추어야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

국내 자립생활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제도,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정책과 그에 따른 서비스가 198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급제도에 따른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등급제도는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무시하고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인의 몸을 낙인화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시스템이다.

3) 충분하지 않은 활동지원 급여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신청 자격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 서비스 대상 연령인 6세~64세의 1급 등록장애인 전체는 약 15만 명으로 이 가운데 현행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약 5만 명(기존 3만 5천명, 신규 1만 5천명) 정도로, 전체 1급 등록 장애인의 약 3분의 1 정도가 해당된다. 하지만 활동지원제도가 별도의 판정체계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 장애등급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현행 활동지원제도 규정에 따르면, 개인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및 주·단기 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시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병원 입원 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염려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의 연령기준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원칙적으로 만 6세 미만아동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제도가 제공되지 않는다. 즉, 6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며,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과는 다르게 월 40 ~ 60 시간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성인 장애인 보다 더 많은 급여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최대원, 2012).

무엇보다,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즉, 법적으로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15%의 한도 내이기 때문에 부담 수준을 그 이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15%의 최대치로 그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과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수입까지 자부담 판단 기준으로 본다는 문제가 있다(원종필, 2011). 무엇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본인 부담금이 월 최대 4만원에서(2009년) 8만원으로(2010년), 그리고 2011년 11월부터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칠 경우 약 12만원까지 인상됨에 따라 이용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최대원, 2012).

4) 제도화 되지 않은 자립생활센터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 원 가정에서 자립하는 성인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립생활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생산량과 품질은 충분하지 못하다. 현재 전국 200여개 이상 자생적으로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탈시설-자립생활 초기 정착 과정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과정에서 심리적 지지와 활동보조 등 실질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무 공간, 예산과 인력, 서비스의 질 등은 충분하지 못하다. 자립생활센터 제도화를 통해, 자립생활서비스 신청권한을 활성화하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립생활지원 체계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자립생활센터는 전 장애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이념에 의해 당사자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2. 장애등급제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유럽위원회보고서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17개 국가의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에 대하여 개괄하였으며, 이러한 장애등급제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지원을 위한 행정의 편리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장애등급제를 유지하여 한다는 논리는 주장될 수 있지만 장애등급제와 서비스의 니즈사정에 대한 상관성에서 객관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 나라에서는 장애서비스별 장애대상 규정을 정하는 국가가 많은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장애등급제 고찰을 통하여 함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3가지로 요약되었으며, 선진외국의 17개 국가의 제도에서 장애등급제는 7가지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장애판정에 있어서 엄격한 판정과 관리를 수행하는 나라들은 의료모델에 근거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였고, 유연한 등급 판정 체계를 가지는 나라들은 활동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수당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애판정에 관여하는 전문 인력으로 의사를 비롯한 의료전문가가 관여하는 모델의 경우 장애판정이 엄격하였고, 사회복지사나 행정 공무원 등이 장애정도 사정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였으며, 장애를 굳이 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경우와 직접급여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팀에서 장애사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모델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지만 의사의 전공에 따른 의견 다르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라고 해서 객관적이고 사회적 신뢰성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현재 엄격한 장애등급과 판정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장애등급을 연계시키는 것은 하지 않고 장애서비스별 지원정도를 판정하는 체계를 장애자종합지원법 체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장애지원구분을 하기 위하여 106개 항

목으로 서비스 정도구분을 시행했었지만 정도구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결국 2013년 4월부터는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시행으로 장애인등급제와는 별도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있어서는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서비스 지원 판정을 시·정·촌에서 실시하고 등급을 구분하는 제도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구분으로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등급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선진국 17개국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에서 장애등록은 필연적으로 유지하되, 엄격한 규정으로 장애를 등급화 하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때, 충분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점진적으로 서비스별 지원구분을 구축하고 획일적인 판정체계는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서비스와 장애등급을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장애등급을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수행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시스템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하나의 장애판정결과를 모든 복지서비스에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는 행정편리성은 있으나 장애인을 등급화 하여 차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자격을 1급으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선진국의 장애판정모델을 고찰해 볼 때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진 외국처럼 복지 서비스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무엇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인을 보고, 분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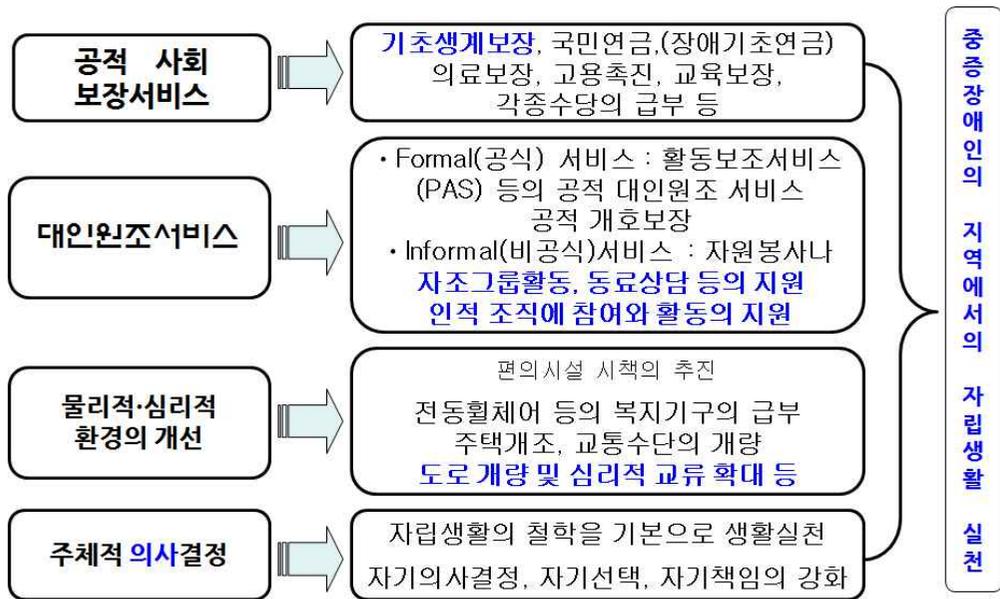
셋째,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속에 공공 행정의 편리성이 녹아 있으며,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장애라는 특수성을 신체적 기준의 의학적 판단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에서 장애를 보고, WHO의 ICF모델에서처럼 활동과 참여 영역에서 자립생활의 달성과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자립생활에 맞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 함께 사정하고 지원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구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을 복지서비스라는 철학 속에서 케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은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3.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자립생활지원은 단순히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다. 자립생활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득보장, 대인원조서비스, 물리적, 심리적 환경의 개선,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의 4대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제도는 이 중에서 대인원조서비스에 해당하며,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4-1> 자립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4대 요소



첫째, 장애등급제와 연관된 서비스 판정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양적인 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 지원에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철학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행 1급 장애인만이 서비스 신청 대상자가 되고 있는 제도는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써 시급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공단과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방안 및 자원동원 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연결고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자활후견기관이나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서비스 기관이 전혀 연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활동지원서비스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계속되어 진다면 자립생활지원이라는 철학적 가치는 없어지고 무한경쟁의 시장원리 속에 녹아들어갈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은 서비스를 위한 상품화가 되어갈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서비스의 특수성과 자립생활의 철학을 되돌아보고 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구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문제이다. 일본은 2006년도부터 장애인 자립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자부담의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헌법소원이 이루어 졌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위험 소요에 대하여 타협을 제시하고 새로운 서비스체계를 약속하였다. 그 결과 2012년 7월에 장애자 자립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법률체계인 “장애자종합지원법” 체계로 바뀌었고 2013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자부담 문제를 개선할 시기에 왔다고 보여 진다.

4. 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일본은 사회복지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이용계약방식을 도입하였고 질 관리 측면에서 제3자 평가방식을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에 도입하여 체계화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동향은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크며,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3자 평가 방식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제3자 평가방식 도입

1) 일본의 제3자 평가시스템

평가기준은 도·도·부·현의 추진조직이 개발하는데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각의 도·도·부·현이 각각 시설종별에 따라 공통평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평가기준을 개발하는데, 공통평가 기준은 크게 3개 영역, 5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공통평가기준

- i) 복지 서비스의 기본방침과 조직을 평가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이념과 기본방침, 계획의 책정 그리고 관리자의 책임과 리더십으로 하고 각각 세부적으로 지표화 한다.
- ii) 조직의 운영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경영상황의 파악, 인재 확보 및 양성, 안전관리 그리고 지역교류와의 연대로 하여 각각 세부적으로 지표화 한다.
- iii)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실시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이용자 본위의 복지서비스, 서비스 질의 확보, 서비스시작과 계속, 서비스 실시계획의 책정, 이용자 본위의 복지서비스로 하여 각각 세부적으로 지표화 한다.

② 부가기준

구체적인 서비스내용과 제공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설종별마다 판단 기준, 평가기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포인트, 평가 시 중점사항을 부가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평가방법 및 평가기관의 자격

- i) 제3자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이용자의 의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소 평가와 아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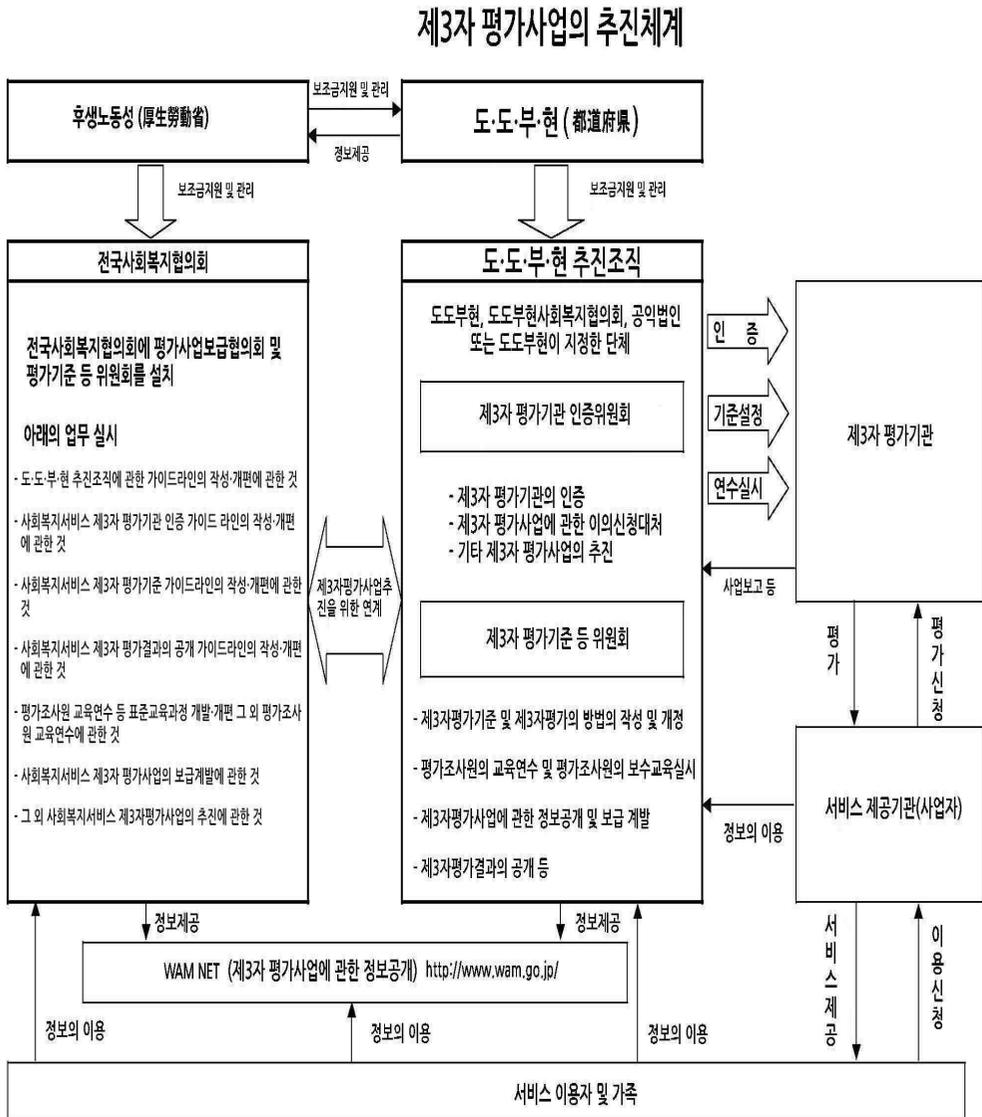
이용자 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계약에 의해 평가를 신청한 담당 사업소에 대한 서면조사를 한다. 서면조사는 평가기관에서 송부된 사업소의 사전 평가표, 기본 조사표 등의 사전 제출 자료에 근거, 방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실시한다. 이때, 사업소의 기능과 특징을 이해하는 동시에 평가조사자간에 방문조사 때 중점적으로 확인할 평가항목이나 유의점을 사전협의하고 공유한다.

- ii) 방문조사 때에는 평가기준을 토대로 사업소 관리자, 직원과 이용자 각각에 대한 사정청취(청문:Hearings)와 서면조사에 의해, 그 조치의 달성 상황을 조사한다. 이용자의 의견과 만족도 평가 등 이용자 의향의 파악은 중요하다. 사업소 내를 시찰하고, 하드면의 조치나 직원의 업무 상황 등을 확인하고, 평가 조사를 실시한다.
- iii) 제3자 평가 결과의 정리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의 정리회의를 가진다. 평가결과에 정리는 제3자 평가의 공정·중립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평가조사자의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iv) 평가결과에 공개는 제3자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도·도·부·현 추진조직이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결과에 공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당 사업소의 동의를 얻어 제3자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v) 제3자 평가기관에 대한 인증요건으로는 첫째,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것, 둘째, 조직운영 관리업무를 3년 이상 경험한 자 중 1인과 복지·의료·보건 분야의 유자격자 혹은 학식경험자로서 해당업무를 3년 이상 경험한 자 중 1인을 평가조사자로 설치할 것, 셋째, 사업내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하는 평가조사자 일람, 사업내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공개할 것,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제3자 평가를 받는 사업자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 등이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의 추진조직으로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 평가사업보급협의회, 평가기준 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사업의 추진 및 도·도·부·현의 추진조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추진조직으로서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 공익법인 또는 도·도·부·현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하며, 도·도·부·현 추진조직은 사업의 전국적인 질의 균일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각 도·도·부·현에 한 개씩 설치한다.

2) 일본의 제3자 평가사업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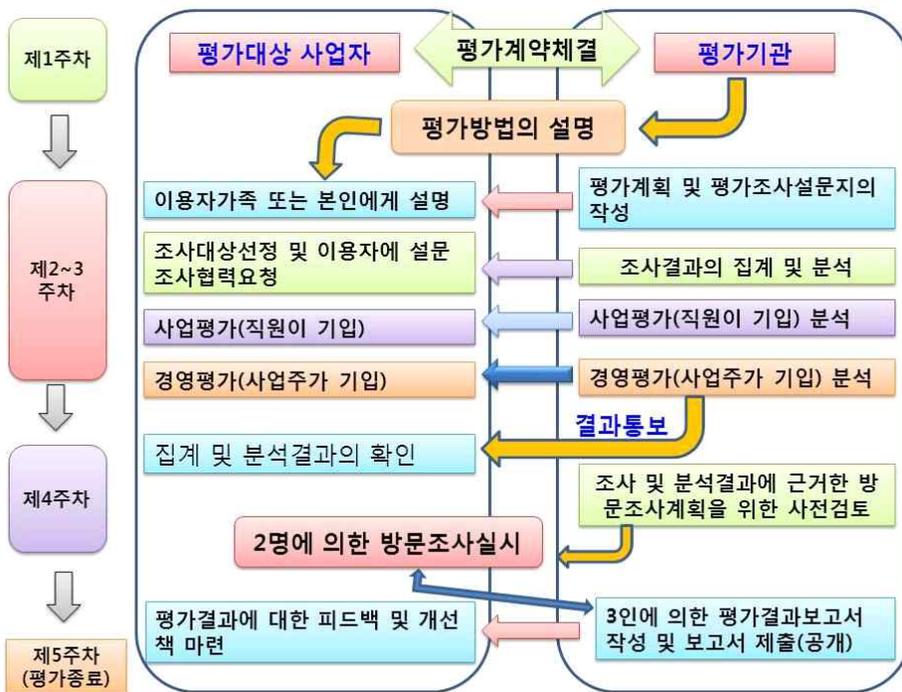
<그림 4-2> 일본의 제3자 평가시스템



일본은 <그림 4-2>에서 제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모든 영역에 제3자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은 전

국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정부가 구축한 홈 페이지 사이트(<http://www.wam.go.jp/>)를 통하여 모두 공개 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개호서비스(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기관 정보는 물론 평가결과를 자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고, 소비자인 이용자가 자유롭게 기관을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관정보와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은 물론 기관의 인프라와 위치, 직원규모, 분야별 서비스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자 평가의 실제 흐름은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그림 4-3> 일본의 제3자 평가의 실제흐름도



위 <그림 4-3>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본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약 1개월간 진행되며, 매우 면밀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평가는 크게 사업체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조직경영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관이 작성한 설문제 제공기관의

직원과 경영자가 기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것을 분석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용자가족 및 본인의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와 이의신청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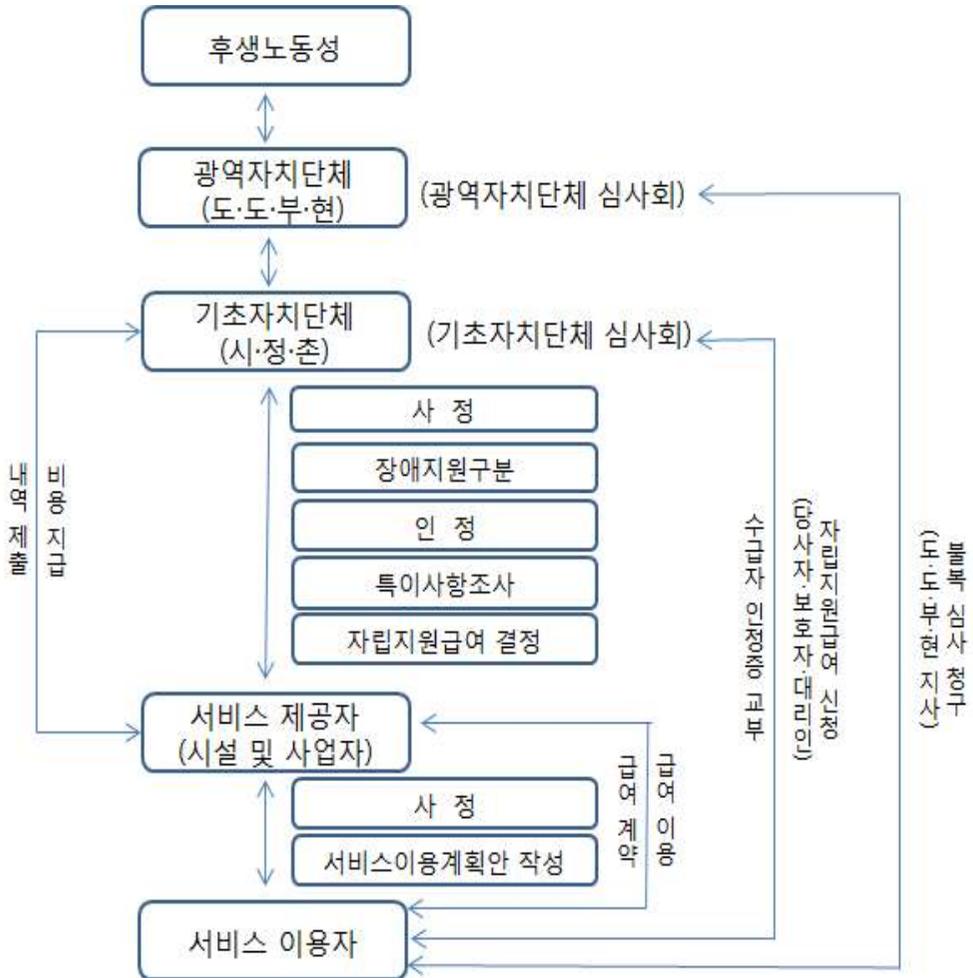
또한 평가기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에 대한 조사도 정부가 실시하여 평가기관의 적법성과 신뢰도, 객관성 등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즉, 일본의 제3자 평가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기업이나 단체가 표준 평가방식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방식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기관이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기관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일본의 서비스 전달체계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는 시·정·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정도(지원) 구분과 개호급부 판정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과 사정 및 평가는 시·정·촌심사회에서 맡고 있다.

사정은 보통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장애정도(지원)를 구분하는 것으로 현행 국내 장애등급심사에 해당하는 절차이며 이후에 희망자에 한해 서비스 판정인 2단계 개호급부판정이 이루어진다. 사정 이후 장애인 당사자의 감안 사항 조사와 서비스 의향 청취를 마치면 서비스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는 케어플랜과 서비스 이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준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제3자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일본 장애인종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는 시·정·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정도(지원) 구분과 개호급부 판정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과 사정 및 평가는 시·정·촌 심사회에서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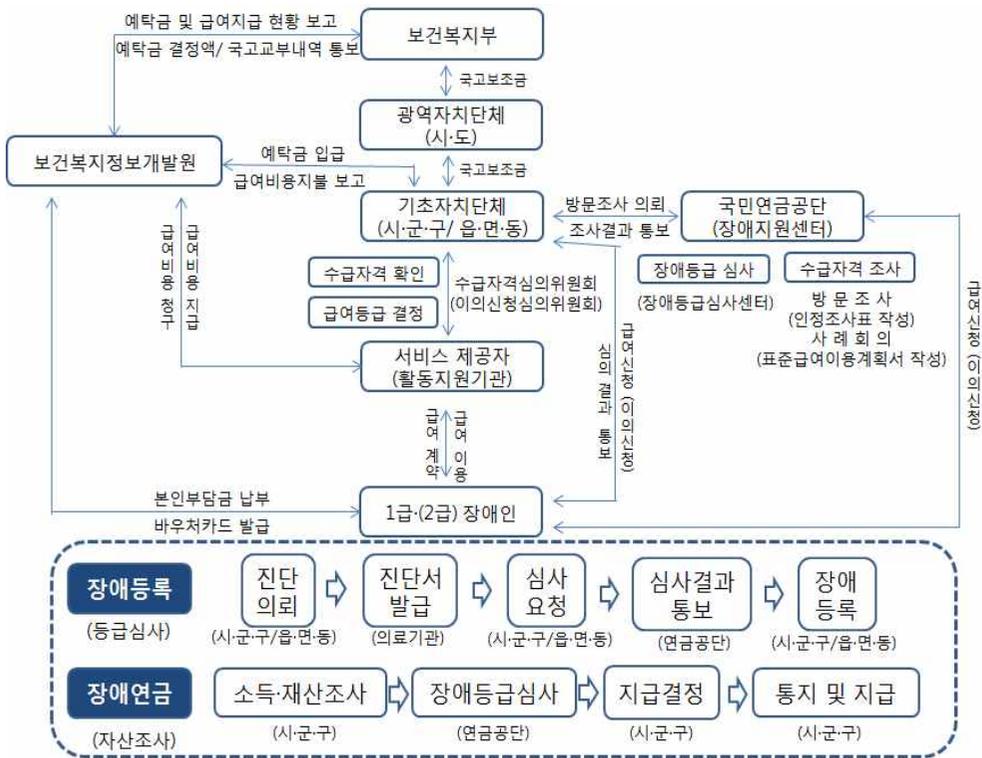
사정은 보통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장애정도(지원)을 구분하는 것이며 이후에 희망자에 한해 2단계 개호급부판정이 이루어진다. 사정 이후 장애인 당사자의 특이사항 조사와 서비스 의향 청취가 마치면 서비스 지급결정이 이루어진다. 수급자가 인증서를 교부 받고 서비스 제공자와 급

IV.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방안

여이용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계획 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에 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일본의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욕구와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시·정·촌심사회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판정하고 장애지원구분과 서비스 이용계획 초안이 마련된다. 서비스 이용계획 초안은 차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되나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심사회에서 지역생활, 취업, 일상생활, 활동보조인 그리고 거주 등과 같은 감안사항과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등에 대한 고려사항 인정 그리고 서비스 의향 청취를 통해 우선적인 안이 마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여가 직접적이다. 또한 제공자에 대한 비용지급을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어 있다.

<그림 4-5> 국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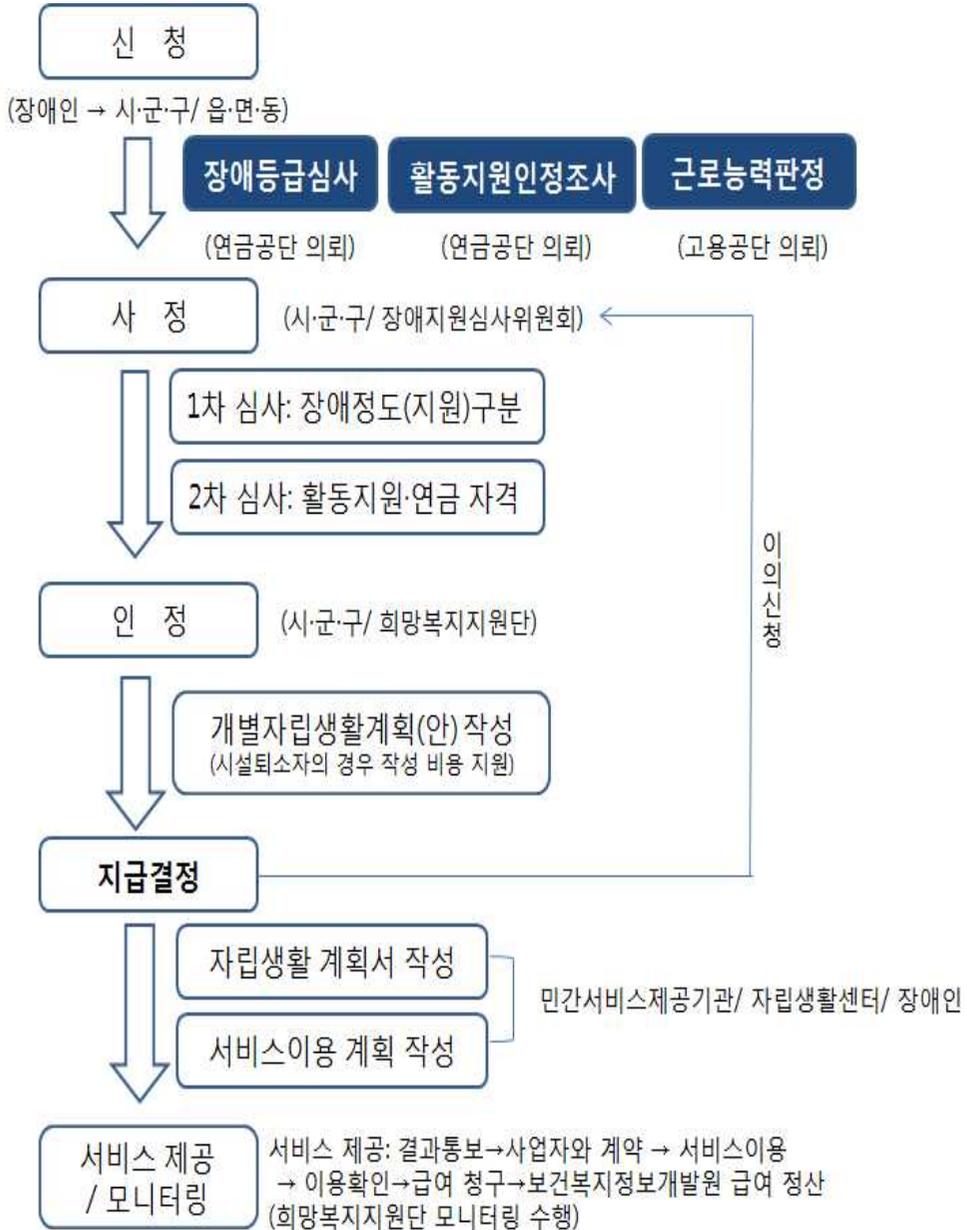


일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욕구 사정, 서비스 지원의 판정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가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나뉘어져 있다.

또한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인 활동지원제도와 연금제도는 장애등급심사와 별도로 이루어진다. 장애등록, 장애연금, 활동지원 등과 같은 자립생활지원 주요 제도에 시·군·구와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이 서로 그 역할을 나누고 있으며, 이들 제도를 모두 고려할 때 제도 간에 이음이 매끄럽지 못하여 이용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장애등록과 장애연금제도에 있어서 시·군·구는 접수창구와 지급결정 그리고 통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적인 권한은 갖고 있으나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활동지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비교할 때, 무엇보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시·군·구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지자체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구는 전문적인 장애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장애지원심사위원회는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와 장애연금, 활동지원 자격을 사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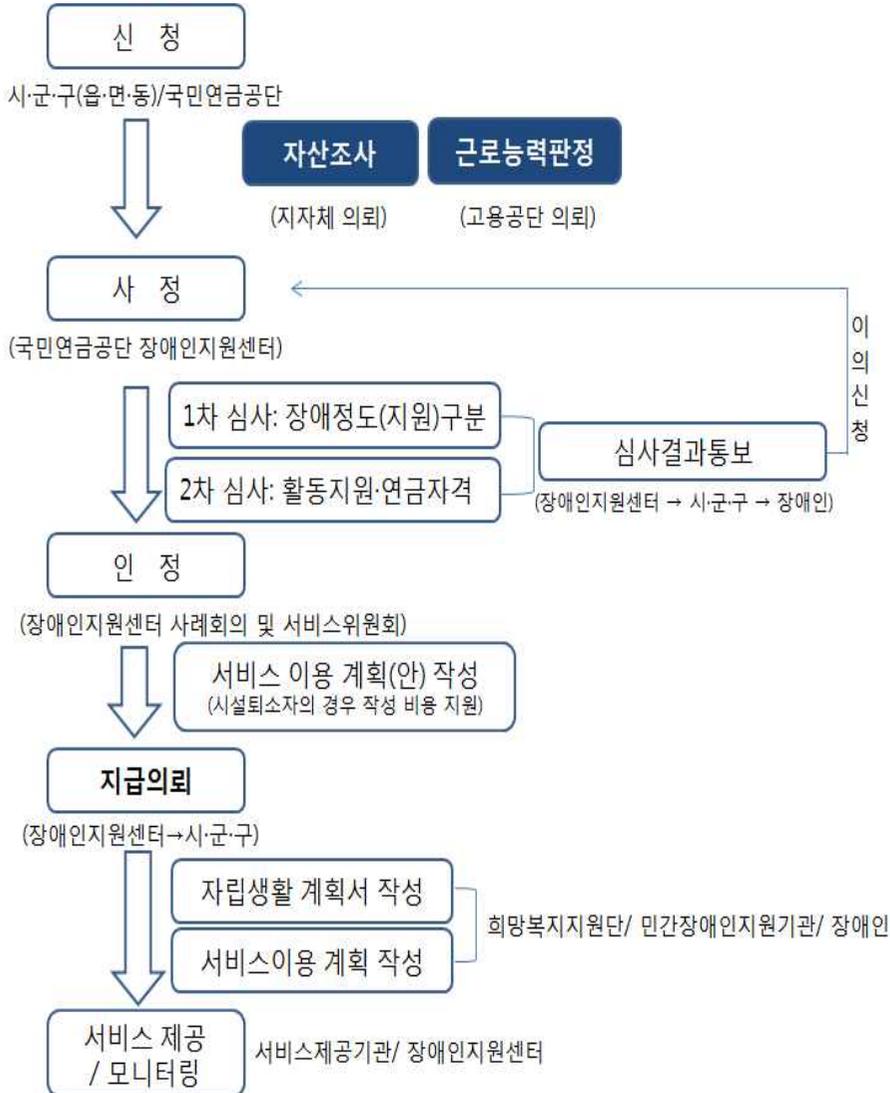
이 위원회에서는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심사, 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조사, 그리고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 등을 연금공단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하고 이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사정, 평가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기능을 확보했을 때, 장애등록 및 심사제도와 활동지원 및 연금과 같은 다양한 급부가 일원화 되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성의 전제 아래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정 절차에서, 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은 장애인지원 서비스 전문가 및 주요 기관대표로 구성된 사례회의를 주례하여, 자립생활지원에 필요한 적절한 장애지원 정도를 인정하고 개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포괄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한 이후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지급 결정을 내린다. 이후 민간장애인지원기관과 자립생활센터 등이 서로 적절한 조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바우처시스템을 유지하되 그 모니터링을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이 맡는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장애인의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의 장애인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장점과 현재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인프라를 통합한 가장 이상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 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 지원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므로 시·군·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시·군·구의 장애지원심사위원회와 희망복지지원단은 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 전문조직을 산하에 두고 연금공단 및 고용공단의 판정과 조사 결과를 한데 모아 분석·평가하고 개별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 4-7> 연금공단중심 제3자 지원형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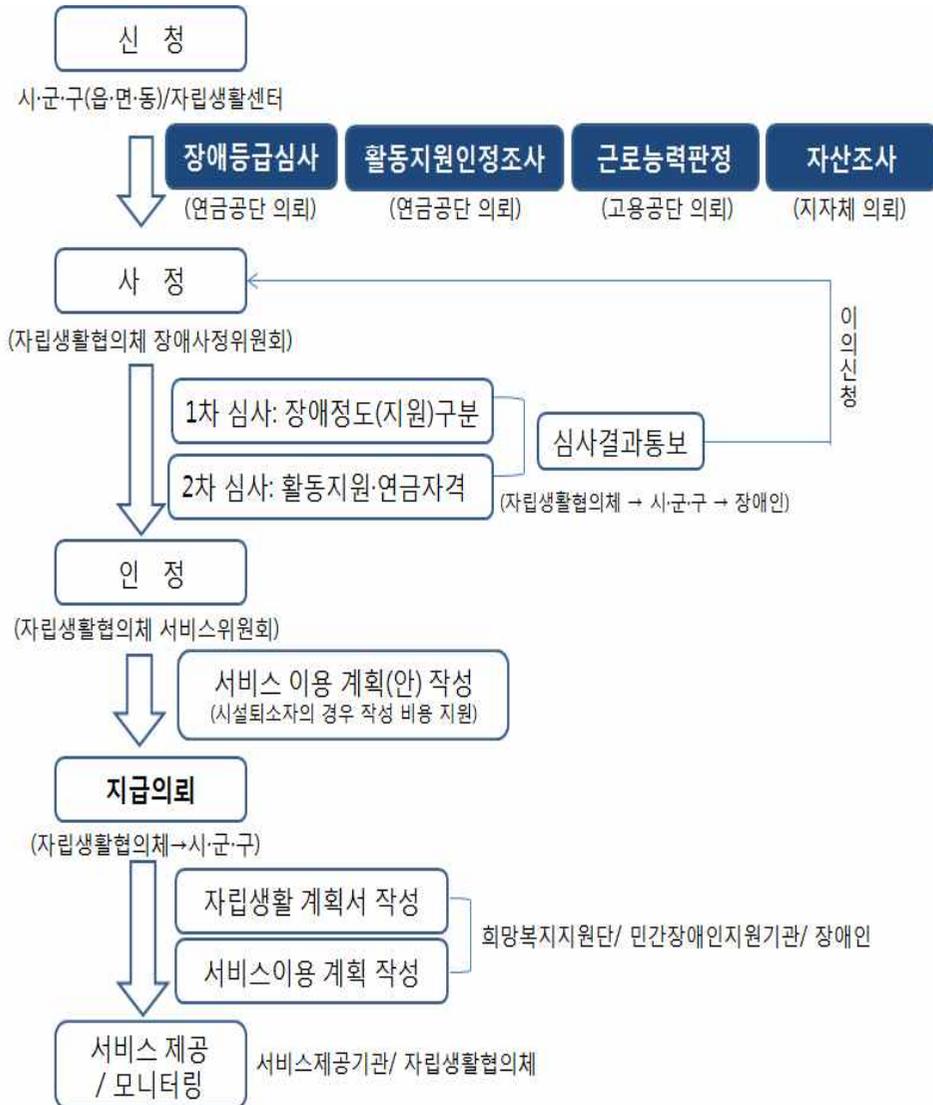
현실적으로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의 분석, 사정, 평가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등록, 장애연금 그리고 활동지원 제도 모두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정도, 활동지원자격 그리고 자산조사 및 근로능력 평가를 일원화하여 수

행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 장애인에게 전달함은 물론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자산조사와 근로능력은 해당 시·군·구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 및 공공기관에 서비스 지급을 의뢰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며 나아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통합모형은 매우 현실적인 구상이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시·군·구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인정하지 않고 다만 지급의뢰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자립생활센터중심 당사자주도형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주도성(User Control)을 높이기 위해서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당사자 중심 모형을 구상해볼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대표 기관으로 자립생활협의체를 조직하고 협의체가 공무원 및 학계전문가 그리고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장애사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정도, 활동지원

자격 그리고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모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자립생활센터의 합법성(legitimation)과 책무성(accountability)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모형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국민연금 공단을 중심으로 제시된 통합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또한 그대로 배태되어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시·군·구가 서비스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비껴나 있으며 서비스 지급을 자립생활협의체가 시·군·구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V. 결론

V. 결 론

본 연구는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에 대하여 2012년도에 제정된 “장애인종합지원법”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장애판정모형을 검토하며,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적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시작된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선진국의 17개 국가의 장애판정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에 있어서 단순히 자리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자립지원은 소득보장과 고용연계, 활동지원서비스, 사회참여지원, 지역사회와의 배리어 프리정책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특히, 장애등급제와 관련하여 볼 때, 자립지원의 상위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적 기초를 지향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선진국의 장애평가모델고찰의 적용방안

선진국의 장애판정모형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과 같이 의학적 판단기준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연한 장애평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사회복지사가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장애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하는 국가도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와 판정체계는 획일적인 판정에서 포괄적 사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나 직업평가서, 가정조사서 등을 서류로 받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지원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사정과 함께 전담공무원이 장애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식은 선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 분석과 시사점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의 정책패러다임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이 지원비제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재활정책에서 자립지원정책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05년에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장애서비스 등급제, 자부담문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현재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자립지원법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급기야는 헌법소원이 이루어졌고, 2010년 1월 장애인자립지원법 위헌소송 원고단·변호단과 후생노동성 간의 화해가 성립되어 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기본합의서에서는 「후생노동성은 신속히 응능부담(정률부담)제도인 장애인자립지원법을 늦어도 2013년 8월까지 폐지하고 새롭고 종합적인 복지법을 제정한다고 하였고 2년간의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종합지원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2013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인자립지원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 법률은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법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배포한 매니페스토에는 자립지원법 폐지를 공헌하였다. 그럼에도 2010년 12월에 「폐지」가 아닌 「개정」이 이루어진다. 2010년 12월 개정 후에도 자립지원법의 근본적인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1년 7월에는 장애인기본법 개정에 근거하여 자립지원법을 대신할 법률의 검토가 진행되었고, 2012년 3월에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애보전복지시책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2년 6월 20일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었고 6월 27일 “장애인종합지원법”이 공포되었다.

가. 장애인종합지원법의 핵심내용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패러다임은 ‘보호’에서 ‘자립’으로 바뀌었다. 즉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지역생활과 취업을 증진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기본법의 기본적 이념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장애유형별로 다른 법률에 기초하여 제공되어 오던 복지서비스와

공적비용부담의 의료 등에 대하여 공통의 제도아래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급여의 대상자, 내용, 절차 등 지역생활 지원사업,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계획 작성, 비용의 지급 등을 지급한다.

나.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요점

1) 기본이념의 명확화와 충실화

장애인 및 장애아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모든 국민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고 귀중한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상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및 장애아가 가능한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참가의 기회가 확보됨과, 어디서 누구와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 받지 않고, 장애인 및 장애아에게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장벽이 되는 사회의 대상, 제도, 관행, 관념 그 외의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장애자의 범위의 확대

빈틈없는 제도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 규정(정의)에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질병, 그 외의 특수질병 가운데 정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장애 정도가 노동후생대신이 정한 정도인 자를 추가했다. 따라서 난치병환자 등에서 증상의 변동 등에 의해 신체장애자 수첩을 취득할 수 없었던 일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장애 정도 구분을 장애 지원 구분으로 변경

장애의 정도가 아닌 장애의 다양한 특성과 그 외의 신체상태에 따라 필요한 표준적인 지원의 필요 정도를 나타낸 구분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 정도 구분」을 「장애 지원 구분」으로 변경하였다.

4) 중증장애인방문개호의 대상 확대

중증방문개호의 대상자를 「중증 신체부자유자 등으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으로서 그 범위를 확대했다. 후생노동성령에서는 현행 중증지체부자유자에 중증지적장애자와 중증정신장애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5) 공동생활개호의 공동생활원조로 일체화

공동생활을 하는 거주에서 케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개호(케어 홈)를 공동생활지원(그룹 홈)으로 일원화한다. 공동생활지원에 일상생활에서의 상담을 추가하여 목욕, 배설, 식사개호와 그 외 일상생활상 원조를 하도록 했다.

6) 지역이행지원 대상의 확대

지역이행(移行)지원 대상에 「지역생활로 이행하기 위해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이 추가되었다.

7)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추가

장애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연수나 개발사업, 의사소통 지원자의 육성사업, 그리고 성년후견제도(후견, 보좌, 보조) 사업을 적절히 행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 등이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추가되었다.

8) 서비스기반의 계획적 정비

장애복지 서비스 등의 기반정비가 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기본지침과 시·정·촌, 도·도·부·현이 정한 장애복지계획에 장애복지서비스 등의 제공체제 확립에 관한 목표사항, 지역생활지원사업 종류마다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였다. 자립지원협의회의 명칭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자나 그 가족의 참가를 명확히 했다.

9) 지정장애복지 서비스 등의 지정 결격요건 추가

지정장애자복지서비스 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시설,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결격요건으로 「노동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정령에 정한 내용에 의해 벌금형에 처하여, 그 집행이 끝났고, 또는 집행을 받을 것이 없어질 때까지의 자인 경우」가 추가되었다.

다.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시사점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정상화와 지역자립지원이라는 선진적인 복지의 이념에 기초하여 ‘보호’에서 ‘자립’이라는 패러다임을 내걸고 ①장애자복지서비스의 일원화, ②장애자가 더욱 일하는 사회 만들기, ③지역의 사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④공평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속과 기준의 투명화/명확화, ⑤급증하는 사회서비스 등의 비용을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시스템 강화, ⑥이용한 서비스 양과 소득에 따른 공평한 부담, ⑦국가의 재정책임의 명확화라는 7가지의 세부목적을 명시하고 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일본사상 초유의 위헌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서비스이용증가에 따른 제정압박이 있었다. 일본정부는 급증하는 서비스의 이용증가에 대한 제정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급여에 대하여 10%의 정률부담을 의무화 하였고 그 10%의 부담이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이 단기간에 장애인종합지원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유는 3가지이며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본인과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연대가 목적으로 이념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보호’에서 ‘자립’이라는 복지이념은 장애인도 인간으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에서 공생해야 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다.

그러나 이용한 서비스 양과 소득에 따른 공평한 부담이라는 재정압박을 해결하려는 세부목표로 인하여 경제적인 지불능력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에서의 공생이 한정 될 수밖에 없다는 이념의 모순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장애인본인과 가족들의 불신은 일본의 장애인복지제도의 빈번한 개정으로 이어져 국가와 제도에 관한 신뢰성을 저하시켰다. 결국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초유의 전국동시 위헌소송이 일어났다.

둘째, 급격한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적정한 유지이다.

조세제도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급격한 이용증가는 국가제정의 큰 압박 요인이다. 2003년 지원비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홈헬퍼 서비스 수요자가 1.6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용자의 범위를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무분별한 이용자의 증가를 간과하는 것은 부적절한 제도운영이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다.

셋째, 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의 지원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케어메니지먼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케어메니저는 다양한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로 대상자의 케어의 질 향상은 물론 비용에 대한 조정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 관리와 양 관리의 서비스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통합적인 사례관리 모형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는 국민적 이해와 설득, 합의에 대한 과정에 중시해야 한다.

제도설립과 개정 등에 있어 장애인본인과 가족에 대한 상황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 없이 제도의 안

정적인 정착은 없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정책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부족했다. 그 예로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 후에 전국적인 헌법소원이 이루어진 이후 후생노동성은 뒤늦게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저소득층 이용자의 본인부담증가’와 ‘임금과 실비부담액의 역전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장애인본인과 가족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실태조사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준다.

3.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정착방안에 대하여

본 연구는 제4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로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와 선진국의 장애평가 모델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검토 가능한 전달체계 적용 방안 3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모형이다. 이는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제도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조세체도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조세 체도로 운영하는 실태이다.

따라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예산과 책임주체, 서비스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적책임이 중요하고 예산의 배분에서도 공적책임을 비켜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제시한 첫 번째 모형으로 지자체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모형이다.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여 내린 결론으로 제일 먼저 검토하여 적용할 모델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공단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모형이다. 이 모형은 현행 연금공단에서 장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결국 예산이나 서비스 결정은 지자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 독립형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 조정 연계의 기능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당사자 중심형 서비스 구축모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술한바와 같이 장애인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이해관계의 심화 등으로 현실성은 미흡하지만 자립생활의 선진모델들은 당사자 중심 모형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선행조건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무엇보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자립생활의 하위요소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지원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현행처럼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며, 광의의 자립생활지원에서 소득보장, 거주, 이동,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2)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5개년 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권선진(2006)장애등록 및 판정절차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국가인권위원회(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부(2012) 장애유형, 연령 및 생활환경 등에 따른 급여 이용실태 조
사 연구.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이애자(1995) 사회복지법제의 입법형식 특수성과 그 문제점 『사회복지개발
연구』 제1권 2호,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이익섭·김경미·윤재영(2007)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9(2): 197-222.
- 정중화·이경준. 2011. 외국의 장애인복지제도고찰을 통한 한국이 개선방향,
재활복지 Vol.15, No. 2, p. 275-304,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茨木尚子·大熊由紀子·尾上浩二·北野誠一·竹端寛(2009) 障害者総合福祉法サー
ビスの展望、ミネルヴァ書房.
- 木下 大生 (2012) Current activities and challenges in transition to
community living in Japan : focus on transi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rom institutions to community living, 発達
障害研究 : 日本発達障害学会機関誌 34(3), 251-260.
- 大塚 晃(2012) 障害者総合支援法で何がどう変わったのか (特集 障害者総合
支援法と障害者福祉制度の今後), 月刊福祉 95(14), 12-18.
- 大胡田 誠(2012) 障害者総合支援法」に異議あり!, 視覚障害 : その研究と情
報(290), 12-21.
- 倉田 哲郎 (2012) 意見 地方自治体からみた障害者総合支援法 (特集 障害者
総合支援法と障害者福祉制度の今後), 月刊福祉 95(14), 42-45.
- 月刊障害者問題情報(2012) 障害者総合支援法案 関係資料 障害者の日常生活
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障害者総合支援法)
案 概要 要綱, (346-348), 2-7.
- 高藤昭(1994) 『社會保障法の基本原理と構造』, 法政大學出版局.

- 坂本洋一(2006) 障害者自立支援法, 中央法規.
- 日本ホームヘルパー協会(2012) 特集 障害保健福祉制度の動向 障害者総合支援法の概要について, ホームヘルパー (440), 4-8, 2012-12.
- 新田 勲 (2012) 障害者運動への問題提起 : 支援費制度から障害者総合支援法に至る運動の総括を, 福祉労働 (136), 153-160.
- 竹端 寛 (2012) 否定された障害者制度改革 : 「障害者総合支援法案」の問題点, 部落解放 (663), 95-103.
- 椋野 美智子(2012) 時事評論 障害者総合支援法と当事者参画, 週刊社会保障 66(2692), 36-37.
- 福祉行政法令研究会(2012) 障害者総合支援法がよ〜くわかる本, 秀和システム.
- 若林美佳(2012) 障害者総合支援法のしくみと福祉施設運営手続きマニュアル, 三修社.
- 障害者政策委員会スタート(2012.7.23) (障害者制度改革についての関係資料 障害者総合支援法 成立・公布【2012年(H24)6月27日】), 月刊障害者問題情報 (351・352), 51-70.
- 聖仰信野(1979) 社會福祉行政研究의 方法視座: 社會福祉行政의 課題研究 (IV), 『社會福祉研究』第24號, 東京: 鐵道弘濟會.
- 일본 후생노동성 홈 페이지 (<http://www.mhlw.go.jp/index.shtml>)
- 장애자종합지원법(2012년 6월 20일 제정)
- 법률원문 참고사이트
(<http://law.e-gov.go.jp/htmldata/H16/H16HO167.html>)
- A.J. Kahn and S.B. Kamerman., *Social servic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emergence of the sixth system*,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77.
- Council of Europe (2000) *Assessing Disability in Europ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SBN 92-871-4744-2]
- Cole, J. A. 1979. "What's New About Independent Living?", Arch Phys Med Rehabil, 60: 458-462.
- _____ 2001. "Skills Training." pp. 187-204. in *Independent Living for Physically Disabled People*, edited by N. M. Crewe and I. K. Zola. Lincoln, NE: iUnivers.
- Deborah Mabbett. 2002. *Definitions of Disability in Europe:*

- A Comparative Analysis*, Brunel University.
- DeJong, G. 1981. *Environmental Accessibility and Independent Living Outcomes: Directions for Disability Policy and Research*. UCIR. Michigan State University.
- European Commission. 2003. *Directorate General for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Definitions in Assistance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Life and Promotion of Independent Living, Appendix 3)*.
- Nosek, M., Jones, S. D. and Zhu, Y. 1989. “*Level of Compliance with Federal Requirements in Independent Living Centers*”, *Journal of Rehabilitation* 55: 31-37.
- Nosek, M., Zhu, Y. and Howland, C. A. 1992. “*The Evolution of Independent Living Program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5(3): 174-189.
-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77.
- O’Day, B., Wilson, J., Killeen, M. and Ficke, R. 2004. “*Consumer Outcomes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Program*”.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0(1): 83-89.
- system, Lachat, M. A. 1988. *The Independent Living Service Model: Historical Roots, Core Elements, and Current Practice*. NH: Center for Resource Management, Inc.
- Stoddard, S. 2001. “*Evaluating Program Methods and Results*,” p. 273-291. in *Independent Living for Physically Disabled People*, edited by N. M. Crewe and I. K. Zola. Lincoln, NE: iUnivvers.
- Soddard, S. and Brown, B. 1980. “*Evaluating California’s Independent Living Centers*”, *American Rehabilitation* 5: 18-23.
- Townsley, R. 2010.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People in Europe*. Synthesis Report. Academic Network of European Disability Experts(ANED)
- Wilson, K. E. 1998.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in Support of Transition*”.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3(4): 246-252.

<부록-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 전문번역본>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일명: 장애인종합지원법)**

1. 장애인종합지원법

(헤이세이 17년(2005) 11월 7일 법률 제 123호)

(헤이세이 24년(2012) 6월 20일 제정 6월 27일 공포, 2013년 4월 1일 시행)

제 1 장 총칙(제1조~제5조)

제 2 장 자립지원급여

제 1 절 통칙(제6조~제14조)

제 2 절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
장애인특별급여 및 특례특정 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제 1 관 시·정·촌 심사회(제15조~제18조)

제 2 관 지급결정 등(제19조~제27조)

제 3 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제28조~제31조)

제 4 관 특정장애인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제32
조~제35조)

제 5 관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및 지정
상담지원사업자(제36조~제51조)

제 6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2~제51조의 4)

제 3 절 지역상담지원 급여,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의 지급

제 1 관 지역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의 지급 (제51조
의 5~제51조의 15)

제 2 관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의 지급 (제51조
의 16~제51조의 18)

제 3 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제51조의 19~제51조의 30)

제 4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1~제51조의 33)

제 4 절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제52조~제75조)

제 5 절 보장구비의 지급(제76조)

제 6 절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76조의 2)

제 3 장 지역생활지원사업(제77조~제78조)

제 4 장 사업 및 시설(제79조~제86조)

제 5 장 장애인복지계획(제87조~제91조)

제 6 장 비용(제92조~제96조)

제 7 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장애인종합지원법 관계 업무(제96조의 2~96조의 4)

제 8 장 심사청구(제97조~제105조)

제 9 장 잡칙(제106조~제108조)

제 10 장 벌칙(제109조~제115조)

부칙

제 1 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장애자기본법(쇼와 45년(1970) 법률 제 84호)의 기본적인 이념에 따라, 신체장애자 복지법(쇼와 24년(1949) 법률 제 283호), 지적장애자복지법(쇼와 35년 법률 제 37호),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쇼와 25년 법률 제 123호), 아동복지법(쇼와 22년 법률 제 164호) 기타 장애자 및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자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자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 2 장애자 및 장애아동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소중한 개인으로써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아래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로 인해 격리되는 일없이,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자 및 장애아동이 가능한 친숙한 환경 속에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에 참가하는 기회가 확보되며 지역사회에서 타인과의 공생을 방해하거나 또한 장애자 및 장애아동에게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상에서 장벽이 되는 사회 속의 사물, 습관, 관념 기타 일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합적·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책무)

제2조 기초지자체(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동문)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1. 장애자 스스로가 선택한 장소에 거주하거나 또는 장애자 혹은 장애아동(이하[장애자 등]이라 한다)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지자체구역의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직업안정소 기타의 직업재활(장애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쇼와 35년 법률 제 123호) 제2조 제 7호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재활을 가리킨다. 이하는 같다)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모색하며 필요한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
- 二.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하고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처리할 것.
 - 三. 의사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의 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 및 조정을 행할 것. 기타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
2. 광역지자체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 一.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이 적절하고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할 것.
 - 二. 기초지자체와의 제휴를 도모하며 필요한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
 - 三. 장애인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것을 실시할 것.
 - 四.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및 기타 지원을 할 것.
3. 국가는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자립지원급여, 지역생활 지원사업 기타 이 법률에 기초한 업무가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해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 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 생활 지원 사업의 제공 체제의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책무)

제3조 모든 국민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 등이 그 능력 및 적성에 맞게 자립적인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실현에 협력해야 한다.

(정의)

제4조 이 법률상의 [장애인]란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장애자(발달 장애자 지원법 (헤이세이 16년(2004년) 법률 제 167호) 제2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발달 장애자를 포함하며, 지적장애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자를 제한다. 이하 [정신장애자]라 한다)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병, 기타 특수질환으로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장애 정도가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정도의 자로 18세 이상인 자를 가리킨다.

2. 이 법률 상 [장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4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아동을 가리킨다.

3. 이 법률 상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호자를 가리킨다.

4. 이 법률 상 [장애지원 구분]이란 장애인 등의 장애의 다양한 특성, 기타 심신상태에 대해 필요한 표준적인 지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구분을 가리킨다.

제5조 이 법률 상 [장애인복지 서비스]란 재택개호, 중증방문개호, 동행원호, 행동원호, 요양개호, 생활개호, 단기입소, 중증장애인 등 포괄지원, 공동생활개호, 시설입소지원, 자립훈련,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원 및 공동생활지원을 가리키며,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이란 장애인복지 서비스(장애인 지원시설,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지적장애자 종합시설 희망원(のぞみの園)법(헤이세이 14년(2002) 법률 제 167호) 제11 조 제 1호 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장애인 종합시설 희망원이 설치하는 시설(이하 [희망원(のぞみの園)]이라 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입소지원 및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하동문)를 제한다)를 실시하는 사

업을 가리킨다.

2. 이 법률 상 [재택개호]란 장애자 등에 대해 재택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 상 [중증방문개호]란 중증의 지체부자유자 그 외 장애자 상시개호가 필요한 장애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재택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편의 및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상 [동행 원호]란, 시각 장애로, 이동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자 등으로, 외출 시에 해당 장애자 등에 동행하여,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동의 원호(援護)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법률 상 [행동지원]란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행동 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자 등으로 상시개호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장애자 등이 행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원호,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이 법률 상 [요양개호]란 의료가 필요한 장애자로 상시개호가 필요함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자에 대해 주로 주간에 병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기능훈련, 요양 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 하의 개호 및 일상생활 상의 지원 제공을 말하며, [요양개호의료]란 요양개호 중 의료에 관한 것을 말한다.

7. 이 법률 상 [생활개호]란 상시개호가 필요함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자에 대해 주로 주간에 장애자 지원시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입욕, 배설 또는 식사의 개호,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 활동의 기회제공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이 법률 상 [단기입소]란 재택으로 개호를 실시하는 자의 질병 기타 이유로 장애자 지원시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의 단기입소가 필요한 장애자 등을 해당시설에 단기 입소시켜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이 법률 상 [중증장애자 포괄지원]이란, 상시개호가 필요한 장애자 중, 그 개호가 필요한 정도가 현저히 높은 자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재택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포괄

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 법률 상 [시설입소지원]이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자에 대해 주로 야간에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 법률 상 [장애자 지원시설]이란 장애자에 대해 시설입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입소지원 이외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설(희망원 및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한다)을 말한다.

12. 이 법률 상 [자립훈련]이란 장애자가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신체기능 또는 생활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이 법률 상 [취업이행지원]이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자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생산 활동 기타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4. 이 법률 상 [취업계속지원]이란 통상적인 사업소에 고용되기 어려운 장애자에 대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 활동 기타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식 및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5. 이 법률 상 [공동생활지원]이란 지역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장애자에 대해, 주로 야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할 주거에서 상담, 입욕, 배설, 식사개호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이 법률상 [상담지원]이란 기본상담지원, 지역 상담지원 및 계획 상담지원을 말하며, [지역 상담지원]이란 지역 이행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말하며, [계획 상담지원]이란 서비스 이용 지원 및 계속 서비스 이용 지원을 말하며, [일반 상담지원 사업]이란 기본 상담지원 및 지역 상담지원 중 어느 쪽이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하며, [특정 상담지원 사업]이란 기본 상담지원 및 계획 상담지원의 어느 쪽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이 법률 상 [기본 상담지원]이란 지역의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장애자 등 장애아의 보호자 또는 장애자 등의 개호를 하는 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을 하며, 아울러 이들과 기초지자체 및 제29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과의 연락 조정(서비스 이용 지원 및 계속 서비스 이용 지원을 제외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 법률 상 [지역 이행 지원]이란 장애인 지원 시설, 희망원 혹은 제 1항 혹은 제 6항의 후생노동 성령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정신과병원(정신과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전용 병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89 조 제 4항에 대해 같다)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 장애인 기타 지역으로 생활을 이행하기 위해 중점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대해 주거의 확보 기타 지역에서의 생활로 이행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상담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 이 법률 상 [지역 정착 지원]이란 거택에서 단신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해당 장애자와 상시의 연락 체제를 확보하고,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의 특성에 기인하여 일어난 긴급한 사태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상담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이 법률 상 [서비스 이용 지원]이란 제 20조 제1항 혹은 제24조 제 1항의 신청에 관련되는 장애인 등 또는 제51조의 6 제1항 혹은 제51조의 9 제 1항의 신청에 관련되는 장애자의 심신상태, 주변 환경, 해당 장애인 등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이용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정(다음 항에서 [지급결정]이라 한다), 제24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정의 변경결정(다음 항에서 [지급결정의 변경결정]이라 한다), 제51조의 5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다음 항에서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이라 한다) 또는 제51조의 9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다음 항에서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이라 한다) (이하 [지급결정 등]이라 총칭한다)을 받은 후에, 제29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일반 상담지원 사업자 기타의 자(다음 항에서 [관계자]라 한다)와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

에, 해당 지급결정 등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이를 담당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1. 이 법률 상 [계속 서비스 이용 지원]이란 제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 혹은 장애아의 보호자(이하 [지급결정 장애인 등]이라 한다) 또는 제51조의 5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을 받은 장애인(이하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장애인]라고 한다)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또는 제51조의 8에서 규정하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계속해서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 또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장애인에 관련된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하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동문)이 적절한지 어떠한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간 마다,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해당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장애자의 지역 상담지원의 이용 상황을 검증하고, 그 결과 및 해당 지급결정에 관련된 장애인 등 또는 해당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과 관련된 장애자의 심신상태, 주변환경, 해당 장애인 등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一.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계자와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것.
- 二. 새롭게 지급결정 혹은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또는 지급결정의 변경결정 혹은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정 등에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등에 관한 신청을 권장하도록 할 것.

22. 이 법률 상 [자립지원의료]란 장애인 등에 대해 그 심신장애의 완화를 도모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이 법률 상 [보장구]란 장애인 등의 신체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고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수, 의족, 장구, 휠체어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이 법률 상 [이동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등이 원활히 외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5. 이 법률 상 [지역활동지원센터]란 장애인 등에게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와 의 교류를 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6. 이 법률 상 [복지 홈]이란 주거를 구하는 장애인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주택 기타 설비를 이용케 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2 장 자립지원급여

제 1 절 통칙

(자립지원급여)

제6조 자립지원급여는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특례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지역 상담지원 급여, 특례 지역 상담지원급여, 계획 상담지원급여, 특례 계획 상담지원 급여,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보장구비 및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제7조 자립지원급여는 해당 장애상태에 대해 개호보험법(헤이세이 9년(1997) 법률 제 123호) 규정에 의한 개호급여, 건강보험법(다이쇼 11년(1922) 법률 제 70호)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기타 법령에 기초한 급여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중 자립지원급여에 상당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정령에서 정하는 급여 이외의 급여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으로 자립지원급여에 상당하는 조치가 행해졌을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부당이익의 징수)

제8조 기초지자체(정령에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자립지원의료비 지급에

관해서는 광역지자체로 한다. 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자립지원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로부터 그 자립지원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는 제29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일반 상담지원 사업자, 제51조의 17 제1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특정 상담지원 사업자 또는 제 54 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지역 상담지원급여, 계획 상담지원 급여, 자립지원의료비 또는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해 그 지불한 금액을 반환케 함과 동시에 그 반환액의 14/100를 추가하여 반환케 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 의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법(쇼와 22년(1945) 법률 제 67호) 제 231 조의 3 제 3항에서 규정하는 법률로 정하는 세입으로 한다.

(보고 등)

제9조 기초지자체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등의 보호자, 장애인 등의 배우자 혹은 장애인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기타 그 세대에 속하거나 속했던 자에 대해 보고 혹은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질문케 할 수 있다.

2.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을 행할 경우, 해당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보아서 안 된다.

제10조 기초지자체 등은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자립지원급여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자립지원의료, 요양개호의료 혹은 보장구의 판매 혹은 수리(이하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이 혹은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자에 대해, 보고 혹은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해당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소 혹은 시설을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전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대해, 동조 제3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 장의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 등)

제11조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한 장애인 혹은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였던 자에 대해 해당 자립지원급여에 관한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 혹은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명하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질문케 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을 행한 자 혹은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보고 혹은 해당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의 제공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3. 제9조 제2항 규정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 동조 제3항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자료의 제공 등)

제12조 기초지자체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장애인 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기타 그 세대에 속하는 자의 자산 또는 수입상황에 대하여 관공서에 대해 필요한 문서의 열람 혹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은행, 신탁회사 기타의 기관 혹은 장애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권의 보호)

제13조 자립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제14조 조세 기타 공과는 자립지원급여로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

제 2 절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및 특례 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제 1 관 시·정·촌 심사회

(시·정·촌심사회)

제15조 제26조 2항에서 규정하는 심사관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제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시·정·촌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 시·정·촌심사회 위원의 정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 위원은 장애자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에서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아래와 같다)이 임명한다.

(공동설치지원)

제17조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설치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하여, 기초지자체 상호간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를 공동설치 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그 원활한 운영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언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령에의 위임)

제18조 이 법률에 정해진 것 외에 시·정·촌심사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2 관 지급결정 등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

제19조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이하 [개호급여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지급결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 단,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

3. 전항 규정에 관계없이 제29조 제1항 혹은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신체장애인복지법 제80조 제2항 혹은 지적장애인복지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입소조치가 취해져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또는 제5조 제1항 혹은 제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및 생활보호법(쇼와 25년(1950) 법률 제 144호)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입소한 장애인(이하 이 항에서 [특정시설입소장애인]라 총칭한다)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제5조 제1항 혹은 제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동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시설(이하 [특정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기 전에 보유하던 거주지(계속하여 2 이상의 특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특정시설입소장애인(이하의 항에서 [계속입소장애인]라 한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에 보유한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지가 없거나 확실치 않았던 특정시설입소장애자는 입소 전의 소재지(계속입소장애자는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4. 전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아동복지법 제24조의 2 제1항 혹은 제24조의 2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아 입소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거나 또는 동법 제27조 제1항 제3호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동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27조 제1항 제 3호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5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이, 계속해서, 제29조 제1항 혹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 제2항 혹은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소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생활보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정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애자 등의 보호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 대해 [보호자였던 자]라 한다)가 있었던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애자 등에게 보호자인 자가 없거나, 보호자였던 자가 거주지를 보유하지 않고, 또는 보호자였던 자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장애자 등은, 그 해당 장애자 등이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소재지였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5.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애자 등이 입소한 특정시설은 해당 특정시설이 소재한 기초지자체 및 해당 장애자 등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리는 기초지자체에 협력해야 한다.

(신청)

제20조 지급결정을 받으려는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2. 기초지자체는 전항의 신청이 있었을 때, 다음 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동항에 규정한 지급여부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신청에 관한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접하고, 그 심신상태와 주변 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케 한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조사를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반 상담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장애자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위탁에 관한 조사를 수행케 해야 한다.

4.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상담역, 고문 기타 어떤 명칭을 쓰든지에 관계없이 법인에 대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동문.) 혹은 전항의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이들 직책에 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위탁업무에 관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당지원사업자 등의 임원 또는 제 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로 해당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메이지 40년(1907) 법률 제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 법령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본다.

6. 제2항의 경우에 있어, 기초지자체는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보유할 때에는, 해당 조사를 다른 기초지자체에 촉탁할 수 있다.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제21조 기초지자체는 전조 제 1항의 신청이 있을 때,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을 행한다.

2. 시·정·촌심사회는 전항의 심사 및 판정의 실시시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장애인 등 그 가족, 의사 기타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급급여의 결정 등)

제22조 기초지자체는 제20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 해당 장애인 등의 개호를 하는 자의 상황, 해당 장애인 등의 주변 환경,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개호급여 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이하 이 조 및 제27조에서 [지급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2. 기초지자체는 지급요구결정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 또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7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제74조 및 제76조 3항에서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라 한다), 지적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6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인 갱생상담소,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신보건복지센터 혹은 아동상담소(이하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등]이라 총칭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등 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동항의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급여부결정에 관한 장애자 등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기초지자체는 지급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제 20조 제 1항의 신청에 관련된 장애자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에게, 제51조의 17 제1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특정 상담지원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전항 규정에 의해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동항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대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해도 좋다.

6. 기초지자체는, 전 2항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7.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을 내릴 때,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별로 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기간에 걸쳐 개호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이하 [지급량]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8.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을 내렸을 때,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급증(이하 [수급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제23조 지급결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한해 효력이 있다.

(지급결정의 변경)

제24조 지급결정장애자 등은 이미 받은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지급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대해 해당 지급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는 전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제22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대해 필요할 때에는 지급결정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 결정에 관한 지급결정장애자에 대해 수급증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3. 제19조(제 1항을 제한다), 제 20조(제 1항을 제한다) 및 제22조(제 1항을 제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지급결정 변경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4. 기초지자체는 제 2항의 지급결정 변경결정을 행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장애지원 구분의 변경 인정을 할 수 있다.

5. 제21조의 규정은 전항의 장애지원 구분변경의 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6. 기초지자체는 제 2항의 지급결정 변경결정을 행한 경우, 수급증에 해당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한다.

(지급결정의 취소)

제25조 지급결정을 내린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一.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二.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 구역 내에 거주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가 특정시설에 입소함으로써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 구역 내에 거주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를 제한다)

三.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조 제2항(전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四. 기타 정령에서 정할 때.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결정을 취소한 기초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소에 관한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대해 수급증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의 지원 등)

제26조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해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전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해 광역지자체가 설치한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등을 통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행한다.

2. 지방자치법 제 252 조의 14 제1항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심사판정업무(제21조 (제24조 제 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4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22조 제2항 및 제 3항(이들 규정을 제24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4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및 제51조의 7 제2항 및 제 3항(이들 규정을 제51조의 9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95 조 제2항 제 1호에서도 마찬가지)를 행하는 광역지자체에 해당 심사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광역지자체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3.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은 전항의 광역지자체 심사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2항 중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동문)]은 [광역지자체의 장]으로 본다.

4. 심사판정업무를 광역지자체에 위탁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제21조 및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들 규정 중 [시·정·촌심사회]를 [광역지자체 심사회]로 본다.

(정령에의 위임)

제27조 이 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장애지원 구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 지급결정, 지급여부의 결정, 수급증, 지급결정의 변경결정 및 지급결정의 취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3 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제28조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

비스에 관하여 다음 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 一. 재택개호
- 二. 중증방문개호
- 三. 동행 원호
- 四. 행동원호
- 五. 요양개호(의료에 관한 것을 제함)
- 六. 생활개호
- 七. 단기입소
- 八. 중증장애인 등 포괄지원
- 九. 시설입소지원

2.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 一. 자립훈련
- 二. 취업이행지원
- 三. 취업계속지원
- 四. 공동생활원조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제29조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시행자(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라 한다) 혹은 장애인 지원시설(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지원시설]이라 한다)에게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또는 희망원로부터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급결정장애자 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지급량 범위 내에 한함. 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된 비용(식사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거주 혹은 체재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또는 창조적 활동 혹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특정비용]이라 한다)를 제한다)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를 지급한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으려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은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또는 희망원(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급증을 제시해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비의 가액은 1개월에 대해, 제1호에서 드는 액수에서 제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종류마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요로 한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의 합계액
- 二.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의 가계의 부담 능력 그 외의 사정을 참작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액이 전호에서 드는 액수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 가액)

4.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해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으로써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지급결정장애자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지불할 수 있다.

5.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이 있었을 때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지급이 있던 것으로 본다.

6. 기초지자체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청구가 있을 때는 제3항 제1호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및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함) 또는 제44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함)에 비추어 심사한 뒤 지불한다.

7. 기초지자체는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법(쇼와 33년(1958) 법률 제 192호) 제4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8. 위의 각항에 정하는 바 외에 개호급여 및 훈련급여의 지급 및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의 개호급여 및 훈련 등 급여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

제30조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제 2호에 규정하는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지급량의 범위 내의 것에 한함)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함)에 대하여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一.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제 20조 제 1항의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 二.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이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다음과 같은 사업소 또는 시설에 의해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 가 - 제43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또는 동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소(이하 [기준 해당 사업소]라 한다)
 - 나 - 제44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또는 동조 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시설(이하 [기준해당시설]이라 한다)
- 三. 기타 정령에서 정할 때.

2. 광역지자체가 전항 제 2호 가 및 나 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 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

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 一.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 二.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 三.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의 확보,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비밀 보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 四.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이용 정원

3.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의 가액은, 월당, 그 달에 받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가액의 합산액에서, 각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의 가계부담능력과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한 가액(해당정령에서 정하는 비용이 해당 합계한 액수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는, 해당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여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 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전조 제3항 제 1호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
- 二.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당 기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에 대해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기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특정 비용을 제함) 비용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

4. 전 2항에 정한 것 외에 특례개호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개호급여 등 가액의 특례)

제31조 기초지자체가 재해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특별사정으로 인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움을 인정한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받는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제

2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가액]은, [가액]의 범위 내에서 기초지자체가 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전항에 규정된 지급결정 장애인 등이 받는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등급여의 지급이 전조 제 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동항의 [--을 공제하고 남은 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이 정한다]는, [-의 범위 내에서 기초지자체가 정한 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 4 관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제34조 기초지자체는 시설입소지원, 공동생활원조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특정입소 등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 중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 1항에서 [특정장애인]라 한다)가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이하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또는 공동생활 원조가 이뤄지는 곳에 입주하고, 해당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특정 입소 등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특정장애인에 대해 해당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또는 공동생활 원조를 받는 주거에서의 식사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는 거주에 소요된 비용(동항에서 [특정입소 등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장애인특별급여를 지급한다.

2. 제29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3. 전 2항에 정하는 바 외에,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및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또는 지정장애 복지서비스사업자의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제35조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정장애자에 대해 해당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 혹은 기준 해당 시설 또는 공동생활원조를 받는 주거에서의 특정 입소 등 비용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一. 특정장애자가 제 20조 제 1항의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 二. 특정장애자가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
2. 전항에 정하는 바 외에,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5 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 및 지정상담지원 사업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제36조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서 [서비스사업소]라 한다)별로 행한다.

2. 취업계속지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전항의 신청은 해당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을 정해 실시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 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요양개호에 관련된 지정신청에 있어서는 제7호를 제외한다) 중 어느 것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

- 一. 신청자가 광역지자체조례에서 정한 자가 아닐 경우
- 二. 해당 신청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및 기능 및 인원이 제 43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三. 신청자가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조례에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장애인복

- 지 서비스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 四. 신청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되기 전의 자일 때.
- 五. 신청자가 이 법률 기타 국민의 보건의료 혹은 복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령으로 정한 규정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되기 전의 자일 때.
- 五의 2. 신청자가 노동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관해 정령으로 정한 것의 해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자의 경우
- 六. 신청자가 제50조 제 1항(동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51조의 29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해당 지정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는 해당 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법(헤이세이 5년(1993) 법률 제 88호) 제15조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던 날 이전 60일 이내에 해당법인의 임원 또는 그 서비스사업소를 관리하는 자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이었던 자로 해당 취소일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며, 해당 지정취소를 당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통지가 있던 날 이전 60일 이내에 해당자의 관리자였던 자로 해당 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일 때. 다만, 해당 지정취소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취소의 해당지정 취소처분이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가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대한 대처 상황 기타 해당 사실에 관해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지정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다.
- 七.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신청자(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 대해 같다.)의 주식(株式)의 소유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신청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혹은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이하 이 호에 대해 [신청자의 모 회사 등]이라 한다), 신청자의 모 회사 등이 주식의 소유 기타 사

유로 인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혹은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또는 해당 신청자가 주식의 소유 기타 사유로 인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혹은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것 중, 해당 신청자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가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의 29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어 그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다만, 해당 지정취소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취소의 해당지정 취소 처분이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대한 대처 상황 기타 해당 사실에 관해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지정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다.

- 八. 신청자가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의 29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던 날부터 해당 처분일자 또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날 사이에 제46조 제2항 또는 제51조의 25 제2항 혹은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신청을 한 자(해당 사업의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제한)로, 해당 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 九. 청자가 제48조 제1항(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의 27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일로부터 청문 결정 예정일(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의 29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청문 실시 결정을 전망한 날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장이 해당 신청자에게 해당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특정일을 통지했을 경우의 해당 특정일을 말한다)까지의 사이에 제46조 제2항 또는 제51조의 25 제2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폐지 신고를 한 자(해당 사업의 폐지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해당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 十.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46조 2항 또는 제51조의 25 제2항 혹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신청이 있던 경우로, 신청자가 동호의 통지일 전 60일 이내에 해당신고에 관한 법인(해당사업의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법인을 제한다)의 임원 등 또는 해당 신고에 관한 법인이 아닌 자(해당 사업의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제한다)의 관리자였던 자로, 해당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 十一. 신청자가 지정신청 전 5년 이내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해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일 때.
- 十二. 신청자가 법인으로 그 임원 등 중 제4호에서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전호까지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 十三. 신청자가 법인이 아닌 자로, 그 관리자 중 제 4호에서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4. 광역지자체가 전항 제 1호의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한다.

5. 광역지자체의 장은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제 1항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신청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의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이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광역지자체 혹은 해당구역의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의 지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의 변경)

제37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것에 한한다)는 제29조 제1항의 지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관한 동항의 지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 규정의 변경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

제38조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자지원시설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시설장애인복지서비스의 종류 및 해당 장애자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정함으로써 행한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장애자 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의 총원이 제 89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의 지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36조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은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장애자지원시설 지정의 변경)

제39조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는 제29조 제1항의 지정에 관한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려 할 때 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입소정원을 증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자지원시설에 관한 동항의 지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전항의 지정변경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삭제

(지정의 갱신)

제41조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을 잃는다.

2. 전항의 갱신 신청이 있었을 경우, 동항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

유효기간]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종전의 지정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3. 전항의 경우, 지정이 갱신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4.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 1항의 지정 갱신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의 책무)

제42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이하 [지정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장애자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자 등의 의사결정 지원에 배려함과 동시에 기초지자체,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재활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도모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해당 장애자 등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에 따라 항상 장애자 등의 입장에 서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지정사업자 등은 그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거나 기타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지정사업자 등은 장애자 등의 인격을 존중하는 한편,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자 등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기준)

제43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별로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광역지자체가 전2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

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 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 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 二.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 三.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운영에관한사항으로,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이용의 확보, 장애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 등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 四.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이용 정원

4.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제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 신고를 할 경우, 해당신고일전 1개월 이내에 해당지정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던 자로서, 해당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준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자와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조정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기준)

제44조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는 광역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광역지자체가 전2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 一.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 二.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 三.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이용,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 등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4.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설치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퇴를 할 때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예고 기간의 개시일의 전날에 해당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자로서, 해당 지정의 사퇴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시설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5조 삭제

(변경신고 등)

제46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중단했던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재개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폐지, 또는 휴업하려고 할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폐지 또는 휴업일의 1개월 전까지,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지정장애인 지원시설의 설치자는 설치자의 주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정사퇴)

제47조 지정장애인 지원시설은 3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그 지정을 사퇴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 조정 또는 원조)

제47조의 2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제43조 제4항 또는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와 상호간의 연락조정 또는 해당지정장애 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 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에게 조언과 원조를 할 수 있다.

2. 후생 노동대신은 동일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지정 장애자 지원 시설의 설치자에 대해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의 장이 전항 규정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에 있어서, 제43조 제4항 또는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의 상호간의 연락조정 또는 해당지정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혹은 지정 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구역을 넘어서 광역적인 견지에서 조언 및 원조를 할 수 있다.

(보고 등)

제48조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혹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였던 자 혹은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원이었던 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였던 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혹은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 혹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였던 자 등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케 하거나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해당지정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 사무소 기타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에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 2항의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 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3. 제 2항의 규정은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권고, 명령 등)

제 49 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一. 해당 지정과 관련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해 제43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 二.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 三. 제4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경우, 해당 편의제공을 적절하게 실시할 것.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가, 다음의 각 호(희망원의 설치자는, 제 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대해서도 같다)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一.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해 제44조 제 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 二. 제44조 제 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시설 장애 복지 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 三. 제44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경우, 해당 편의제공을 적절하게 실시할 것.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 등이 전 2항의 기간 내에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4.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 1항부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 대해 기간을 정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행한 지정사업자 등에 대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희망원의 설치자는, 제3호를 제외한다)의 경우의 어느 쪽에 해당하든지, 그 취지를 해당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 혹은 상담지원사업소 또는 시설소재지의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50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관한 제29조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36조 제3항 제4호부터 제5호의 2까지, 제1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二.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42조 제3항 규정에 위반했을 때.
- 三.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있어 제43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四.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五. 개호급여 혹은 훈련 등 급여 또는 요양개호의료비의 청구에 관하여 부정이 있었을 때.
- 六.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명령이 있었음에도 따르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했을 때.
- 七.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이 제4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출두가 요구되었음에도 응하지 않고, 동항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이 그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다했을 때를 제외한다.

- 八.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29조 제1항의 지정을 받았을 때.
- 九. 전 각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이 법률 기타 국민의 보건의료 혹은 복지에 관한 법률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또는 이들 법률에 기초한 명령 혹은 처분에 위반했을 때.
- 十. 전 각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 十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등 중 지정 취소 또는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 효력을 정지하려 할 때, 이전 5년 이내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 十二.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관리자가 지정 취소 또는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려 할 때, 이전 5년 이내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2. 기초지자체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한 지정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전항 각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 소재지의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전 2항의 규정은 지정장애자지원시설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공시)

제51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 一.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지정장애자지원 시설로 지정을 했을 때.
- 二.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의 신고가 있을 때.
- 三.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사퇴가 있을 때.
- 四. 전조 제 1항(동조 제 3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

제6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2 지정사업자등은 제42조 제 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가 이행되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2. 지정사업자 등은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一. 다음호에 든 지정사업자 등 이외의 지정사업자 등 광역지자체의 장

二.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사업소 혹은 시설이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의 구역에 소재하는 지정사업자 등 (희망원 설치자를 제외한다. 제4항, 다음 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51조의 4제 5항에 대해서도 같다) 또는 희망원 설치자 후생노동대신

3. 전항 규정에 의해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은, 그 신고사항 변경 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대로, 속히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이하 이 관에 서는 [후생노동대신 등]이라 한다)에 신고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지정사업자등은, 동항 각 호의 구분변경에 따라, 동항의 규정대로 해당신고를 한 후생노동대신 등 이외의 후생노동대신 등에 신고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대신 등에도 신고해야 한다.

5.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 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밀접한 관계를 도모하도록 한다.

(보고 등)

제51조의 3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당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동조 제4항의 규정대로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동항의 규정대로 신고한 지정사업자등을 제한다)가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정사업자등에게,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해당 지정사업자 등 혹은 해당 지정사업자등의 종업원에게 출두를 요구 또는 해당직

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혹은 해당지정사업자 등의 해당지정에 관한 사업소 또는 시설, 사무소 기타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제공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이 전항의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 관련된 지정을 한 광역지자체의 장(다음 조 제 5항에 대해 [관계 광역지자체의 장]라 한다)와 밀접한 연계 하에 실행해야 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이미 실시되었거나 또는 하려고 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사업자등의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에게 제1항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은 전항 규정에 의한 광역지자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 1항의 권한을 사용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그 결과를 해당권한의 사용을 요청한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대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4 제51조의 2 제 2항의 규정대로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당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동조 제4항의 규정대로 신고를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동항의 규정대로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을 제한다)이, 동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게 기간을 정해 해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 항 규정대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등이, 동항의 기한 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3. 후생노동대신 등은, 제 1항의 규정대로 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 대해, 기한을 정해서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항 규정대로 명령을 했을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5. 후생노동대신은, 지정사업자 등이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대로, 해당 위반내용을 관련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절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제1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지역상담지원 급여액등의 상담지원 급여결정)

제51조의 5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또는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액 등]이라 한다)를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자는, 기초지자체의 지역상담지원 급여액등을 지급하다는 취지결정(이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이라 한다)를 받아야만 한다.

2. 제19조(제 1항을 제한다)의 규정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서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신청)

제51조의 6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받고자 하는 장애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2. 제 20조(제 1항을 제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급여여부 결정 등)

제51조의 7 기초지자체는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장애자의 심신 상태, 해당 장애자의 지역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역상담지원 급여등의 지급의 여부결정(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 12에 대해 [급여여부결정]이라 한다)를 한다.

2.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대로,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등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등 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동항의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급여여부결정과 관련된 장애인,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대로 전조 제 1항의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에게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정특정 상담지원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5. 전항 규정에 의해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장애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 동항의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 대신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의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6. 기초지자체는 전 2항의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급여여부결정을 한다.

7.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경우에는 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로 1개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역상담지원 급여등을 지급하는 지역상담지원의 양(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량]이라 한다)를 정해야 한다.

8.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상담지원급여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이하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이라 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제51조의 8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이라 한다)내에 한해 그 효력이 있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

제51조의 9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는, 실제로 받고 있는 지역상

담지원 급여결정에 관련된 지역상담지원의 종류, 지역상담지원급여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는 전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제51조의 7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사항을 감안,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 결정과 관련된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제19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을 제한다) 및 제51조의 7(제1항을 제한다)의 규정은, 전 항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정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4. 기초지자체는, 제2항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정을 했을 경우, 지역상담지원 수급자 중에 해당결정과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취소)

제51조의 10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한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관련된 장애자가,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 二.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의 구역 내에 거주지를 갖게 되었을 때(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과 관련된 장애자가 특정시설에 입소함으로써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의 구역 내에 거주지를 갖게 되었을 때는 제외됨.).
- 三.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과 관련된 장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의 6 제2항 및 전조 제 3항에 대해서 준용하는 제 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 四. 그 외 정령으로 정할 때.

2. 전항 규정대로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취소한 기초지자체는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취소와 관련된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에 의한 원조 등)

제51조의 11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제51조의 5에서 제51조의 7까지, 제51조의 9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대해서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등에 의한 기술적사항에 대해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해야 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51조의 12 제51조의 5부터 전조까지 정한 것 외에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급여여부결정,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정 및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취소에 관한 필요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제51조의 13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은, 지역상담지원에 대해서 다음 조 및 제51조의 15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4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일반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지정에 관련된 지역상담지원(이하 [지정지역상담지원]이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지역상담지원 급여량의 범위 내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도 동일하다.)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지역상담지원급여를 지급한다.

2.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을 제시하고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는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3.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은 지정지역상담지원 종류별로 지정지역상담지원

으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금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넘을 때에는, 해당 실제로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4.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지정 지역상담지원을 받았을 때는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으로써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 한도에서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를 대신하여 해당지정 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5. 전항 규정에 의해 지불되었을 때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기초지자체는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장이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을 청구했을 때에는, 제 3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및 제51조의 23 제 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지역상담지원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대로 심사 후, 지불한다.

7. 기초지자체는, 전항 규정대로 지불에 관한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8. 전 각 항에 정하는 것 외에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및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관계에 필요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5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제51조의 6 제1항을 신청한 날로부터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효력이 생긴 전 날까지의 사이에 긴급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았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로 한 비용을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은 전조 제3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액이 실제로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비용을 초과 시, 해당 현재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초지

자체가 정한다.

3. 전 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관계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2 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제51조의 16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은, 계획상담지원에 대해 다음 조 및 제51조의 18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7 기초지자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이하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을 지급한다.

- 一. 제22조 제4항(제24조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제 0조 제1항 혹은 제24조 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혹은 장애아의 보호자 또는 제51조의 7 제4항(제51조의 9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대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제51조의 6 제1항 혹은 제51조의 9 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기초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이하 [지정 특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지정과 관련된 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경우이며, 해당 신청에 관한 지급결정 등을 받았을 때.
- 二. 지급결정장애인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해당지정에 관한 계속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계속 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

2.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은, 지정서비스이용지원 또는 지정계속서비스이용

지원(이하 [지정계획상담지원]이라 한다)의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금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3.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자 등이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지정계획상담지원을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는 해당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자 등이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으로써 해당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자 등에게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계획상담지원대상 장애자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4. 전항 규정에 따라 지불된 경우, 계획상담지원대상 장애자 등에게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5. 기초지자체는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을 청구받았을 때 제 2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및 제51조의 24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계획상담지원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 비추어 심사 후 지불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에 관한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7. 전 각 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8 기초지자체는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자 등이 지정계획상담지원 이외의 계획상담지원 (제51조 24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동조 제 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사업하는 사업소만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이라 한다)를 받았을 경우, 필요 시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은 본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대해, 전조 제2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소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3. 전 2항에 정하는 것 외에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에 관계된 필요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3 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제51조의 19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반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상담지원의 종류 및 일반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 대해 [일반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다.

2. 제36조 제3항(제4호, 제10호 및 제13호를 제한다)의 규정은,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6조 제3항 제1호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자]라는 것은 [법인]으로 재해석하거나,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제51조의 20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상담지원을 하는 자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준한 자의 신청에 따라, 특정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 대해 [특정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다.

2. 제36조 제3항(제4호, 제10호 및 제13호를 제한다)의 규정은,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6조 제3항 제1호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자]라는 것은 [법인]으로 재해석하거나,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갱신)

제51조의 21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들의 효력을 잃게 된다.

2.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전 2조의 규정은, 전항에 지정된 갱신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책무)

제51조의 2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이하 [지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자립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의 의사결정지원에 배려함과 동시에 기초지자체, 공공직업 안정소 그 외의 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를 도모하면서, 상담지원을 해당 장애인 등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에 따라 항상 장애자의 입장에 서서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제공하는 상담지원의 재질을 평가하고,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담지원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3.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장애인 등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시에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인 등을 위해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3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 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지역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제51조의 2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에는, 해당신고일 전 1개월 내에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역상담지원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일반상

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4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 사업소마다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정계획상담지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기준대로 지정계획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다음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 해당 신고일 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지정계획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계획상담지원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의 신고 등)

제51조의 25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이 있었을 때, 또는 휴업한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을 재개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10일 이내로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폐지 또는 휴업일의 1개월 전 까지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3.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이 있었을 때, 또는 휴업한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을 재개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기초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4.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려고 할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폐지 또는 휴업일의 1개월 전 까지 그 취지를 기초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제51조의 26 제 47 조의 2의 규정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실시하는 제51조의 2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에 대해 준용한다.

2. 기초지자체의 장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 의한 제51조의 2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기타 관계자 상호간의 연락 조정 또는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한 조언 혹은 원조를 할 수 있다.

(보고 등)

제51조의 27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필요시에는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혹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 혹은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자(이하 이 항에 대해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라 한다)에게 보고 혹은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혹은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 혹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 등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고, 또는 해당 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또는 해당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해당 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사업소, 사무소 기타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에 관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의 장은 필요 시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혹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 혹은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이하 이 항에 대해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보고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지정특정상담지원 사업자 혹은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 혹은 지정특정상담지원 사업자였던 자 등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며 또는 해당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해당지정에 관한 특정상담지원 사업소, 사무소 기타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에 관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3. 제9조 제 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 시,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28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에 든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고,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一.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이 제51조의 23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 二. 제51조의 23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정지역상담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 三. 제51조의 2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2. 기초지자체의 장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에 든 경우에 해당할 때,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고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一. 해당 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이, 제51조의 24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 二. 제51조의 24 제 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정계획상담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 三. 제51조의 2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했을 경우 기초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했을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전 2항의 기한 내에 응하지 않았을 시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4.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를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을 때 기초지자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 받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원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권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해 명령했을 때,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지급에 관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한 지정일반상담지원 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든 경우의 어느 쪽에 해당할 때, 그 취지를 해당 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 사업소 소재지의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 29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 사업자에 관한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하고, 또는 기간을 정해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19 제 2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36조 제3항 제5호, 제0호의 2 또는 제 12호의 어느 쪽에 해당할 경우.
- 二.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2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三.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해당 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해 제51조의 23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 四.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3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운영기준에 준한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五.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에 관해서 부정이 있었을 때.
- 六.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령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
- 七.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과에 관한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이, 제51조의 27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출두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동항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며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고, 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

사업소 종업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다했을 때에는 제외된다.

- 八.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을 받았을 때.
- 九. 전 각 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이 법률 기타 국민복지에 관한 법률로 정령으로 정한 것 또는 이러한 법률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했을 때.
- 十. 전 각 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지역상담지원에 관해 부정이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 十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 또는 그 일반상담지원사업소를 관리하는 자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 지정취소 또는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정지를 하려고 할 때 이전 5년 이내에 지역상담지원에 관해서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2. 기초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한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을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0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6조 제3항 제5호의 2 또는 제 12호의 어느 쪽 사항에 해당될 때.
- 二.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三.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해당 지정과 관련되는 특정 상담지원 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해서 제51조의 24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을 만족 시킬 수 없을 때.
- 四.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4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정계획상담지원사업을 운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五.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에 대해서 부정이 있었을 때.
- 六.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령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

- 七.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과 관련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이 제51조의 27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두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도 답변치 않거나, 혹은 허위답변을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고 방해하거나 혹은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 지정에 관한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다했을 때에는 제외된다.
- 八.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을 받았을 때.
- 九. 전 각 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이 법 그 외 국민의 복지법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한 명령 혹은 처분을 위반했을 때.
- 十. 전 각 호의 경우 외에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계획상담지원에 관해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 十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 또는 그 특정 상담지원 사업소를 관리하는 자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자 중 지정취소 또는 지정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 이전 5년 이내에 계획상담지원에 관한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3.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지급에 관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한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 소재지의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시)

제51조의 30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 一.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를 지정했을 때.
- 二. 제51조의 2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가 있었을 때.
- 三.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

2. 기초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 一.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를 지정했을 때.
 - 二. 제51조의 2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가 있었을 때.
 - 三.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

제 4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1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제51조의 22 제3항에 규정하는 의무이행이 확보되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2.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업무관리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一. 다음호 및 제 3호에 든 지정상담지원사업자 이외의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 二. 특정상담지원사업 만을 운영하는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 해당 지정 관련 사업소가 一의 기초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자는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 三. 해당 지정 관련 사업소가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대신에게

3. 전항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즉시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대신,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이하 이 관에 대해 [후생노동대신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동항 각 호에 든 구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를 한 후생노동대신 등 이외의 후생노동대신 등에 신고할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대신 등에게도 신고해야 한다.

5.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 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밀접한 관계를 도모한다.

(보고 등)

제51조의 32 전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당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를 제외하다.)에게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보고 혹은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 혹은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종업원에게도 출두를 요구 또는 해당 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또는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해당 지정에 관한 사업소, 사무소 기타 지정지역상담지원 혹은 지정계획상담지원 제공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이 전항의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해서 지정을 한 광역지자체의 장(다음 조 제5항에 대해 [관계 광역지자체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해서 지정을 한 기초지자체의 장(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 5항에 대해 [관계 기초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와 광역지자체의 장이 전항의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 기초지자체의 장과 밀접한 연계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 후생노동대신에게, 기초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자 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제1항의 권한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의 요구에 따라 제1항의 권한을 사용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권한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대해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33 제51조의 31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당 신고를 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동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지 않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해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항 규정에 의해 권고한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가 동항의 기한 내에 이에 불응했을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3. 후생노동대신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 받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권고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때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5.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 3항의 규정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위반내용을 관계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관계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 절 자립지원의료비, 의료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 개호의료비의 지급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

제52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하는 취지의 인정(이하 [지급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제19조 제2항 규정은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급인정에 대해 동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지급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신청)

제53조 지급인정을 받으려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은 광역지자체가 지급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거주지가 없을 경우 또는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를 경유하여 행할 수 있다.

(지급인정 등)

제54조 기초지자체는 전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이 그 심신장애의 상태로 보아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해당 장애인 등 또는 그 속하는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소득상황, 치료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지급인정을 행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 등이 자립지원의료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의료를 전상병자 특별원호법(쇼와 38년(1963) 법률 제 168호) 또는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15년(2003) 법률 제 110호)의 규정에 의해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초지자체 등이 지급인정을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한다.

3. 기초지자체는 지급인정을 할 때, 지급인정을 받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이하 [지급인정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조에 규정하는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전항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명칭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립지원의료수급증(이하 [의료수급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제55조 지급인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지급인정의 유효

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한해 유효하다.

(지급인정의 변경)

제56조 지급인정장애자 등은 이미 받고 있는 지급인정에 관한 제 54 조 제2항 규정으로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 등에 대해 지급인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 등은 전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대해 동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인정의 변경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 등은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대해 의료수급증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3. 제19조 제2항 규정은 기초지자체 등이 행하는 전항의 지급인정변경의 인정에, 동조 제3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은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전항의 지급인정변경의 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4. 기초지자체 등은 제 2항의 지급인정변경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수급증에 해당 인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뒤 반환해야 한다.

(지급인정의 취소)

제57조 지급인정을 한 기초지자체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지급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一.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그 심신장애상태로 보아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 二. 지급인정장애자 등이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기초지자체 등 이외의 기초지자체 등의 구역 내에 거주지를 가지게 되었을 때(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가 특정시설에 입소함으로써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 구역 내에 거주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 三.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 四. 기타 정령으로 정할 때.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인정을 취소한 기초지자체 등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소에 관한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대해 의료수급증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제58조 기초지자체 등은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제 54 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자립지원의료(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라 한다)를 받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인정장애자에 대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한다.

2. 지정자립지원의료료를 받으려는 지급인정장애자 등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의료수급증을 제시하고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자립지원의료비의 가액은 월당, 제1호에 든 가액(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식사요양(건강보험법 제 63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요양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 2호에 드는 가액의 합산액,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생활요양(동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요양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 3호에 드는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 및 생활요양을 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의 예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의 가계부담능력, 장애의 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해당 산정한 가액에서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
- 二.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에 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 85 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식사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자 등의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 三. 해당지정자립지원의료(생활요양에 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 85 조의 2 제 2항에 규정하는 생활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자 등의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4. 전항에 규정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를 수 없을 때 및 이를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을 때, 기초 지자체 등은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자립지원의료비로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지급해야 할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게 지불 할 수 있다.

6.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이 있었을 때에는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

제59조 제54조 제2항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 혹은 진료소(이들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동문.) 또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에 의해 동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행한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一. 해당 신청에 관한 병원 혹은 진료소 또는 약국이 건강보험법 제 63 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의료기관 혹은 보험약국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혹은 시설이 아닐 때.
- 二. 해당 신청에 관한 병원 혹은 진료소 혹은 약국 또는 신청자가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에 관하여 진료 또는 조제의 내용이 적절치 않을 염려가 있어 여러 번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또는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았을 때.
- 三. 신청자가 제6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일 때.

四. 전 3항 이외에 해당 신청에 관한 병원 혹은 진료소 또는 약국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으로 현저히 부당할 때.

3. 제63조 제3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7호를 제한다)의 규정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갱신)

제60조 제54조 제2항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기관의 경과와 함께 효력을 잃는다.

2. 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의 갱신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책무)

제61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진료방침)

제62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진료방침은 건강보험의 진료방침의 예를 따른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진료방침에 따를 수 없을 때 및 적당하지 않을 때의 진료방침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역지자체의 장의 지도)

제63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자립지원의료의 실시에 관하여 광역지자체의 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변경신고)

제64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해당 지정에 관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정의 사퇴)

제65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1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쳐 그 지정을 사퇴할 수 있다.

(보고 등)

제66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자립지원의료의 실시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혹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 혹은 관리자, 의사, 약사 기타 종업원이었던 자(이하 이 항에서 [개설자였던 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 보고 혹은 진료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 혹은 관리자, 의사, 약사 기타 종업원(개설자였던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케 하거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대해 설비 혹은 진료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3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준용한다.

3.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광역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대한 기초지자체 등의 자립지원의료비 지불의 일시 정지를 지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보고, 명령 등)

제67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61 조 또는 제62 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실시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제61조 또는 제 62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동항기간 내에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광역지자체의 장이 전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5. 기초지자체는 지정자립지원의료를 행한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 취지를 해당 지정에 관한 의료기관 소재지의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취소 등)

제68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관한 제54조 제2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59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二.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59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는 제36조 제3항 제4호, 제5호의 2까지,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三.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61 조 또는 제 62 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 四. 자립지원의료비의 청구에 관하여 부정이 있었을 때.
- 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66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보고 혹은 진료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했을 때.
- 六.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설립자 또는 종업원이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고, 동항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종업원이 그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다했을 때를 제한다.

2. 제50조 제1항 8호에서 제12호까지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공시)

제69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 一. 제54조 제2항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을 지정했을 때.
- 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동조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관한 것을 제한다)가 있었을 때.
- 三.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지정사퇴가 있었을 때.
- 四. 전조 규정에 의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제70조 기초지자체는 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가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등으로부터 해당 결정에 관한 요양개호의료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에게 해당 요양개호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요양개호의료비를 지급한다.

2. 제58조 제 3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은 요양개호의료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제71조 기초지자체는 특례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가 기준해당사업소 또는 기준해당시설로부터 해당 요양개호의료(이하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에 대해 해당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를 지급한다.

2. 제58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준용)

제72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은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등 또는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기준해당사업소 또는 기준해당시설에 준용한다.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심사 및 지불)

제73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기준해당 사업소 혹은 기준해당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비부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진료내용 및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이하 이 조 및 제75조에서 [자립지원의료비]라 한다)의 청구를 수시로 심사하고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제58조 제 5항(제 7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공비부담의료기관은 광역지자체의 장이 내리는 전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 기본법(쇼와 23년(1948) 법률 제 129호)에 정하는 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국민건강보험진료보수 심사위원회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심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기초지자체는 공비부담의료기관에 대한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지불에 관한 사무를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 연합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전 각항에 정하는 바 외에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6. 제1항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이의신청법(쇼와 37년(1962)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광역지자체의 원조 등)

제74조 기초지자체가 지급인정 또는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인정을 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해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협력 기타 기

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75조 이 절에 정하는 것 외에 지급인정, 의료수급증, 지급인정의 변경 인정 및 지급인정의 취소 기타 자립지원의료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5 절 보장구비의 지급

제76조 기초지자체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상태를 보아, 해당장애인 등이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가 필요한 자일 경우,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보장구비 지급대상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장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 또는 그 속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득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보장구비의 가액은 월당으로 동일한 달에 구입 또는 수리를 한 보장비에 대해서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기준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 해당 보장구비 지급대상 장애인 등의 가계부담능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기준액의 합계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3. 기초지자체는 보장구비의 지급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제19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한 기초지자체의 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

한다.

5. 후생노동대신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6. 전 조항에 정하는 것 외에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6 절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76조의 2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 장애자 등이 받은 장애 복지 서비스 및 개호보험법 제24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의 대상 서비스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비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각각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 실제로 소요된 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해당 비용에 지급된 개호급여 등 및 동법 제 20조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구비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일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에게,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를 지급한다.

2. 전 항에서 정하는 것 그 밖에,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요건, 지급액 기타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사항은, 장애 복지 서비스 및 보장비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부담이 가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지역생활지원사업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77조 기초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一. 장애자 등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연수 및 계발을 위한 사업
- 二. 장애자 등, 장애자 등의 가족, 지역주민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시

- 하는, 장애인 등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三.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립적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 등을 개호하는 자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조정 기타 장애인 등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다)
 -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으로써,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지 못하면 성년 후견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
 - 五. 장애인에 관련된 민법(메이지 29년(1896년) 법률 제89호)에 정한 후견, 보좌 및 보조업무를 적정 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활용을 꾀하기 위한 연수 사업.
 - 六. 청각, 언어기능, 음성기능 기타 장애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 기타 일상생활의 영위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해 의사소통지원 등(수화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장애인 등과 기타의 자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의 파견, 일상생활 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의 급여 또는 대여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 七.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는 사업
 - 八. 이동지원사업
 - 九. 장애인 등을 지역활동지원센터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다니게 하며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기회의 제공, 사회와의 교류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2.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실시체제의 정비상황 기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관련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기초지자체를 대신하여 전항 각호에 든 사업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 외에, 현재 주거를 구하고 있는

장애자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복지 홈 기타 시설에서 해당시설의 방실 기타 설비를 이용케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장애자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기간(基幹) 상담지원 센터)

제77조의 2 기간 상담지원 센터는, 지역상담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전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든 사업 및 신체장애자복지법 제9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지적장애자복지법 제9조 제 5항제 2호 및 제3호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초지자체는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일반 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 1항의 사업 및 업무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4. 전항의 위탁을 받은 자는 제 1항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5.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자는 제1항의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정장애인복지사업자 등 의료기간, 민생위원법 (쇼와 23년(1948년) 법률 제 198호)에 정한 민생위원,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2조의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신체장애자상담원, 지적장애자 복지법 제15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적장애자상담원,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고, 또는 파견하는 사업의 관계자 기타 관계자와의 연계에 노력해야만 한다.

6. 제3항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아 제 1항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혹은 그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에 관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78조 광역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 사업으로 제77조 제1항 제3호, 제 6호 및 7호에 든 사업 중 특히 전문성이

높은 상담지원에 관한 사업 및 특히 전문성이 높은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여 또는 파견하는 사업,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의 파견에 관련된 기초지자체와의 상호간의 연락조정 기타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

2. 광역지자체는 전항에 정하는 바 외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상담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 혹은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들에 대해 필요한 지도를 하는 자를 육성하는 사업 기타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 및 시설

(사업의 개시 등)

제79조 광역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 二. 일반 상담지원 사업 및 특정 상담지원 사업
- 三. 이동지원사업
- 四. 지역활동지원센터를 경영하는 사업
- 五. 복지 홈을 경영하는 사업

2.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전항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전 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려 할 때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기준)

제80조 광역지자체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시설이 필요한 것에 한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 82 조 제 2항에 있어 같다.),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가 전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 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와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 二.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및 복지 홈에 관한 방의 평면적
- 三.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과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 등의 안전 확보 및 비밀 보장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관한 이용정원

3. 제 1항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와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치자는 동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보고의 징수 등)

제81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자 등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 사업, 특정상담지원사업 혹은 이동지원사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지역활동지원센터 혹은 복지 홈의 설치자에 대해,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케 하거나, 혹은 그 사업소 혹은 그 시설을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준용한다.

(사업의 정지 등)

제82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사업, 특
정상담지원사업 또는 이동지원사업 시행자가 이 장의 규정 혹은 해당규정
에 기초한 명령 혹은 이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했을 때, 그 사업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피하거나 그 사업관계자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했을 때, 또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 2, 지적장애인복지법 제21조 혹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7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에 대해 그 사업의 제
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시행자 또는 지역활동지
원센터 혹은 복지 홈의 설치자가 이 장의 규정 혹은 해당 규정에 기초한
명령 혹은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했을 때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혹은 복지 홈이 제80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
었을 때 또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 2, 지적장애인복지법 제21조 혹
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7 규정에 위반했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설치자에 대해 그 시설의 설비 혹은 운영의 개선 또는 그 사업의 정지
혹은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시설의 설치 등)

제83조 국가는 장애자지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는 장애자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애
자 지원에 신고한 뒤 장애자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는 사회복지법(쇼와 26년
(1951) 법률 제 45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자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시설의 기준)

제84조 광역지자체는 장애자지원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가 전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
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 4호 사항에 대해

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 一. 장애인지원시설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 二. 장애인지원시설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 三. 장애인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 四. 장애인지원시설에 관한 이용 정원

3.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의 기준을 사회복지법 제65조 제1항의 최저기준으로 보고, 동법 제62조 제 4항, 제65조 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고의 징수 등)

제85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운영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해당시설의 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혹은 그 시설을 방문하여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3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준용한다.

(사업의 정지 등)

제86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설비 또는 운영이 제84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에 위반할 경우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는 문서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 5 장 장애인복지계획

(기본방침)

제87조 후생노동대신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공체제를 정비하고,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2. 기본방침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
- 二.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 三.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및 제8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 四. 기타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후생노동대신은 기본 지침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기본기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장애인 등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후생노동대신은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장애인 등이 처한 환경의 변화,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속히 기본지침을 변경하도록 한다.

5. 후생노동대신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8조 기초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2.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

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 二. 각 년도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 종류별로 필요한 양을 예상
- 三.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 항, 각 호 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해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一. 전 항 제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종류별로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대책
- 二. 전 항 제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 및 동항 제3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 내의 장애자 등의 숫자, 그 장애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작성해야 한다.

5. 기초지자체는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에 있는 장애자 등의 심신상황, 처해진 환경, 기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들 사항을 감안하여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6.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자기본법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장애자계획, 사회복지법 제107조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지역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8. 기초지자체는 제8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회(이하 이 항 및 제89조 제6항에서 [자립지원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했을 때,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립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9. 장애자 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지방장애자시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한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장애자 시책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0.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1.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체 없이 이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8조의 2 기초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전조 제2항 각호 사항(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동조 제3항 각호 사항을 정할 때 해당 각호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 시 해당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9조 광역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에 공통되는 광역적 관점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2.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 二.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구역별로 해당 구역의 각 년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량의 예상
- 三. 각 년도의 지정장애자지원시설 필요 입소정원 총수
- 四.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 항, 각 호 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一. 전항 제 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대책
- 二. 전항 제 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대책
- 三.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구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四. 전항 제2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동항 제 4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인 기본법 제11조 제 2항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사회복지법 제108조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지역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의료법(쇼와 23년(1948) 법률 제 205호) 제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계획에 상응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자의 퇴원 촉진을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6. 광역지자체는 협의회를 설치했을 때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먼저 협의회 의견 청취해야 한다.

7.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장애인 기본법 제34조 제 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추진협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8.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지체 없이 이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9조의 2 광역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전조 제2항 각호 사항(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동조 제3항 각호 사항을 정할 때 해당 각호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해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 시 해당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협의회의 설치)

제89 조의 3 지방공공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장애인 등의 지원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관계단체 및 장애인 등 및 그 가족과 함께 복지, 의료, 교육 또는 고용에 관한 직무 종사자 기타 관계자(다음 항에서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항의 협의회는 관계기관 등이 상호연락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장애

자 등의 지원 체제에 대한 과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응한 체제정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의 장의 조언 등)

제90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에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은 광역지자체에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방법 기타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 상 중요한 기술적 사항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국가의 지원)

제91조 국가는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또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 정해진 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 기타 지원에 힘써야 한다.

제 6 장 비용

(기초지자체의 지급)

제92조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

- 一. 개호급여비 등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二.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특례지역 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계획 상담지원 급여비(제 94 조 제 1항에 대해 [상담지원 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三.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제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한다),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四. 보장구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五.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六.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광역지자체의 지급)

제93조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

- 一.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二. 광역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광역지자체의 부담 및 보조)

제94조 광역지자체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부담한다.

- 一. 제92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드는 비용 중, 국가 및 광역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및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의 지급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별 인원수, 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지급에 관한 장애인 등의 인원수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할 가액(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액]이라 한다)의 25/100.
- 二. 제92조 제3호 및 제 4호에 든 비용의 25/100

2. 광역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제6호에 드는 비용의 25/10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의 부담 및 보조)

제95조 국가는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부담한다.

- 一.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액의 50/100
- 二.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제3호 및 제4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 三.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제 1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2.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一.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지방자치법 제 252 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심사판정업무를 광역지자체 심사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제51조의 5에서 제51조의 7까지, 제51조의 9 및 제51조의 10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관한 사무의 50/100 이내.
- 二.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중 제92조 제6호 및 제93조 제2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이내.

(준용규정)

제96조 사회복지법 제 58 조 제 2항에서 제 4항까지의 규정은 국유재산 특별조치법(쇼와 27년(1952) 법률 제 219호) 제2조 제2항 제 3호의 규정 또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 4호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준용한다.

제 7 장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의 장애인 자립지원 법 관계 업무

(연합회의 업무)

제96조의 2 연합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그밖에, 제29조 제 7항(제34조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의 14 제 7항 및 제51조의 17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고, 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인 특별 급여, 지역상담지원 급여 및 계획상담지원 급여의 지불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의결권의 특례)

제96조의 3 연합회가 전조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업무(다음 조에서 [장애인 종합지원법 관계 업무]라고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9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약대로 의결권에 관한 특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구분 경리)

제96조의 4 연합회는, 장애인 종합지원법 관계 업무에 관한 경리는, 기타 경리와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 8 장 심사청구

(심사청구)

제97조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전 항의 심사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이의신청심사회)

제98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 1항의 심사청구 사건을 취급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개호급여 등 이의신청심사회(이하 [이의신청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심사회의 의원 정수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인원으로 한다.

3. 위원은 수준 높은 인격과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 등에 관한 처분 심사에 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 중 광역지자체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

제99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회장)

제100조 이의신청심사회에는 위원간의 호선으로 회장 1인을 선출한다.

2. 회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전항 규정에 준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청구기간 및 방식)

제101조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문서 또는 구두로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인해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기초지자체에 대한 통지)

제102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청구를 수리했을 때 원 처분을 한 기초지자체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를 위한 처분)

제103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에 필요할 때에는 심사청구인 혹은 관계인에 대해, 보고 혹은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그 출두를 명해 심문하거나 의사 기타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다음 항에서 [의사 등]이라 한다)에게 진단 기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는 전항 규정에 의해 출두한 관계인 또는 진단 기타 조사를 한 의사 등에 대해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 또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정령 등에의 위임)

제104조 이 장 및 행정이의신청법에서 정하는 바 외에 심사청구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이의신청심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의신청심사회를 설치한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제105조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얻은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제 9 장 잡칙

(연합회에 대한 감독)

제105조의 2 연합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 및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들 규정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헤이세이 17년(2005년) 법률 제 123호) 제96조의 3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종합지원법 관계 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대도시 등의 특례)

제106조 이 법률 중 광역지자체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정령에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 한다) 및 동법 제252조의 22 제1항의 핵심도시(이하 [핵심도시]라 한다) 및 아동복지법 제59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아동상담소 설치도시(이하 [아동상담소 설치도시]라 한다)에 있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도시 혹은 핵심도시 또는 아동상담소 설치도시(이하 [지정도시 등]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이 경우, 이 법률 중 광역지자체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도시 등에 적용한다.

(권한의 위임)

제107조 이 법률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전 항 규정에 의해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실시규정)

제108조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집행에 필요한 세칙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10 장 벌칙

제109조 시·정·촌심사회, 광역지자체심사회 혹은 이의신청심사회의 위원 또는 이들 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을 행한 자의 업무 상 비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20조 제 4항(제24조 제 3항, 제51조의 6 제2항 및 제51조의 9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7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허위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 제48조 제1항(동조 제3항 및 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의 3 제1항, 제51조의 27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51조의 3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허위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또는 이들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답변을 하거나, 혹은 이들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형을 부과한다.

제113조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03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여 출두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진술 혹은 보고를 하거나 진단 기타 조사를 하지 않은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의신청심사회가 행하는 심사절차의 청구인 또는 제102조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은 기초지자체 기타 이해관계인은 예외로 한다.

제114조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허위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115조 기초지자체는 조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허위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에 대해 10만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2. 기초지자체는 조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 1항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허위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조례로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51조의 9 제2항 또는 제51조의 10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 또는 지역 상담지원 수급자증의 제출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헤이세이 18년(2006)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드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一. 부칙 제24조, 제44조,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에서 제108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 공포일
- 二. 제5조 제1항(재택개호, 행동원호, 아동 주간 서비스, 단기입소 및 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제한다),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에서 제15항까지, 제17항 및 제19항에서 제22항까지, 제2장 제 1절(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및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제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 8호에서 제10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제1호에서 제3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항(제3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 제41조(지정

- 장애인 지원시설 및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 제7조, 제48조 제3항 및 제4항, 제49조 제2항 및 제3항 및 동조 제4항에서 제7항까지(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50조 제3항 및 제 4항, 제51조(지정장애인지원시설 및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70조에서 제72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2항 및 제75조(요양개호의료 및 기준 해당요양개호의료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장 제4절, 제3장, 제4장(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5장, 제92조 제1호(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에 관한 한한다), 제 2호(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3호 및 제4호, 제93조 제2호, 제94조 제1항 제2호(제92조 제3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 제95조 제1항 제 2호(제92조 제 2호에 관한 부분을 제한한다) 및 제2항 제 2호, 제96조, 제 110 조(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및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2조(제48조 제1항 규정을 동조 제3항 및 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제114조 및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및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부칙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 제26조, 제30조에서 제33조까지, 제35조, 제39조에서 제43조까지, 제46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 52조, 제56조에서 제60조까지, 제62 조, 제65조, 제68조에서 제70조까지, 제72조에서 제77조까지, 제79조, 제81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 90조까지,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에서 제100조까지, 제105조, 제108조, 제110조, 제112 조, 제113조 및 제115조의 규정 헤이세이 18년(2006) 10월 1일
- 三. 부칙 제63조, 제66조, 제97조 및 제111조의 규정 헤이세이 24년 4월 1일(2012년 4월).

(자립지원급여의 특례)

제2조 아동복지법 제 63 조의 2 및 제 63 조의 3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한 아동은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51조의 5에서 제51조의 10까지, 제51조의 14, 제51조의 15, 제 70조, 제 71 조, 제76조의 2, 제92조, 제 94 조 및 제 95 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장애자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장애자로 간주된 장애아로써, 특정시설에 입소하는 전날에 있어서, 아동복지법 제24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아 입소급여의 지급을 받고, 또는 동법 제27조 제1항 제 3호 혹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동법 제3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27조 제1항 제 3호 또는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로 간주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하거나, 제5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에 정해진 시설에 입소하고 있던 장애아에 관한 제19조 제 4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 동항중 [해당 장애자 등이 만 18세가 되기 전 날에 해당 장애자 등의 보호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 대해 [보호자였던 자]라 한다)]는, [해당 장애아가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날의 해당 장애아의 보호자]로, 동항 단서 중에 [해당 장애자 등이 만 18세가 되기 전 날]은, [해당 장애아가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날]로, [보호자였던 자]는 [해당 장애아의 보호자]로 재해석한다.

(검토)

제3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이 법률 및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의 시행상황, 장애아동의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에 관한 실시주체의 존립방법 등을 감안하여 이 법률 규정에 대해 장애자 등의 범위를 포함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제2장 제2절 제5관, 제3절 및 제4절 규정의 시행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정부는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 장애자 등의 경제적 상황 등에 입각하여 취업지원을 포함한 장애자 등의 소득확보에 관한 시책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정시설입소장애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부칙 제1조 제2호에 든 규정의 시행일 전 일까지는 제19조 제3항 중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 제2항 혹은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6조 제1항]이라 되어 있는 것은 [훈련 등 급여 혹은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을 받거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32 제1항 규정에 의해 입주조치가 취해져 공동생활지원을 행하는 주거(이하 이 항에서 [공동생활주거]라 한다)에 입주한 장애인,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0 제1항 규정에 의해 동향의 시설훈련 등 지원비 지급을 받거나 동법 제18조 제3항]으로, [장애인지원시설, 희망원 또는 제5조 제1항 혹은 제5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동법 제30조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요양보호시설(이하 이 항에서 [신체장애자요양보호시설]이라 한다)]로, [장애인지원시설, 희망원, 제5조 제1항 혹은 제 5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공동생활주거, 신체장애자요양보호시설]로, [입소 전]은 [입주 또는 입소 전]으로, [입소했다]는 것은 [입주 또는 입소했다]로, 동조 제3항 중 [입소하여]는 [입주 또는 입소하여]로 한다.

(지급결정장애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21조의 11 제2항 규정에 의해 재택생활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아동의 보호자, 부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신체장애자복지법 및 제17조의 5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생활지원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 및 부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6 제2항 규정에 의해 주택생활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결정이 내려졌다고 간주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이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한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지원 구분의 인정 및 지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5조 중의 [둔다]는 [둘 수 있다]로, 제 20조 제2항 중 [조사케

해야 한다]는 [조사케 할 수 있다]로, 제21조 제1항 중 [행한다]는 [행할 수 있다]로, 제22조 제1항 중 [장애지원 구분]은 [장애지원 구분 또는 장애의 종류 및 정도]로 한다.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22조 제2항 중 [제9조 제6항]은 [제9조 제5항]으로, [제9조 제 5항]이라 되어 있는 것은 [제9조 제4항]으로 한다.

(개호급여 등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28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관해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 되는 급여로 한다.

- 一. 재택개호
- 二. 행동원호
- 三. 아동 주간 서비스
- 四. 단기입소
- 五. 외출개호(부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 부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재택개호,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3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자재택개호 등 사업 및 부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재택개호 중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를 말한다. 이하 같음)
- 六. 장애자 주간 서비스(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주간 서비스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3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주간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음)

2. 시행일로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 상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

은 외출개호 및 장애인 주간 서비스를 장애인복지 서비스로, 외출개호 또는 장애인 주간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을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으로 각각 간주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호급여 등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시행일부터 정령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29조 제3항 중 [의 90/10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터 해당 비용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행동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신체장애인복지법 제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인 재택개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4 제1항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적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인 재택개호(행동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3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인 재택개호사업(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를 행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일에 재택개호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2.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행동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적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인 재택개호(행동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행일에 행동원호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3.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아동 주간 서비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행일에 아동 주간 서비스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4.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아동단기입소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 4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단기입소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4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4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단기입소에 관한 동법 제15 조의 5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3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자 단기입소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일에 단기입소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현재 부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지역생활지원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3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자 지역생활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일에 공동생활지원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해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에 관한 동항의 지정은 해당자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6조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 시행일 현재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재택개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4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재택개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 45 조

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3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자 재택개호 등 사업(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를 시행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일에 외출개호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2. 시행일 현재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주간 서비스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4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3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주간 서비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행일에 장애인 주간 서비스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3. 전 2항의 규정으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동항의 지정은 제41조 제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 상의 시행일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호급여 및 훈련등급여의 지불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시행일로부터 헤이세이 19년(2007) 9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제29조 제8항 중 [국민건강보험 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32조 제6항 중 [연합회]라 되어 있는 것은 [연합회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자립지원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육성의료급여 또는 육성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받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갱생의료급여 또는 갱생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받는 장애인 및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에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14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9조의 2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및 부칙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의료를 담당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시행일에 제54조 제 2항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제 54 조 제 2항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의료기관에 관한 동항의 지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 59 조 제 1항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 60조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시행일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및 광역자치체 이외의 자(부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으로 간주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상당하는 사업에 관한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34조의 3 제 1항,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6조 제1항, 부칙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3 제1항 또는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시행일에 제7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의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시행일로부터 부칙 제1조 제2호에 드는 규정 시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82조 중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의 2,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 혹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7]은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8조의 2,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의 4 혹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25의 2]로 한다.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시행일로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94조 제1항 제 2호 중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용(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복지에 관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특정시설입소장애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부칙 제41조 제1항 또는 제 58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부칙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갱생지원시설 또는 부칙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지원시설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의 8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통근숙소를 제한다)는 장애인지원시설로 보아 제19조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 시행일 이후 당분간, 제19조 제3항 중 [제18조 제 2항]은 [제18조]로,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조치]는 [제15조의 4 혹은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혹은 입주조치]로, [또는 제5조 제 1항]은 [혹은 제5조 제 1항]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여]는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공동생활개호 혹은 공동생활지원을 하는 주거(이하 이 항에서 [공동생활주거]라 한다)에 입주하여]로, [또는 동법]은 [공동생활주거 또는 동법]으로, [입소 전]은 [입소 또는 입주 전]으로, [특정 시설에 입소하여]는 [특정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하여]로, [입소했다]는 [입소 또는 입주했다]로, 동조 제 4항중 [제18조 제 2항]은 [제18조]로,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조치]는 [제15조의 4혹은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혹은 입주조치]로, [입소했다]는 [입소 또는 입주하여]로, 동조 제5항 중 [입소하여]는 [입소 또는 입주하여]로 한다.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1 제2항 규정에 의해 시설훈련 등 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인 및 동법 제17조의 32 제4항 규정으로 동조 제 1항에 규정하는 국립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및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12 제2항 규정으로 시설훈련 등 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인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날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해당 장애자가 동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구법지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부칙 제41조 제1항 또는 제 58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칙 제41조 제 1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갱생지원시설 또는 부칙 제 58 조 제 1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지원시설로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전 일,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0 제 1항의 지정 또는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11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 1항에서 [구법지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구법지정시설에서 시행되는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5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시설지원 또는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5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시설지원에 상당하는 서비스(이하 [구법시설지원]이라 한다)를 장애인복지 서비스로 보아,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에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이 있었다고 본다.

(구법시설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에 드는 규정 시행일 전 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일 경우, 전 조의 규정에 의해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이 있다고 간주하는 구법지정시설(제 50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항 규정으로 해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제한다. 다음 조에서 [특정 구법지정시설]이라 한다)에서 구법시설지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지정 구법시설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장애자에 대해 해당 지정 구법시설지원(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것에 한한다)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하여 개호급여를 지급한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개호급여의 가액은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월당으로 제 1호에서 드는 가액에서 제 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 구법시설지원에 대해서 지정구법시설지원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특정 비용을 제한다)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 해당 지정구법시설지원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 해당 실제로 지정 구법시설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 二.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의 가계부담능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한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한 가액이 전호에서 드는 가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가액)

(특정 구법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부칙 제1조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특정구법지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1 제2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12 제2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이하 이 조에서 [구법시설 지급결정]이라 한다)가 내려져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0 제 1항의 시설훈련 등 지원비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11 제 1항의 시설훈련 등 지원비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구법수급자]라 한다)는, 부칙 제1조 제 2 규정의 시행일 이후 계속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계속하여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인 지원시설 혹은 희망의 뜰에 입소하여 해당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인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에 각각 소재하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거주지를 보유하게 된 특정구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1 이상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인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에 계속 입소해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는 제19조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법시설 지급결정을 내린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 것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이 적용되는 장애자가 입소한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인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은 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인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이 소재하는 기초지자체 및 해당 장애자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린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한다.

3. 특정구법수급자는 부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 규정의 시행일 전 날까지에 한해, 동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이후 계속하

여 특정구법지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관한 제 50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 규정의 지정취소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계속하여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특정장애자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특정구법수급자에 있어서 해당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특정장애자 지원시설에 계속 입소해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해당 구법시설지급결정을 내린 기초지자체는 해당 특정구법수급자를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로 보아 해당 특정구법수급자가 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해당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특정구법수급자는 해당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로부터 특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구법수급자에 대해 해당 지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해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해당 특정구법수급자에게 동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예외로 한다.

4. 전항 규정에 의해 특정구법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급여의 가액은 제29조 제 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월당으로 제 1호에서 드는 가액에서 제 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제29조 제 3항 제 1호의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범위 내에서 후생 노동대신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액이 실제 해당 지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한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지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한 비용)의 합계액
- 二. 해당 특정구법수급자의 가계부담능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전호에서 든 가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액)

5. 특정구법수급자(지급결정장애자 등인 경우를 제한다)는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 규정 시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한해 제29조 제 2항, 제4항 및 제 5항, 제31조 및 제76조의 2 제 1항규정의 적

용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으로 제34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로 본다.

(장애인지원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부칙 제1조 제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제 83 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항 중 [미리]는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2.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7조 제3항 또는 사회복지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30조의 2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복지 홈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의 9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복지 홈(이하 이 항에서 [신체장애자복지 홈 등]이라 총칭한다)의 설치자는 같은 날, 제 7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신체장애자복지 홈 등을 복지 홈으로 본다.

3.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부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34조의 3 제1항,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6조 제1항 또는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부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아동 상담지원사업,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 1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상담지원사업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상담지원사업(이하 이 항에서 [장애아동상담지원사업 등]이라 총칭한다)을 시행하는 자는 같은 날 제7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해당 장애아동 상담지원사업 등을 상담지원사업으로 본다.

(시행 전 준비)

제24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 드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21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절차, 제 36조(제 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제29

조 제 1항의 지정정차, 제 59 조 규정에 의한 제 54 조 제 2항의 지정정차, 제79조 제 2항의 신고, 제 88 조 규정에 의한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책정준비, 제 89 조 규정에 의한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책정분비 기타 행위는 이 법률 시행 전에도 실시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 이 법률 시행 전의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된 경우,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 위임)

제122조 이 부칙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 시행에 수반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헤이세이 18년(2006) 6월 21일 법률 제 83호) 초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헤이세이 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은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一. 제10조 및 부칙 제4조,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제105조, 제124조 및 제131조에서 제133조까지의 규정 공포일
- 二. 제22조 및 부칙 제52조 제3항 규정 헤이세이 19년 3월 1일
- 三. 제2조, 제12조 및 제18조 및 부칙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조, 제 56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및 제86조의 규정 헤이세이 19년 4월 1일
- 四. 제3조, 제7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 및 부칙 제2조 제 2항,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57조, 제66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 89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3조, 제 109조, 제114조, 제117 조, 제120조, 제123조, 제126조, 제128조 및 제 130조의 규정 헤이세이 20년 4월 1일
- 五. 제4조, 제8조 및 제25조 및 부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에서 제31조까지, 제80조, 제82조, 제88조, 제92조, 제101조,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21조 및 제129조 규정 헤이세이 20년 10월 1일

六. 제5조, 제9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6조 및 부칙 제53조, 제58조, 제67조, 제90조, 제91조, 제96조 및 제111조의 규정 헤이세이 24년 4월 1일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제131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동문.) 시행 전의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으로 종전에 예에 따르게 된 경우 및 이 부칙의 규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 경우, 이 법률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개정 후의 각 법률 규정 중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개정 후 각 법률의 상당한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2. 이 법률 시행 전에 개정 전 각 법률규정에 따른 신고 기타 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으로, 이 법률시행 전에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기초한 명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개정 후 각 법률 중 상당한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정 후의 각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133조 부칙 제3조에서 전조까지 규정하는바 외에 이 법률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헤이세이 18년 6월 21일 법률 제 84호) 초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헤이세이 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一. 부칙 제16조 규정, 부칙 제31조 규정 및 부칙 제32조 규정 공포일
- 二. 제1조 규정, 부칙 제3조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 및 부칙 제17조 규정 중 건강보험법(다이쇼 11년(1922) 법률 제 70호) 제 65 조 제 2항의 개정규정 헤이세이 19년 1월 1일
- 三. 제3조 규정, 제7조 규정, 제8조 규정 중 약사법 제7조 제1항 개정규정, 제9조 규정(약사법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제한다), 제11조 규정, 부칙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 부칙 제18조 규정 중 지방자치법(쇼와 22년(1947) 법률 제 67호) 별표 제 1 보건원, 조산원, 간호사법(쇼와 23년 법률 제203호)의 항 및 동표 약사법(쇼와 35년 법률 제 146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5조의 규정 헤이세이 20년 4월 1일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 규정에 있어서는 해당 각 규정) 시행전의 행위 및 이 부칙규정으로 종전의 예에 다르게 된 경우, 법률 시행 후의 행위 및 이 부칙규정으로 효력이 인정된 경우, 법률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32조 부칙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전조에 정하는 바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헤이세이 2011년 12월 14일 법률 제122호)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 장애지원평가항목과 내용(106개 항목으로 편정)

No	항	지원구분 평가항목	선택항목				군별
1	1-1	좌 상지마비 등	1. 없다	2. 있다			A
2	1-1	우 상지마비 등	1. 없다	2. 있다			A
3	1-1	좌 하지마비 등	1. 없다	2. 있다			A
4	1-1	우 하지마비 등	1. 없다	2. 있다			A
5	1-1	그외 마비 등	1. 없다	2. 있다			A
6	1-2	어깨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7	1-2	팔꿈치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8	1-2	다리사이의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9	1-2	무릎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10	1-2	발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11	1-2	그외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1. 없다	2. 있다			A
12	2-1	잡자리뒤척임 (채위교환)	1.잡지않고 할수 있다	2. 뭔가를잡으면 할수 있다	3. 할수없다		A
13	2-2	일어나기	1.잡지않고 할수 있다	2. 뭔가를잡으면 할수있다	3. 할수없다		A
14	2-3	좌위보지(앉아있기)	1.할수있다	2.자기손으로 짚으면할수있다	3. 부분받을수있다	4. 할수없다	A
15	2-4	양발로 서있기	1.지탱하지 않고 할수 있다	2. 뭔가지탱할것이있으면 할수있다.	3. 할수없다		A
16	2-5	보행	1.잡지않고 할수 있다	2. 뭔가를잡으면 할수있다	3. 할수없다		A
17	2-6	휠체어에서 침대로의 이동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18	2-7	이동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19	3-1	일어서기	1.잡지않고 할수 있다	2. 뭔가를잡으면 할수있다	3. 할수없다		A
20	3-2	한쪽 발로 서있기	1.지탱하지 않고 할수있다	2. 뭔가를잡으면 할수있다	3. 할수없다		A
21	3-3	세신(입욕 이외)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보조	4.하지않고있다	A
22	4-1-1	욕창 등	1. 없다	2. 있다			A
23	4-1-2	욕창 이외 손이 필요한 피부질환 등	1. 없다	2. 있다			A
24	4-2	삼킴	1.할수있다	2.지켜보기등	3.할수없다		A
25	4-3	식사섭취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26	4-4	음수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27	4-5	배뇨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28	4-6	배변	1. 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29	5-1-1	구강청결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보조		A
30	5-1-2	얼굴씻기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보조		A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31	5-1-3	정발(머리빗기)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보조			A
32	5-1-4	손톱깎기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보조			A
33	5-2-1	상의 착탈	1.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34	5-2-2	바지 착탈	1.자립	2. 지켜보기 등	3. 부분보조	4. 모두보조		A
35	5-3	약 복용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보조			A
36	5-4	금전관리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보조			A
37	5-5	전화이용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보조			A
38	5-6	일상의 의사결정(일상생활에 불안,고민에 관한 상담등)	1.할수있다	2.특별한경우를빼고는할수있다	3.일상적으로관련	4.할수없다		A
39	6-1	시력	1.보통	2.약1m떨어진시력확인표그림이보인다	3.눈앞에노인표인표그림이보인다	4.거의안보인다.		A
40	6-2	청력	1.보통	2.보통소리가겨우들린다	3.엄청큰소리라면들린다	4.거의안들린다	5.듣고있는지판별	A
41	6-3-1	의사전달	1.조사대상자가의사를타인에게전달할수있다	2.가끔전달할수있다	3.거의전달할수없다.	4.할수없다		A
42	6-3-2	본인 스스로의 표현방법을 이용한 의사표시	1.자신의방법과상관없이의사표시를할수있다	2.가끔자신의방법이아니면의사표시안되는경우가있다	3.항상자신의방법이아니면의사표시안된다	4.어떤방법이라도의사표시자체가되지않는다		C
43	6-4-1	개호자의 지시에 대한 반응	1.개호자의지시가통한다	2.개호자의지시가가끔통한다	3.개호자의지시가안통한다			A
44	6-4-2	언어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설명이해	1.언어이외의방법을사용하지않고설명을이해할수있다	2.때때로언어이외의방법을사용하지않고설명할수없다	3.항상언어이외의방법을사용하지않고설명할수없다	4.어떤방법도설명자체를이해할수없다		C
45	6-5-1	매일 일정 이해하는 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46	6-5-2	생년월일, 연령을 대답하는 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47	6-5-3	면접조사 직전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생각해내는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48	6-5-4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49	6-5-5	지금 계절을 이해하는 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50	6-5-6	자신이 있는 장소를 대답하는 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51	7-1	물건을도난당했다는등피해적되는것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2	7-2	이야기를만들어주위에퍼트린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부록-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 장애지원평가항목과 내용(106개 항목으로 판정)

53	7-3	실제없는것이보이거나들리거나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4	7-4	올다가웃다가감정이불안정하게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5	7-5	불면증 또는 주야가 바뀐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6	7-6	폭언과 폭행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7	7-7	계속똑같은얘기를하거나 불쾌한소리를내는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8	7-8	큰 소리를 내는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59	7-9	조언이나 개호에 저항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0	7-10	목적없이 돌아다닌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1	7-11	"집에가야지"라고안정하지못하게계속얘기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2	7-12	외출하면혼자서병원,시설,집에돌아오지못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3	7-13	혼자서 밖에 나가고 싶은 눈으로 계속 있는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4	7-14	여러가지물건을모으거나 무단으로들고간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5	7-15	불관리를 하는 것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6	7-16	물건이나의류를부수거나 찢거나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7	7-17	불결한행위(배설물을만지다)를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8	7-18	먹을수 없는 물건을 입에 넣은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69	7-19	심한 건망증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A
70	7-20	특정물건이나사람에대해 심한 집착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B2
71	7-21	많은 움직임이나 멈춤이	1. 없다	2. 아주가끔있다	3. 월 1회이상	4. 주 1회이상	5. 거의 매일	B2
72	7-22	혼돈이나 불안정한 행동이	1. 없다	2. 아주가끔있다	3. 월 1회이상	4. 주 1회이상	5. 거의 매일	B2
73	7-23	자신의 몸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1. 없다	2. 아주가끔있다	3. 월 1회이상	4. 주 1회이상	5. 거의 매일	B2
74	7-24	때리거나 차거나 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가	1. 없다	2. 아주가끔있다	3. 월 1회이상	4. 주 1회이상	5. 거의 매일	B2
75	7-25	타인을 갑자기 안거나 몰래 물건을 가져간 일이	1. 없다	2. 아주가끔있다	3. 월 1회이상	4. 주 1회이상	5. 거의 매일	B2
76	7-26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평상시와 다른 소리를 낸 일이	1. 없다	2. 아주가끔있다	4. 주 1회이상	5. 하루 1회이상	5. 하루 1회이상	B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77	7-27	갑자기 달려 없어질 것같은 돌발적인 행동이	1. 없다	2. 아주가끔 있다	4. 주 1회이상	4. 하루 1회이상	5. 하루에 빈번	B2
78	7-28	과식,반식(반정도 씹고 넘기는정도) 질식의 위험이 따른다	1.없다	2. 아주가끔 있다	4. 주 1회이상	5. 거의 매일	5. 거의 식사	C
79	7-29	기분이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되어 때론 사고력도 저하된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0	7-30	확실하기 위해 손을 반복해서 씻는 등 일상동작에 시간이 걸린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B2
81	7-31	타인과 교류를 하는 것이 불안, 긴장으로 외출하지 못한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2	7-32	하루종일 누워있거나 방에 계속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한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3	7-33	애기가 정리되지않은채대화가 안된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4	7-34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말한 것이 통하지 않는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5	7-35	현실에 맞지않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6	7-36	다른사람에 대해 의심스럽게 거부하는 일이	1. 없다	2. 가끔있다	3. 있다			C
87	8-1	랑겔의 관리	1. 없다	2. 있다				A
88	8-2	중심정맥영양	1. 없다	2. 있다				A
89	8-3	투석	1. 없다	2. 있다				A
90	8-4	인공항문의 처치	1. 없다	2. 있다				A
91	8-5	산소요법	1. 없다	2. 있다				A
92	8-6	인공호흡	1. 없다	2. 있다				A
93	8-7	기관절개의 처치	1. 없다	2. 있다				A
94	8-8	통증의 간호	1. 없다	2. 있다				A
95	8-9	경관영양	1. 없다	2. 있다				A
96	8-10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등의 측정	1. 없다	2. 있다				A
97	8-11	욕창의 처치	1. 없다	2. 있다				A
98	8-12	카테터(콘돌형 카테터,고정형 카테터,인공항문등)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1. 없다	2. 있다				A
99	9-1	조리(식단포함)	1. 자립	2. 지켜보기,부분보조	3. 모 두보조			B1
100	9-2	식사 배식(운반 포함)	1. 자립	2. 지켜보기,부분보조	3. 모 두보조			B1
101	9-3	청소(정리정돈)	1. 자립	2. 지켜보기,부분보조	3. 모 두보조			B1
102	9-4	세탁	1. 자립	2. 지켜보기,부분보조	3. 모 두보조			B1
103	9-5	입욕준비 및 정리	1. 자립	2. 지켜보기,부분보조	3. 모 두보조			B1
104	9-6	시장보기	1. 자립	2. 지켜보기,부분보조	3. 모 두보조			B1
105	9-7	교통수단의 이용	1. 자립	2. 지켜보기,부분보조	3. 모 두보조			B1
106	9-8	문자의 시각적 인식사용	1. 자립	2. 부분보조	3. 모 두보조			C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 인쇄일 | 2012년 12월
| 발행일 | 2012년 12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장애차별조사1과 02) 2125-9832
| F A X | 02) 2125-9848
| 연구기관 |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02) 3399-3927
| 제 작 | 마하테크

ISBN 978-89-6114-285-4 93330 비매품